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세조대 刊經都監 설치와 佛書 간행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최 경 환

세조대 刊經都監 설치와 佛書 간행

지도교수 남 동 신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최 경 환

최경환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세조대 刊經都監 설치와 佛書 간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최 경 환

고려사회는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면서 정치와 종교 영역을 분담하여 국가통치와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고려말기 사원경제의 팽창, 승도과잉의 비생산성, 국가재정의 파탄 등과 같은 불교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부들이 주체가 되어 건국한 조선왕조에서는 공적인 지배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하고 성리학의 이상정치를 추구한 사대부들이 왕정에 참여하고 국왕이 유교적 이상군주가 되며 유교이념에 맞는 관료정치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조선이 건국한 이후 억불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불교의 역할 및 지분은 점차 상실되어 갔으며 이러한 변화는 역성혁명과 맞물려 전면적이고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불교는 이전부터 왕실, 사대부, 민에게 오랫동안 종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말선초에도 불교의 영향력은 지속하였기 때문에 사상과 신앙의 두 축에서 내려온 유구한 불교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즉 유교국가를 건립하려 했던 조선이 초기에 있어서는 정치, 사회 등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유교이념을 내세웠지만, 종교와 관습의 영역에서 불교가 가진 지속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초기 간경도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첫째, 조선초기 정치적 상황 및 세조의 정치운영에서의 간경도감의 의의를 검토했으며 둘째, 고려로부터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불서간행 흐름에서의 간경도감의 위치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3장의 구성 체제를 취했으며 각 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밝혔다.

제1장에서는 세조의 국정운영과 불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조는 이전의 왕들과 다른 집권과정과 정치운영형태를 보여주었고 불교에 대한 개인적 신앙심, 先王의 사업에 대한 계승 강조, 그리고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불교를 활용하였다. 그는 국왕의 입장에서 왕권 강화를 모색하려고 할 때 다양한 학문의 활용성, 그 중에서도 불교의 영향력과 불교에 대한 매력을 쉽게 버릴 수 없으며, 불교가 지배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세조의 정국 운영 방식은 사대부들의 반발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건이 흥불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세조가 주도한 불사는 크게 사찰의 후원과 불서의 간행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불서 간행사업은 불교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세조는 사적인 왕실 기구가 아닌 국가의 공적인 기구로써 간경도감 설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는 즉 정변을 통해 즉위한 세조의 강력한 왕권의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제2장에서는 간경도감의 설치 배경과 간경도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왕조에서는 총 세 차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규모의 불서간행이 추진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불서 간행이 중지되지만 세조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사업으로서 체계적·지속적으로 불서를 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461년 간경도감이 설치되었으며 1471년까지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유지되었다. 간경도감이 설치된 초기에는 불서의 간행에 대한 사업이 주로 진행되다가 말기에는 불서의 간행은 줄어들고 佛事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간경도감에서 이루어지는 불서 간행사업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많은 인원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김수온 등의 호불적인 성향을 지닌 사대부 이외에도 효령대군과 같은 왕실측 인물, 신미 등의 승려들이 불서를 간행하거나 국역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서의 특징 및 사상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조가 주도한 불서 간행은 간경도감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이미 추진되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불사는 1458년 재조대장경 간행으로 전국의 명산 대찰에 나누어 보관함으로서 불교계에서 대장경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간경도감을 설치한 뒤에는 그때까지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불서 간행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케 하였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 가운데 오늘날 확인되는 것은 49종으로, 대부분은 의천의 교장을 번각하거나 중수한 불서들이었다. 이는 즉 세조에 의한 간경도감의 한문불서 간행은 의천의 교장을 복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도감 설치와 교장 간행의 불사를 계승하여 재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조는 한문불서의 간행에 만족하지 않고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국역불서를 동시 간행하였는데, 오늘날 확인되는 국역불서는 모두 11종으로 대승경전과 선불교에 관한 저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불서의 종류와 성격으로 볼 때 한문불서는 지식인 승려나 전문적인 학자를 대상으로 한 불서였던 반면에 국역불서는 한문을 읽지 못하는 승도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불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역불서는 경전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주석 부분까지도 번역하여 포함시켰으며, 직역 위주의 정확한 번역을 기하였던 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 적업으로서 번역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독송용이 아니고 불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키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세조는 대량의 대장경을 간행하여 전국의 명산대찰에 보관케 하는 한편, 대장경을 보완하는 작업으로서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의천의 교장을 복원하려는 불사를 추진하고, 나아가 중요한 대승경전과 선수행에 관한 불서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한문을 읽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도 불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고 한 것이다.

keywords : 世祖, 刊經都監, 佛書, 언해, 국역, 大藏經, 불교정책, 孝寧大君, 金守溫, 信眉
Student Number: 2011-30031

목 차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목적 ····· 4

一. 세조의 국정운영과 불교 ····· 12
1. 세조대 왕권 강화책과 정치적 변화 ····· 12
1) 세조의 집권과 정국 운영 ····· 12
2) 세조대 정치세력의 변화 ····· 20
2. 조선 초기 배불론과 세조의 불교정책 ····· 26
1) 조선초기 억불정책의 추이 ····· 26
2) 세조의 불교관과 흥불사업 ····· 41

三. 간경도감의 설치와 운영 ····· 61
1. 불서 간행의 전통과 간경도감 설치 ····· 61
1) 고려시대 불서 간행의 흐름 ····· 61
2) 조선초기 인쇄 출판기관의 변천 ····· 65
2. 간경도감의 구성과 운영 ····· 75
1) 간경도감의 체제 및 운영양상 ····· 75
2) 간경도감의 재정기반 ····· 78
3) 간경도감의 여러 기능 ····· 87
3. 간경도감의 인적 구성 ····· 93
1) 왕실 측 인물 ····· 93
2) 사대부 관료 ····· 103
3) 승려 ····· 111

四. 간경도감의 불서간행 ····· 116

1. 간경도감 설치 이전의 불서간행 ····· 116
2. 간경도감의 한문불서 간행 ····· 127
1) 한문불서의 종류와 판본의 현존 상태 ····· 127
2) 한문불서 간행의 특징 ····· 147
3. 간경도감의 국역불서 간행 ····· 157
1) 국역불서의 종류와 판본의 현존 상태 ····· 157
2) 국역불서 간행의 특징 ····· 165
4. 간경도감 혁파 이후의 불서 간행 ····· 169

결론 ····· 176

참고문헌 ····· 182
Abstract ····· 201

표 목 차

[표 1] 태종 7년 資福寺로 지정된 사찰 목록 ····· 33
[표 2] 세종 6년 불교 종파의 통합 ····· 40
[표 3] 실록의 간경도감 관련 주요 기록 ····· 76
[표 4] 세조 연간 외국으로 賜與된 불서 목록 ····· 90
[표 5] 간경도감의 인적 구성 명단 ····· 93
[표 6] 실록에서 확인되는 간경도감 관직 명단 ····· 96
[표 7] 간경도감 참여 사대부 관료의 공신 책봉 내역 ····· 104
[표 8] 간경도감 人事의 변천 ····· 106
[표 9] 세조년간 간경도감 설치 이전 간행된 불서 ····· 120
[표 10] 세조 4년 인경본의 봉안장소 ····· 127
[표 11] 간경도감 간행 한문불서 ····· 130
[표 12] 간경도감 간행본의 『敎藏總錄』 수록 상황 ····· 150
[표 13] 간경도감 중수·번각본의 底本 ····· 154
[표 14] 간경도감 간행 국역불서 ····· 157
[표 15] 성종-연산군 시기 간행/인출된 불서 목록 ····· 174

一.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려사회는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면서 정치와 종교 영역을 분담하여 국가통치와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였다.[1] 그러나 고려말기 사원경제의 팽창, 승도과잉의 비생산성, 국가재정의 파탄 등과 같은 불교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성리학의 사상은 고려말 불교배척의 움직임을 더욱 자극, 조성하는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불교비판은 국가의 재정과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주로 불교의 사회경제적인 모순을 비판하는 데 치중하였고 정도전을 제외하고는 사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실리적 또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비판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부들이 주체가 되어 건국한 조선왕조에서는 공적인 지배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하고, 성리학의 이상정치를 추구한 사대부들이 왕정에 참여하여 유교이념에 맞는 관료정치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조선이 건국한 이후 억불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불교의 역할 및 지분은 점차 상실되어 갔으며 이러한 변화는 역성혁명과 맞물려 전면적이고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2]

그러나 단기간 내에 이전의 종교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억압하거나 이와 관련된 제도를 폐지하거나 바꾸는 것은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3] 특히 불교는 이전부터 왕실, 사대부, 일반 대중에게 오랫동안 종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말선초에도 불교의 영향력은 지대하였기 때문에 사상과 신앙의 두 축에서 내려온 유구한 불교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유교국가를 건립하려 했던 조선이 정치, 사회 등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유교

1) 최병헌, 2012,「유교정치와 불교 : 유교·불교 교체의 역사적 의의」,『제5차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6.
2) 남동신, 2013,「李穡의 高麗大藏經 印出과 奉安」,『한국사연구』163, p.143.
3) 도현철, 2004,「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pp.19-22.

이념을 내세웠지만, 조선 초기까지 불교는 종교적인 의례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적어도 15세기까지는 왕실과 일반 대중은 물론 일부 사대부에게도 불교는 중요한 관습이자 오랜 전통으로 지속되고 있었고 여전히 불교를 신앙하는 등 매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4)]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주도세력에 따라 불교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성리학적 이념이 담긴 정치체제를 확립시키려 했던 사대부와는 달리, 조선 초기의 일부 국왕 및 왕실은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사대부와 이들 간의 갈등양상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들이 불교에 대해 취했던 입장이나 불교신앙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 취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권 강화를 모색하려고 할 때 불교의 영향력과 불교에 대한 매력을 쉽게 버릴 수 없으며 불교가 지배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 국가권력과 종교의 관계에서 볼 때, 불교는 인도의 석가 당시부터 왕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중국에 들어와서는 특히 제왕과 직결되어 王卽佛思想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서도 초기부터 고대국가의 왕실과 직결되어 발전되었으며, 고려에 들어와서도 국왕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다. 국왕과 불교의 이러한 관계는 조선시대 초기까지 일부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초기 이러한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세조로서, 억불정책이 시행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승려와 사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다수의 사찰을 중수하고 창건하는 등 여러 흥불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조 7년(1461) 6월 국가의 공적인 기구로서 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대규모로 불서를 간행함으로써, 불교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 점이다. 조선왕조 개국 이래 왕조 개창의 주체세력인 사대부들에 의해서 불교가 이단으로 비판받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단에 대한 강력한 억불정책이 추진되어 오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간경도감이라는 특별기구의 설치와 불서의 간

4) 김용태, 2018,「조선불교, 고려불교의 단절인가 연속인가?」,『역사비평』123, p.248.

행은 파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즉 간경도감 설치 및 불서 간행은 세조의 정치철학 및 그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세조의 불교정책 및 정치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간경도감은 불서 간행의 흐름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불교사에서는 총 네 차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규모 불서 간행 불사가 추진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서 간행 불사는 고려왕조에서 세 차례, 조선왕조에서 한 차례 이루어졌는데, 간경도감이 그 마지막 사례로서 불교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띄고 있다. 간경도감에서는 다수의 한문불서 및 국역불서가 간행되었는데, 한문불서들은 조선 초기 불교사상사의 흐름과 더불어 고려시기 의천이 간행한 교장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국역불서 역시 불교사상사의 흐름과 더불어, 한문을 읽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도 불서를 직접 읽고 이해하는 길을 열어줌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문자 생활의 길을 열어준 훈민정음 반포의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간경도감에 대한 연구는 결국 고려로부터 조선초기까지 이어지는 불서 간행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목적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목적

조선 시대 불교사에 대한 초기 연구는 유불교체에 주목하여,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강력한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에서 유교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조선 불교가 쇠망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로는 먼저 후루타니 기요시(古谷淸)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조선시대를 '한 편의 불교 쇠망사'라고 단정하고 불교계의 사회경제적 모순 및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 사대부들의 공격을 받고 쇠퇴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왕실 여성을 포함한 부녀자와 서민들의 신앙으로 인해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였음도 덧붙였다.[5)]

다음으로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는 이 시기 대표적인 관변학자로서 경성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李朝佛敎』[6)]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조선시대를 3시기로 구분하여 조선시대 불교사를 정리하였다. 제1기는 조선의 건국부터 성종대까지로, 억불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아직 불교 국가의 공인을 받는 시기로 규정하여 설명하였다. 제2기는 연산군부터 인조대까지로, 연산군 이후 강력한 폐불정책으로 인해 공적인 위치에 밀려나는 불교계의 상황 및 淸虛 休靜 등의 승려가 배출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3기는 효종대 이후로, 교세가 몰락하고 불법이 사라지는 시기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다카하시의 3시기 구분론 및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식민지 시기 다른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이후 학자들 중에는 그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학자로는 李能和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 시기 『朝鮮佛敎通史』[7)]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한국불교에 대한 역사서인 동시에 자료집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망라하였으며, 이후의 한국불교사 저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선시대 불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동시대의 다른 일본인 학자들과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보였지만 조선후기까지 불교 세력이 일정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

5) 古谷淸, 1911-1912,「朝鮮李朝佛敎史槪說」,『佛敎史學』1-3·4·5·6·8·11·12
6) 高橋亨, 1929『李朝佛敎』, 寶文館
7) 李能和, 1918『朝鮮佛敎通史』, 新文館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상백은 여말선초라는 시기에 주목하여, 이 시기 사대부들에 의해 제기된 척불론은 주로 불교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비판하는 데 주력한 것이며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방대한 양의 경제적 부를 보유하고 있던 불교 세력의 경제력을 몰수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

해방 이후, 조선초기 불교사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던 선행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점차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우근은『유교정치와 불교-여말선초 대불교시책』[9)]에서 고려말부터 성종대까지의 억불책을 개관하였다. 그는『조선왕조실록』을 기본자료로 하여, 조선 초기 시행된 불교정책은 척불이 아닌 억불책으로, 억불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적, 물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새롭게 건국된 국가의 재정 기반을 개편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봉춘은『조선시대 불교사 연구』[10)]에서 조선초기 억불정책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도 흥불정책 및 교단의 자립활동에 주목하여 이 시기 불교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초기 불교 정책[11)] 및 사원경제[12)], 도승제[13)]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세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조의 즉위과정 및 집권에 대한 연구,[14)] 세조의 측근정치 및 국정 운영

---

8) 李相佰, 1938「斥佛運動の意義について-朝鮮太宗王の斥佛政策斷行と儒佛交替の機緣に關する一硏究-」,『東洋思想硏究』2 ; 1939,「斥佛運動の胎生と成長 : 朝鮮に於ける儒佛交替の記綠に關する一硏究」,『東洋思想硏究』3

9) 한우근, 1993,『儒敎政治와 佛敎』, 일조각.

10) 이봉춘, 2015,『조선시대 불교사연구』, 민족사.

11) 김영태, 1988,「조선 태종조의 佛事와 斥佛」,『東洋學』18; 權延雄, 1993,「世祖代의 佛敎政策」,『震檀學報』75 ; 이봉춘, 1990,「조선 개국초의 배불추진과 그 실제」,『한국불교학』15 ; 사문경, 2001,「고려말 조선초 불교기관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 손성필, 2018,「조선시대 불교정책의 실제: 승정체제, 사찰, 승도에 대한 정책의 성격과 변천」,『한국문화』83 등.

12) 김갑주, 1982,『조선시대 사원경제 연구』, 동화출판공사 ; 이재창, 1991,『韓國佛敎寺院經濟硏究』, 불교시대사 ; 李炳熙, 1993,「朝鮮初期寺院田의 整理와 軍營」,『전남사학』7 ; 김용태, 2000,『조선전기 抑佛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朝鮮時代史學報』58 등.

13) 양혜원, 2018,「조선 초 도승제(度僧制) 강화의 역사적 의의」,『역사비평』25 등.

에 대한 연구[15] 등으로 이를 통해 세조대의 정책과 그 성과들이 상당히 밝혀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조의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과 부정적인 평가로 나누어져 있다.[16] 또한 세조의 불교신앙 및 불교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편의 연구성과가 있는데[17] 대체로 호불군주로서의 세조의 모습을 강조한 연구가 있는 많은 편이다.

한편, 간경도감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박봉석[18]과 大屋德城[19]은 義天의 『敎藏』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간경도감에서 重刊한 교장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江田俊雄은 처음으로 간경도감을 중심으로 하여 간행 불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0] 또한 일제강점기 朝鮮古蹟硏究會[21]는 순천 송광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佛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후술하겠지만 여기에는 현존하지 않는 간경도감 간행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

14) 한영우, 1981,「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성립(세조・성종)」,『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 김호일, 2002,「朝鮮世祖代 端宗復位運動의 再照明」,『인문학연구』33 ; 김돈, 2006,「世祖代 '端宗復位運動'과 왕위승계 문제」,『역사교육』98 ; 김용흠, 2007,「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생육신」,『역사와현실』64 ; 김경수, 2014,「세조의 집권과 권력변동,『백산학보』99 등.

15) 정두희, 1981,「朝鮮世祖-成宗朝의 功臣硏究」,『진단학보』51 ; 이동희, 1993,「朝鮮初期院相의 設置와 그 性格」,『全北史學』16 ; 한충희, 1998,「조선 세조대(1455~1468)의 內宗親에 대하여」,『복현사림』21-1 ; 최승희, 1998,「世祖代 국정운영체제」,『조선시대사학보』5 ; 최정용, 2000,『朝鮮朝世祖의 國政運營』, 신서원 ; 강제훈, 2005,「조선 세조대의 조회와 왕권」,『사총』61 ; 지두환, 2014,「세조 집권 과정에서의 내종친의 정치성향」,『백산학보』99 ; 김순남, 2016,「조선 세조대 말엽의 정치적 추이」,『역사와실학』60 등.

16) 세조대의 정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의 정책과 업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최정용, 2000, 앞의 책, 신서원 등이 있다.

17) 한상설, 1981,「조선초기 세종, 세조의 불교신앙과 신권 견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권연웅, 1993,「世祖代의_佛敎政策」,『진단학보』75 ; 이정주, 2006,「세조대 후반기의 불교적 상서와 은전」,『민족문화연구』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진성규, 2007,「세조의 불사행위와 그 의미」,『백산학보』78 ; 김종명, 2010,「세조의 불교관과 치국책」,『한국불교학』58 ; 박세연, 2011,「조선초기 세조대 불교적 상서의 정치적 의미」,『사총』74, 이봉춘, 2015, 앞의 책, 민족사 등.

18) 朴奉石, 1934,「義天續藏の現存本に就て」,『朝鮮之圖書館』3권 6호, pp.31-38.

19) 大屋德城, 1936,『高麗續藏雕造攷』, 京都: 便利堂.

20) 江田俊雄, 1936,「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朝鮮之圖書館』5권 5호, pp.10-36.

21)『順天 松廣寺藏 高麗板 天順板 佛典』

해방 이후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왕조에서 국왕이 주도적으로 불서 간행기관을 설치하고 많은 불서가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서지학, 국어학, 역사학, 불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다.

먼저 서지학 분야에서는 간경도감에 간행된 불서의 현존본을 조사하여 현 소재 및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22] 특히 송광사의 사원왕상 등에서 간경도감 간행본들이 다수 발견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보성선원, 동학사 등의 복장전적에서도 간경도감 간행본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23]

다음으로 국어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새 문자인 훈민정음 보급 및 확산의 차원에서 『釋譜詳節』 및 『月印釋譜』, 그리고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국역불서에 주목하였다. 안병희는 당시에 간행된 국역 문헌의 대다수는 불서로, 왕실에서는 불심에 기대어 국문자의 정착 및 보급 수단으로 이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24] 김무봉은 국역 사업은 구결 불경 조성의 전통이 국문자 창제 이후 불경국역에 자연스럽게 이어졌기 때문으로 평가하였다.[25] 김기종은 숭유억불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간경도감에서 이루어진 불서의 국역 과정은 불교대중화 내지 불교 중흥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세조대 국역불서의 편찬 및 간행은 국가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불교계에 대한 문화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

---

22) 대표적인 연구로는 천혜봉, 1991, 「조선전기 불서판본 - 세조조 불서판본」, 『한국서지학연구』, 서울 古山千惠鳳교수정년기념選集刊行委員會 ; 安秉禧, 1999, 「刊經都監의 諺解本에 대한 硏究」, 『대장경의 세계』, 서울: 동국역경원 ; 2004,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새국어생활』14-3 ; 박광헌, 2018, 『간경도감 간행불서의 서지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23) 남권희, 1989,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3種에 관한 考察」 ; 강순애, 2004,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硏究』27 ; 2005,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적연구」, 『書誌學硏究』30 ; 송일기, 2005, 『靈光佛甲寺의 佛敎文獻』, 태학사 ; 2007, 「順天 曹溪山 松廣寺의 古文獻」, 『한국의 사찰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 ; 송일기·정왕근, 2010, 「靈光 佛甲寺 腹藏 佛書의 性格」, 『書誌學報』35 ; 남권희, 2016, 「韓國所在 佛敎 敎藏文獻의 書誌調査」, 『書誌學硏究』66 등이 있다.

24) 안병희, 2009, 「초기 불경국역과 한글」, 「간경도감의 국역본에 대한 연구」, 『국어사문헌연구』, 신구문화사.

25) 김무봉, 2002, 「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 『電子佛典』4 ; 2004, 「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23, pp.373-416 ; 2010, 「불경국역과 간경도감」, 『동아시아불교문화』6, pp.3-49 ; 김무봉, 2015, 『훈민정음, 그리고 불경 국역』, 역락출판사 등이 있다.

다.[26]

마지막으로 역사학 및 불교학 분야에서는 조선전기 불교정책 및 왕권 강화와 관련된 간경도감의 정치적 목적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세조가 왕위 찬탈이라는 즉위 배경으로 인한 약점을 극복하고 왕권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목적하에 간경도감에서 불서의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27] 이에 반해 이정주는 세조대 전반기에 있어서 불교가 왕권의 정당화를 위해 이용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세조가 유교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유교 이념 및 윤리에 입각한 통치라는 시대적 지향에서 완전히 일탈하여, 불교에 의한 정통성의 확보를 염두에 두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세조 후반기에 세조가 불교적 상서를 계기로 은전을 하사하고 사면령을 내리며 법회에 참석한 것은 세조 전반기의 엄격한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았다.[28] 그리고 이봉춘은 세조대 불서국역의 성격 및 의의를 정음을 통한 경전의 새로운 결집, 불교의 사상적 중흥, 불교대중화운동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불서국역에서 주석까지 국역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불서들은 조선초불교의 사상적 경향을 나타내주는 것이거나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일종의 지표로서 선정된 것으로 불교의 사상적 중흥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이념을 지향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29] 또한 최윤곤은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사업에에 대해 분석하였고[30] 최연주는 간경도감의 운용과 지방분사인 尙州牧에 대해 연구하였다.[31]

한편 이숭녕은 조선 초기 출판 기관 설치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르면

---

26) 김기종, 2015,「간경도감의 국역불서」,『불교와 한글』, 동국대학교 출판부.

27) 박정숙, 1996,「世祖代 刊經都監의 설치와 佛典 刊行」,『釜大史學』20 ; 한상설, 1981,「조선초기 세종 세조의 불교신앙과 신권 견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성규, 2007,「세조의 불사행위와 그 의의」,『백산학보』78 ; 김종명, 2010,「세조의 불교관과 치국책」,『한국불교학』58 ; 박세연, 2011,「조선초기 世祖代 불교적 祥瑞의 정치적 의미」,『사총』7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8) 이정주, 2006.「세조대 후반기의 불교적 상서와 은전」,『민족문화연구』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9) 이봉춘, 2015,『조선시대 불교사연구』, 민족사.

30) 최윤곤, 2002,「간경도감의 실체와 불서 간행 사업,『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논문집』31.

31) 최연주, 2016,「조선전기 刊經都監 운용과 尙州牧」,『국학연구』30.

태종조에 설치한 鑄字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출판을 담당하였으며, 경전 印行과 같은 왕실에서의 사설 출판은 세종조에 설치한 '冊房'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았다. 세종 후기에 왕실의 佛敎崇信을 위한 사설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종은 冊房, 문종은 正音廳, 단종은 다시 책방을 통하여 불서를 인쇄하였음을 밝혔다.[32]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간경도감에 대해서는 서지학, 국어학, 역사학, 불교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주제별로 확대 및 분화되었다. 연구의 양적 증가와 분야별 연구의 심화는 간경도감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간경도감과 관련하여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각 학문의 특성상, 서지학 계통의 선행연구에서는 한문본의 경우는 목록과 刊記를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는 연구가 많았으며, 국어학 계통의 선행연구에서는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인본을 단순히 한문본과 국역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국역본에 집중하여 그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둘째, 간경도감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가 서지학 및 국문학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역사학 측면에서의 검토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간경도감의 설치 및 운영은 불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밀려나는 상황 속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 시기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또한 불교에 대한 세조의 개인적 신앙심뿐만 아니라 先王의 사업을 계승하고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도감의 기능이 변하는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간경도감의 설치과 불서 간행에 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세조의 정치운영상에 있어서 간경도감의 위치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이 건국한 이후 억불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불교의 역할 및 지분은 점차 상실

32) 이숭녕, 1970,「이조 초기 역대 왕실의 출판 정책의 고찰」,『한글』146.

되어 갔으며 이러한 변화는 역성혁명과 맞물려 전면적이고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세조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성리학 뿐만 아니라 불교도 활용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로 많은 흥불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조선왕조 개국 이래 왕조 개창의 주체세력인 사대부들에 의해서 불교가 이단으로 비판받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단에 대한 강력한 억불정책이 추진되어 오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간경도감이라는 특별기구의 설치와 불서의 간행은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변을 통해 즉위한 세조의 강력한 왕권의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는 즉 간경도감의 설치 목적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둘째,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의 이미에 대한 문제이다. 간경도감에서 한문불서을 간행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며 번역작업이 끝난 후에도 출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양의 불서들을 짧은 시간 내에 간행할 수 있던 것은 고려시대의 불서간행기관인 교장도감, 대장도감 등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간경도감의 사업이 의천의『義天錄』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모두 간행하여 한 질을 갖추고자 했는지, 당시까지 교장도감판본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었으며 그 수요의 정도 등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敎藏』의 수량이 극히 적어서 교장도감의 간행 범위 및 구체적인 典籍의 간행여부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경도감에서 교장의 重修本을 간행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原刊本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경도감 중수본을 통해 교장도감의 간행사업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가 도감 폐지 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셋째,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국역불서의 의미에 대한 문제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래로 승려 및 지식인층은 불서들의 해독 및 주석에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두, 구결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불서의 한문과 그것을 강설하는 우리말 사이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한계

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훈민정음의 창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역된 불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누구를 대상한 것인지 밝힘으로써 국역 작업의 목적과 그의 의미를 살펴보고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국역불서가 도감 폐지 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3장의 구성을 취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세조의 국정운영과 불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성리학적 질서의 수립문제 곧 현실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불교와 같은 이단을 비판하고 이와 연결된 정치사회세력을 제어하며 성리학적 이념이 담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일이었고 억불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 그런데 세조는 이전의 왕들과 다른 집권과정과 정치운영형태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교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간경도감의 설치 배경 및 목적과 간경도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불서 간행의 흐름과 함께 조선초기 간경도감 설치 이전의 책방, 정음청 등의 불서 간행기관 및 조선초기 도감의 설치와 운영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초기 불서간행기관의 흐름에서의 간경도감의 설치 배경 및 목적을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간경도감의 체제 및 인적 구성, 기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간경도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서의 특징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간경도감 설치 이전의 불서 간행과 대장경 인출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간경도감에 간행된 한문불서 및 국역불서의 종류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경도감 폐지 이후 불서 간행의 흐름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二. 세조의 국정운영과 불교

1. 세조대 왕권 강화책과 정치적 변화

1) 세조의 집권과 정국 운영

사육신 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조는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이념적인 비판에 직면하였다. 명분과 정통상의 하자는 유교정치시대의 군주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으로 유교정치사상에서도 民心과 天心에서 일탈한 君主에 대한 역성혁명은 정당화되나 왕위의 찬탈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33] 왕위의 찬탈은 유교정치체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忠臣不事二君'이라는 유교적인 윤리관이 지배했던 당시에 있어서, 세조의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 과정은 정통성 차원에서 문제시될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 세조대 왕권의 정당성 여부 및 왕권이 취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세조는 왕의 말은 곧 법이라고 선언한 표현[34]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강력하고 절대적인 왕권을 확보하고자 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조선 초기의 이전 국왕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특성들은 불교정책 측면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며, 조선초기의 억불정책 하에서도 대장경이 대규모로 인출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간경도감이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장에서는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 및 집권한 후 그가 지향했던 정책들과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宗親·勳臣·戚臣의 지지기반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당대의 불교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세조의 즉위 과정 배경부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종은 태종이 죽은 동왕 4년(1422)부터 親政을 행하면서 왕권을 안정, 강화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문물을 크게 정비하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세종 18년(1436)에는 강력한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의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세종은 건강의 악화로 정사가 국왕에게 폭주하는 육조직계제를

33) 최승희, 1997, 앞의 논문, p.63.
34) 『世祖實錄』 권4, 세조 2년 5월 乙亥.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 때 의정부에는 황희, 맹사성 등의 경륜과 재덕을 구비한 인물이 재직하고 있었다. 세종은 의정부서사제를 부활시켜 의정부대신으로 하여금 6조의 정사를 통괄하게 하였고, 이로써 자신의 정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의정부서사제 하의 의정부는 처음에는 국왕과 6조의 중간에서 원만하게 국정을 통괄하였고, 세종의 정사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종 25년경을 전후하여 왕은 신병이 악화되어 정사를 직접 재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왕세자로 하여금 정무를 대행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는 세종의 신임이 두터운 皇甫仁, 金宗瑞 등에 의해 정치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문종은 세자 때에 쌓은 정치력과 학문을 바탕으로 언로를 확대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아껴 세종시대에 이어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으나 병약하여 자주 臥病하였고[35] 결국 재위 2년여 만에 병으로 사망하였다.[36] 이렇게 병약한 문종에게는 강력한 왕권을 기대할 수 없었고 문종대의 약화된 왕권 아래서 어린 단종에게 왕위가 이어졌으므로 단종의 왕권은 더욱 허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문종의 고명을 받은 황보인, 김종서 등 보좌세력으로 떠오른 몇몇 관료세력과 국정을 의정부에 위임하게 되어 의정부 중심의 신권이 확대되어 갔다. 즉 이러한 상황은 왕권과 왕권옹호세력인 일부의 관료 그리고 종친세력 · 의정부 중심의 신권의 균형관계를 무너뜨리고 대립과 갈등구도의 심화를 가져왔다. 단종의 즉위교서와 함께 발표된 24조목[37] 중 6건은 의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13) 모든 정사 정부 六曹 논의 시행
14) 六曹 直啓制 폐지
15) 관료 임명 의정부와 의논
16) 모든 범죄 처벌결정 의정부와 의논
17) 공식적인 일과 承旨들의 건의사항의 가부는 의정부 대신 논의
23) 특별히 물품 하사시 의정부 논의 후 시행

35) 『文宗實錄』 권10, 문종 원년 10월 辛亥.
36) 『文宗實錄』 권13, 문종 2년 5월 甲午.
37) 『端宗實錄』 권1, 단종 즉위년 5월 庚戌.

위의 사항들은 의정부의 기능이 다시 다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관료들에 대한 임면권 실질적인 장악과 관련해서 국정운영의 모든 권력이 의정부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의정부 당상관으로는 영의정 皇甫仁과 좌의정 南智 그리고 우의정 金宗瑞였다. 단종 즉위년 6월 의정부 3정승이 빈청에 모여 국사를 논의하면서 관료 임명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을 때, 먼저 김종서는 비록 임시적인 권무직일지라도 모든 관료의 임명은 의정부에서 마감하여 추천하자는 의견이었고, 황보인은 중요 기관의 일정한 직책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나머지 하급관료들은 吏曹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등 종친들간의 세력 모으기 경쟁도 그러한 분위기에서 일어났으며, 관료들 중에도 파를 나누어 종친들에게 의탁하는 형세가 벌어져 주도권 다툼이 첨예하게 되었다. 결국 수양대군 일파가 기선을 제압하여 癸酉靖難을 일으켰고 그들의 집권에 장애가 되는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즉 단종 원년 10월에 일어난 계유정난은 허약한 왕권 아래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두 유력한 종친을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쟁탈전이었으며, 결국 수양대군의 승리로 끝났다.[38] 이후 수양대군은 실세를 장악하고 왕위를 이양받게 되면서 왕위찬탈에 대한 정당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육조직계제를 복구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고자 했다.

> 承政院에 지시하기를 “三公은 세세한 업무를 직접 보지 않고 六卿이 직무를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옛 제도이다. 이제부터 육조에서 공식적인 일은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니, 승정원에서 보고하기를 “타당합니다.”라고 하였다.[39]

> 冢宰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국왕이 죽었을 때나 하는 제도이다. 너

38) 『端宗實錄』 권8, 단종 원년 10월 癸巳.
39) 『世祖實錄』 권2, 세조 원년 8월 甲辰.

는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느냐? 또 내가 어려 능히 모든 업무를 재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관료들에게 넘어가도록 하자는 것이냐? … 河緯地는 대신들에게 아부하고 나를 어린 것으로 비유하여 옛 사실들을 망령되게 인용하여 자기만 잘난 체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의 모든 업무를 모두 의정부에 넘어가도록 하고자 하였다.[40]

첫 번째 기록은 육조직계제에 대한 승정원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었고, 두 번째 기록을 통해 당시 예조참판이었던 하위지가 의정부 서사제로 환원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세조의 강경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의정부 서사제로 환원하여 왕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관료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반면, 세조는 단종대의 왕권약화에 따른 관료들의 세력확장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왕권의 회복, 나아가 강화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세조의 6조 직계제 시행은 계속되었고, 조선 초기의 유교적 왕도정치를 지향하는 집현전 출신의 일부 관료들과 마찰을 야기함으로서 결국 사육신 사건을 통해 세조의 왕권 강화책은 무력적 수단을 이용하기에 이른 것이다.[41] 즉 세조는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특정한 세력이나 관부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피하고 이의 분산책을 썼다. 세조는 육조직계를 강행하여 의정부의 정치력을 약화시켰으나 의정부대신들은 공신으로서, 政治元老로서의 대우를 받고 국정에 참여하였다. 육조직계제 하에서 6조의 정치력은 향상되었으나 결코 강력한 정치권력을 6조에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42]

그리고 이후 집권체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수조권에 의한 양반 관료의 농민 지배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직전법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橫看과 貢案을 작성하여 세입과 세출의 조화를 지향하는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는데, 이는 재정제도 상의 획기적인 변화였다.[43] 또한 軍役의 평준화를 통하여 軍額을 증가시키고 군사제도와 국방체제를 혁신하였다. 군역 부과의 불평등과 군액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세조 5

40)『世祖實錄』권2, 세조 원년 8월 壬子.
41) 최정용, 2000, 앞의 책, p.78.
42) 최승희, 1997, 앞의 책, p.54.
43) 한영우, 1981, 앞의 책, pp.207-210.

년, 9년, 13년 3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호적을 개정하고 호패제도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軍籍을 작성한 후 良人이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속하게 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조 10년에 保法을 실시하여 군역의 평준화와 군액 증가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44]

한편 군사제도 및 국방체제와 관련해서 지방에서는 鎭管體制를 확립하여 병농일치의 원칙에 입각한 전국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중앙군의 편제는 五衛 陣法 체제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일원적인 중앙군 조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오위와 진관체제는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는데, 이는 결국 『경국대전』체제로 상정되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방체제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였다.[45]

무엇보다도 세조대에는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와 국왕 중심 정치질서를 확고하게 규정해 둘 수 있는 영세불변의 통치 규범을 제정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국초부터 추구되어 정도전의 『朝鮮經國典』 이래 『經濟六典』·『續六典』·『六典謄錄』 등의 법전이 편찬되었으나, 이들은 주로 당대의 敎令과 條例 등을 수집·정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세 불변의 법전이 되기는 미흡하였다. 이에 세조는 자신의 통치 이념을 새로운 법전에 반영시키기 위해 시종 법전 편찬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崔恒, 韓繼禧, 盧思愼 등 重臣들로 하여금 그 편찬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감수와 교열을 세조 자신이 직접 담당하여 일일이 筆削을 가하기도 하였다.[4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조 6년(1460)에 戶典, 이듬해 刑典을 완성한 뒤, 세조 11년(1465) 에는 宰樞와 郞官들로 『경국대전』 전체의 편찬을 지휘할 都廳을 두고 그 아래 6전을 분담하여 讎校하게 하여 이듬해에는 마침내 나머지 吏, 禮, 兵, 工典의 편찬을 완료하였다. 그렇지만 세조는 이를 곧바로 반포하지 않고, 세조 13년(1467)에는 宗親, 宰相들과의 축조 논의를 거쳐 조목을 확정하였고, 이듬해에 호전과 형전만이라도 반포하려고 하였지만, 세조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지연되다가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47] 세조대의 『경국대전』 편찬은 조선 건국

---

44) 한영우, 1981, 위의 책, pp.204-205.
45) 민현구, 1968, 「近世朝購前期軍士制度의 成立」, 『韓國軍制史(朝蘇前期篇)』, pp. 87-90, pp.160-171.
46) 한영우, 1981, 앞의 글, p.200.

후의 법전 편찬이 지니고 있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집권체제를 정비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경국대전』은 중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조대의 정치는 국가 체제의 집권성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공적 영역을 확장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그러한 방향을 만세불변의 규범으로 정착시키려 하였다.[48]

세조가 추진했던 일련의 정책 속에서, 세조가 생각했던 올바른 정치상은 뛰어난 군주의 주도 아래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것이었다. 복종의 대상은 오직 왕에게만 허용되었다.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대상이 세자이거나,[49] 朱子와 같은 聖賢, 선비들의 公論일지라도 이는 용납되지 않았다.[50]

그러나 세조 재위 초반에는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앞서 서술한 육조직계제의 再開를 둘러싼 세조와 河緯地의 갈등은 국왕과 신료들 사이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육조직계제의 재개를 둘러싼 세조와 河緯地의 갈등은 국왕과 신료들 사이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51] 六曹에서 공사를 議政府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올릴 것을 傳旨한 세조에게 하위지는 冢宰가 三公과 三孤를 겸임해 직사를 다스린 周制를 따를 것을 청하였다. 이에 분노한 세조는 하위지를 義禁府에 가두었고,[52] 같은 내용을 啓達한 李季甸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였다.[53] 총재가 公事를 사실상 집행하는 周制에 기반한 성리학적 정치운영론은 세조가 구상하는 정치관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른바 '死六臣' 사건이 벌어진 이후 集賢殿을 폐지하고,[54] 경연을 중단하는 것[55]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처였다. 주요 주모자들이 집현전에서 高論하던 儒者들이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유자들이

47) 정호훈, 2004, 「조선전기 法典의 정비와 『經國大典』의 성립」,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오영교 편, 혜안, pp.71-72.
48) 김용흠, 2007, 앞의 글, 2007 pp.240-241.
49) 『世祖實錄』 권32, 세조 10년 3월 丙寅.
50) 『世祖實錄』 권39, 세조 12년 9월 丁午 ; 『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 8월 戊辰.
51) 정두희, 1991, 앞의 글, p.53.
52) 『世祖實錄』 권2, 세조 1년 8월 壬子.
53) 『世祖實錄』 권2, 세조 1년 8월 己未.
54) 『世祖實錄』 권4, 세조 2년 6월 甲辰.
55) 『世祖實錄』 권20, 세조 6년 5월 丁酉.

모였을 때 생기는 公論과 高談峻論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유자들의 高論이 임금을 약하게 하고 신하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했다.[56] 이러한 생각이 세조 말년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세조 14년에 申叔舟와 崔恒이 문장에 능한 자를 가려 국가의 製述을 이들에게 주자고 청했을 때, 이것은 집현전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이다.[57] 세조의 유학자들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는데 성균관을 썩은 선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말하거나,[58] 儒臣들을 구변만을 일삼는 俗儒라고 폄하하는 모습[59]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조가 완전히 反儒敎的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유학적 학식이 신하들보다 뛰어남을 드러내며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지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며,[60] 유교적 수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61] 天命사상에 감명 받아 주역에 직접 구결을 달기도 하였다.[62] 그러나 유교적 수사를 통해 왕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런 모습이 나타날 뿐이고, 세조는 성리학의 王道와는 다른 국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63] 더군다나 세조는 程朱學만을 고집하지 않고, 朱子도 틀린 것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64] 老莊學이나 列子・吳子 같은 여타 제자백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유신들로 하여금 이를 공부하도록 하였다.[65] 신하들에게 폭넓은 공부를 주문하였던 것이다.[66] 세조대에는 수신 위주의 주자학 의리론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리적 실용학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억제하고자 하였다.[67] 결국 세조가 국왕의 입장에서 왕권 강화를 모색하려고 할 때 다양한 학문의 활용성, 그 중에서도 불교의 영향력과 불교에 대한 매력을

56) 『世祖實錄』 권15, 세조 5년 1월 丁未.
57) 『世祖實錄』 권46, 세조 14년 6월 庚寅.
58) 『世祖實錄』 권34, 세조 10년 8월 壬寅.
59) 『世祖實錄』 권7, 세조 3년 3월 丙戌.
60) 『世祖實錄』 권6, 세조 3년 2월 癸卯.
61) 김태영, 1994, 앞의 논문, pp.117-118.
62)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 3월 丙午.
63) 김태영, 1994, 앞의 논문, pp.120-121.
64) 『世祖實錄』 권39, 세조 12년 9월 庚午.
65) 『世祖實錄』 권42, 세조 13년 6월 乙卯.
66) 박세연, 2011, 「조선초기 세조대 佛敎的 祥瑞의 정치적 의미」, 『사총』74, pp.30-31.
67) 김용흠, 2007, 앞의 글, p.261.

쉽게 버릴 수 없으며, 불교가 지배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세조의 정국 운영 방식은 儒者들의 반발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고 성리학을 국시로 내세웠던 조선왕조에서 흥불정책을 실행하고 불서를 간행하는 사적인 왕실 기구가 아닌 국가의 공적인 기구로써 간경도감을 설치에까지 이르는 등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 준다.

2) 세조대 정치세력의 변화

세조는 정변을 일으켜 기존의 정치세력인 의정부를 비롯한 대간들의 세력들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친왕세력 즉 宗親, 勳臣, 戚臣을 자신의 제1차적 지지 기반으로 삼아 이들과 매우 밀접한 결탁관계를 맺어 나갔다.[68] 그래서 왕권을 정점으로 받드는 이른바 훈척세력이 상층 지배계층으로서 튼튼하게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그것을 지반으로 하여 국가체제가 튼튼하게 지탱해 가도록 정책적으로 기도하였다.[69] 靖難·佐翼功臣의 책봉, 2,200여 명에 이르는 原從功臣의 책봉, 功臣會盟 등은 친왕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종친, 공신에 대한 친화책은 그 관리·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정난공신은 단종 1년(1453) 11월에 책봉되었는데 1등은 수양대군 · 鄭麟趾를 비롯한 12명, 2등은 權蹲 · 申叔舟를 비롯한 11명, 3등은 李興商 · 李禮長 등 20명으로 모두 43명이었다.[70]

1등 - 전각을 건립하여 화상을 봉안하고 공적을 기록한 비석을 건립, 작위를 봉하고 토지를 지급한다. … 토지는 200결, 노비 25구, 구사(하인) 7명, 반당(심부름꾼) 10인을 지급하며, 장남이 세습하고 녹봉받을 권리를 가진다. … 죄를 범해도 영원히 용서한다.

2등 - 위와 동일. 토지는 150결, 노비 15구, 구사 5명, 반당 8인 지급하며 … 위와 동일.

3등 - 위와 동일. 토지는 100결, 노비 7구, 구사 3명, 반당 6인 지급하

68) 세종대 말엽 세자 섭정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세종이 경복궁을 떠나 관료와의 접촉을 끊음으로써 국왕과 관료 간의 소통이 약화되었고, 특히 공적 의사소통 체계가 일정 부분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의 아들들 가운데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 이들은 왕명 출납에서부터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각종의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등 경험을 쌓으며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정변을 통해 집권한 세조는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과 권위를 보강하기 위해 선대의 업적을 끌어오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김경수, 2014, 앞의 글 참조)

69) 김태영, 1994, 앞의 글, p.119.

70) 『端宗實錄』 9권, 단종 1년 11월 丙辰.

며 … 위와 동일.

좌익공신은 세조 1년(1455) 9월에 책봉되었는데, 1등은 桂陽君을 비롯한 7명, 2등은 정인지 등 12명, 3등은 權恭 등 25명으로 모두 44명이 1차로 책봉되었고 이어 죽은 참찬 尹炯을 추증하였고 예조참의 洪允成과 군기감판사 金礩을 좌익공신 3등에 추록함으로써 최종 47명이 되었다.[71] 이들 정난공신과 좌익공신은 세조정권 성립의 핵심세력으로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세조대 3정승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관료가 사망하여 결원이 되었을 때 규칙적으로 충원되는 방식[72]이었고, 사망의 경우가 아닌 경우 물러났을 때 모두 君으로 책봉되면서 지위와 명예를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공신들이 모두 같은 비중으로 세조의 신임과 총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3정승이라고 반드시 寵臣은 아니었다. 세조 즉위 직후의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한확, 우의정 이서철 등은 이들이 세조의 공신 가운데 이미 당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세조의 공신 가운데 寵臣을 든다면 韓明澮, 權擥, 신숙주 등을 들 수 있는데, 한명회와 권람은 계유정난에서 왕의 찬탈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신숙주는 단종 즉위년(1452) 10월 수양대군이 명에 사은사로 갈 때 書狀官으로 수행한 것이[73] 인연이 되어 총신이 되었다. 그런데 권람은 세조 8년에 신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세조대 정치에 끼친 영향력은 한명회, 신숙주에 미칠 수 없다. 신숙주와 한명회는 세조의 총애와 신뢰를 받으면서 정치력이 막강해지고 권신화되어 갔다. 세조 13년(1467) 5월 李施愛가 난을 일으킬 때 한명회, 신숙주 등이 강효문의 모반에 내응한 것처럼 보고한 것은 權臣化한 그들에 대한 세조의 의구심을 촉발시켜 조정의 亂軍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시애의 교란작전이었다. 그러나 세조는 그들을 下獄, 禁錮하여 고초를 주었다가 석방한 것은 권신화한 그들에 대하여 경고를 가하고 왕권의 위세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74]

또한 당시 명망있는 집현전 출신 儒臣을 다수 공신으로 확보하였는데

71) 『世祖實錄』 2권, 세조 1년 9월 丁丑.
72) 최정용, 2000, 앞의 책, p.66.
73) 『端宗實錄』 3권, 단종 즉위년 9월 癸卯.
74) 최승희, 1997. 앞의 글, p.57

그것은 왕위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도울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과 세종시대의 정치와 문화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집현전 출신의 강회맹, 김예몽, 김수녕, 노사신, 서거정, 양성지, 한계희 조석문, 어효첨 등이 대부분 세조정권에서 벼슬을 하면서 협력하였고 이들에 의해서 세조대의 정치와 문화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75]

한편 세조는 왕위 찬탈 과정에서 安平大君·錦城大君을 賜死했고 단종을 죽게 하였기 때문에 종친들의 의구심을 덜기 위하여 종친들과 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세조에게 있어 종친들과 친화하는 것이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며 또한 그의 왕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다. 세조는 종친, 공신, 재추들을 불러 侍食하게 하고 자주 활쏘기, 사냥에 그들을 참석하게 하여 화목을 다졌다.[76] 加資와 代加를 자주 베푼 것은 친왕세력의 확보, 강화뿐 아니라 광범위한 계층에 대한 일종의 민심수습 또는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77] 세조는 군신간의 모임에 공신과 더불어 종친들이 참여하게 하였으며 특히 친화를 위하여 공신과 더불어 侍食, 侍宴하게 하였고 觀射, 冠武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였고 桂陽君 등은 內宗親으로서 국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종친들이 본격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한 것은 세조 9년(1463) 이후로 세조는 자신의 신병과 관련하여 院相에게 국정을 일임하면서도 그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승지(출신)와 내종친 등 종친을 대거 종용한 것이었다.[78] 龜城君 李浚의 경우 세조 13년(1467) 이시애의 난 때에는 都摠使로서 난을 평정하였고[79] 세조 14년(1468)에는 영의정에 오르는 등[80] 종친들의 정치력은 강력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세조의 권력분산책, 왕권강화책의 일환이었다. 의정부와 6조에서 국사를 함께 품계하게 하고, 또 함께 논의하게 한 것과 의정부, 6조, 승정원, 功臣宰樞, 宗親 등이 국정을

---

75) 최승희, 1997, 앞의 글, p.11-12.
76) 『世祖實錄』 5권, 세조 2년 11월 乙亥.
77) 최승희, 1997. 앞의 글, pp.25-26.
78) 한충희, 1995, 앞의 글, p.10
79) 『世祖實錄』 42권, 세조 13년 5월 辛巳.
80) 『世祖實錄』 47권, 세조 14년 7월 甲戌.

함께 논의하게 한 것도 정치권력을 분산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조의 정치스타일에는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것이 여럿 있다. 常參, 視事, 輪對 등은 조선시대 왕정에서 공통적인 政事였으므로 세조대에도 다를 바가 없지만 死六臣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을 혁파하면서 경연도 폐지하고 경연을 親講으로 대신한 것은 특기할 점이다. 왕명을 下敎, 傳旨, 傳, 命 등으로 내린 것도 다른 왕대와 다를 바가 없으나 자주 공신, 대신, 승지들을 불러 국정을 논의하게 한 일과 또 그들에게 국정논의를 명한 일은 세조대 정치에서 거론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세종이 많은 관료들과 끊임없이 대화와 의론을 통하여 국정을 풀어간 정치전통으로 이어받으려 노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소의 국정을 일단 공신, 재추, 승지 등에게 논의하게 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함으로써 세조는 국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끌어가면서도 독단이나 전제의 혐의를 벗으려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세조대의 정치방식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親書政治를 들 수 있다. 세조는 그가 왕위를 차지하는데 협력한 공신, 재추들에 대하여 친화책의 일환으로써 또는 왕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혹은 외방에 파견한 관원들에 대한 관리방법으로써 御札, 御書를 자주 내렸다. 특히 御札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성이 강하게 내포된 것으로 생각된다.[81] 더불어 세조는 즉위 초부터 말년까지 자주 종친, 공신, 재추, 승지 등에게 酒席을 마련하여 군신간의 친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세조로서는 왕위를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종친, 공신, 재추들을 親王세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들에 대한 친화책의 일환으로 자주 술자리를 베풀고 함께 취하였다. 세조는 好飮癖이 있었고 정신적 강박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도 君臣이 모이는 기회마다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設酌하였다.[82] 그러한 과정에서 대신들 중에는 술자리에서 失言·失對하여 파직당하고 처형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으며, 공신 가운데 과음으로 죽거나 폐인이 된 자들이 여럿이 생길 정도였다.

81) 최승희, 1997. 앞의 글, pp.54-56
82) 최승희, 1997. 앞의 글, p.57

이렇게 공신세력에 대한 우대조치는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세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사헌부에서 보고하기를, "홍윤성이 사망한 護軍 金汗의 딸을 간통하려고 이달 7일에 김한의 집에 억지로 숙박하였는데 김한의 처는 그 딸을 데리고 이웃집에 몸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홍윤성은 재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중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혼인을 도모하여 윤리를 훼손하였으니 추핵할 것을 요청합니다.[83]

하지만 세조는 홍윤성에 대한 의정부와 대간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 후 홍윤성은 세조 5년(1459) 2월에 禮曹判書로 임명되었다. 또한 정난 1등공신이자 좌익 2등공신이었던 정인지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언급되었다.『세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지시하기를 "그날 정인지가 나를 너라고 칭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하는 일은 나는 모두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한 말이지만 옛 사람이 이르기를 취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지의 말이 대단히 거만하지만 훈구대신을 경솔하게 죄줄 수는 없다."[84]

정창손과 권람 등이 진언하기를, "정인지는 노쇠하여 음주만 하면 문득 대답에 실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정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수차 말하기를, "왕은 나에게만 어찌 항상 이와 같이 나무라는가" 하였다.[85]

주연이 한창 무르익을 때. 재상들에게 일어나 춤을 추라고 하였다. 인지가 왕 앞으로 나아가 한담을 주고받다가 문득 왕을 "태상"이라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경은 어찌 현재 임금을 태상이라고 하는가." 이

83)『世祖實錄』권13. 세조 4년 7월 丙申.
84)『世祖實錄』권14. 세조 4년 9월 辛丑.
85)『世祖實錄』권22, 세조 6년 11월 乙亥.

어 여러 재상들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오늘 군신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 때에 하동군(정인지를 뜻함)의 이 말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양성지가 말하기를 “인지에게 죄가 있습니다” 인지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죄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갑자기 잘못 말한 것이지 다른 마음이 있겠는가. 사죄하지 말라. 술을 따라 올려라.”라고 하였다.[86]

이외에도 정인지의 취중 발언은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세조는 그에게 죄를 주지 않았고 너그럽게 대하여 관직에서 삭탈된 일은 없었다. 이외에도 세조 7년에 영의정으로 임명된 鄭昌孫이나 정난 2등공신이었던 奉石柱를 비롯한 공신들에 대해서도 왕권에 크게 위협되지 않는 측면이라면 너그럽게 넘어갔다.

이렇게 세조는 宗親, 勳臣, 戚臣으로 이루어진 측근 세력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정국을 운영하였고 당시 왕권의 안정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데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세조때 설치되었던 많은 도감들에서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간경도감의 경우도 역시 도제조, 제조 등을 비롯한 인적 구성에서 이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 간경도감의 설치와 운영에서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86)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 2월 丙戌.

2. 조선 초기 배불론과 세조의 불교정책

1) 조선초기 억불정책의 추이

고려왕조는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유교국가이며 동시에 불교국가라는 양면적인 특성과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불교는 종교적 영역을 담당하면서, 정치적 영역을 담당한 유교와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말기 불교계의 세속화와 교단의 사회경제적 비대화의 현상으로 인해 유교와 불교, 관료체제와 교단체제 사이의 이원적 구조는 심각한 균열에 이르게 되었다.[87] 이로 인해 불교 교단의 사회경제적 모순과 승려들의 윤리적 타락 현상에 대한 유학자들의 비판을 야기하게 되었다.

고려 초기의 최승로 등의 경우처럼 유학자들의 불교비판은 주로 불교 교단의 비대화로 인한 현실적 폐단이나 불교의 출세간적 경향에 대한 제한적인 언급에 그칠 뿐 불교에 적대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불교의 존재 가치는 인정하되, 그것이 지닌 현실적인 부작용, 즉 출세간적 은둔주의, 인륜 경시의 측면, 일부 사회경제적인 폐해를 비판하는 정도였다.[88] 하지만 고려말기 사원경제의 팽창, 승도과잉의 비생산성, 국가재정의 파탄, 권문세족의 公田私有와 신진사대부에의 녹봉부족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강화하면서 고려말 전제개혁론의 대두와 함께 불교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성리학의 전래와 수용은 고려 사상계의 학문 연구 방향을 주자학 일변도로 나아가게 하였고 당시 여러 가지 모순과 폐단을 낳고 있던 불교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로 작용하였다. 즉 고려말기의 불교배척의 움직임이 주자학 전래의 영향으로 비로소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자학의 사상이 불교배척운동을 더욱 자극하고 조성하는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 것이었다.

정도전 같은 급진적인 사대부들은 공양왕과 이색 계열의 사대부들이 말하는 先王成典, 즉 고려의 종교적 지배이념인 불교를 부정하였고 현실

87) 최병헌, 2012, 앞의 논문, pp.1~3.
88) 박경환, 1995, 「현세적 가치와 출세적 가치의 대립」,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예문서원, p.75.

에 존재하는 불교를 부정하며 불교라는 지배이념이 떠받치는 고려왕조를 부정함으로써,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왕조를 내세우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급진적인 사대부들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왕조를 개창하였다. 이들은 仁義정치를 내세우면서 조선의 성립이 천명과 人心에 순응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종래 고려가 불교에서 제시하는 초월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였다면, 조선은 유교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명분을 내세워 왕권의 권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성리학의 이상정치를 추구한 유학자들이 왕정에 참여하고 국왕이 유교적 이상군주가 되며 유교이념에 맞는 관료정치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조선왕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성리학적 질서의 수립문제 곧 현실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불교와 같은 이단을 비판하고 이와 연결된 정치사회세력을 제어하며 성리학적 이념이 담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일이었고,[89] 조선초기 사대부들은 억불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

조선의 개창세력들이 유교적 정치이념을 강화하고 그 정치, 사회적 이념확립과 구현에 전념했던 만큼 그 연장선에서 억불정책이 추진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유신들이 강력하게 배불책을 지향하고 있음에 비해 그 자신이 불자이기도 한 태조는 조정의 억불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태조가 즉위한 지 불과 3일 후에 사헌부에서 올린 승니 태척과 같은 강력한 건의에 대하여 '개국의 초에 거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불허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불교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당시 불교의 폐단까지도 용인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조정의 건의로서 타당한 불교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허락하는 한편, 그 자신이 직접 불교의 시폐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태조가 불교계에 대해 취한 조치는 출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고려말 이래로 정부가 취해오던 조치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태조 1년(1401) 9월 도평의사사의 배극렴, 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하는 중에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89) 도현철, 2004, 「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오영교 편, 혜안, pp.19-20.

무릇 중이 되는 사람이 양반의 자제이면 닷새 베 1필을, 서인이면 1백 50필을, 천인이면 2백 필을 바치게 하여, 소재한 관사에서 이로써 관에 들어온 베의 숫자를 계산하여 그제야 도첩을 주어 출가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출가하는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할 것.[90]

이라고 하여 태조도 이대로 쫓아서 신분에 따라 정전액에 차등을 두어 도첩제를 강화함으로써 公私有役子의 출가를 되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승려들이 중앙과 지방의 대소 관리들과 結黨하여 寺社를 건축하기도 하고, 혹은 佛書를 인쇄하기도 하며, 심지어 官司에까지 물자를 청구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있다고 하여 모두 금지시켰다.[91]

그리고 태조는 사찰의 토지와 관련한 조치로서는 특별한 정책을 시행한 바가 없었지만 寺社間閣, 노비와 전지, 법손노비의 수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조치를 취했다.[92] 더불어 사사전에 대해서도 과전법의 개혁 내용을 답습할 뿐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만 태조 6년 10월에 寺社田租의 공수조치를 취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태조 대에는 불교계의 문제점을 한정적으로 인식한 결과 결국 사사의 전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억제조치가 없었고 다만 田地의 조사와 일시적인 전조공수 조치만 있었다.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불교정책의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의 재위기간이 2여년에 불과하였고 상왕으로 물러난 태조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대 태종이 즉위하면서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하여 억불정책 및 불교교단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태종대의 불교정책은 크게 다음의 4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寺社革去와 寺社田民의 삭감
② 宗團의 통폐합
③ 王師 國師 制度의 철폐, 度牒制의 엄격한 시행
④ 陵寺(陵의 齋社)制의 금지

90) 『太祖實錄』 권2 태조 1년 9월 壬寅.
91) 『太祖實錄』 권2, 태조 원년 9월 壬寅.
92) 『太祖實錄』 권12, 태조 6년 7월 甲寅.

태조가 즉위하자마자 환관들이 願佛로서, 오랜기간 동안 왕궁에 안치해 온 仁王佛을 궁 밖의 內院堂으로 옮기게 되었다. 새 왕이 즉위함에 환관들이 불상을 진상하고자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내원당으로 옮긴 것이었다.[93] 그리고 태종 2년 4월 서운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언을 올렸다.

> 먼저 불씨의 도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우시다면, 선종을 합하여 조계종으로 하고 오교를 화엄종으로 합해서 밀기부의 京外 70사를 양종에 분속시켜 덕행이 있어 사표가 될 만한 자를 가리어 주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토와 노비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승려가 되는 자는 적을 것입니다. 엎으려 원컨대, 전하께서 밀기부 70사 이외의 나머지 裨補에 실려 있는 경외 각사 토전의 수조를 군자에 영속시켜 3년 동안 비축하고 그 노비를 각 관사와 주군에 분속케 한다면 곧 兵食이 충분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불교의 폐단의 제거하는 이 외에 다른 부국강병책을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94]

이에 태종은 의정부 등 정부 주요기관에서 이를 다시 의논하여 보고토록 한 다음 그 제의를 일부 수정하여 시행케 하였다. 그러나 태상왕 이성계는 태종을 종용하여 無學 自超가 있는 檜巖寺에 이전 屬公한 300결을 다시 환원시키고 60결을 더 지급하게 하고,[95] 그해 6월에는 밭 74결을 더 내려주었다.[96] 아울러 태종에게 밀기에 붙지 않은 寺社라 할지라도 그 土田을 모두 환급시키고, 승려의 도첩을 推問하지 말며,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불상을 만들고 탑을 세워 자기 뜻을 잇도록[97] 함으로써 억불정책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게 하였다. 이에 따라 억불정책은 불과 4개원 후에 다시 환원되기는 하지만 불교교단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

93) 『定宗實錄』 권6 정종 2년 11월 癸酉.
94) 『太宗實錄』 권3, 태종 2년 4월 甲戌.
95) 『太宗實錄』 권3, 태조 2년 5월 甲辰.
96) 『太宗實錄』 권3, 태조 2년 6월 戊午.
97) 『太宗實錄』 권3, 태조 2년 8월 癸丑.

하지만 태상왕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던 억불정책은 태종 4년(1404) 말경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조정 유신들의 건의에 따라 동왕 4년(1404) 12월 부녀상사를 금지하고 동왕 5년(1405) 8월 전국 폐사의 전지와 노비를 속공시킨 조치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동년 11월부터 주로 사사전 및 노비의 대폭적인 혁거, 사사 및 거주승려 수의 감축, 종파의 병합축소 등 조치들이 강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지방사원 주지들의 타락과 비행을 계기로 의정부에서 불교의 통제책을 상소함으로써 단행되었다.

또한, 태종 5년 11월 金山寺 주지 道澄이 그 절의 노비 姜庄·강덕 자매를 간통하고, 土田의 소출과 노비의 貢貨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臥龍寺 주지 雪然이 그 절의 여종 加伊 등 다섯 명을 奸行한 일이 알려졌다. 이에 의정부에서 불교의 폐단을 열거하고, 금산사 등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청하는 上書를 올렸다. 상소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불교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고 믿는 자가 많아서 갑자기 고칠 수 없사오니, 前朝의 밀기로서 비보사사에 붙인 것과 외방 各官의 답산기로서 사사에 붙인 것은 新·舊京의 오교·양종의 각 1사와, 외방 각도의 府官 이상은 선·교 각 1사, 監務官 이상은 선·교 중 1사에 붙이어 아직 그 전대로 하게하고, 所在官으로 하여금 그 노비의 인구수를 정하여 각기 그 절의 10리 밖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하고, 밥을 짓고 공급하는 일은 다만 사역시키는 奴子만을 쓰게 하되, 100명이 사는 곳은 20명, 50명이 사는 곳은 10명, 10명이 사는 곳 이하는 2명씩 매년 교대하여 윤번으로 입역하게 하고, 그 나머지 노비의 身貢과 土田의 所出은 모두 다 거두어들이고, 노비가 없는 사사는 비보 이외의 사사 노비와 토전으로 적당히 옮겨주되, 살고 있는 승려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매 季月마다 헤아려 판결하여, 각각 그 法으로 수행하게 하고, … 만일 婢子가 절 안에서 立役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모두 禁斷하며, 婢子가 절 안에서 來往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승려와 奴婢의 집에 내왕하는 승려는 다른 사람이 陳告하는 것을 허락하되, 布 1백 필을 징수하여 고한 자에게 賞으로 주고, 그 승려는 머리를 길러서 充軍하소서. 그 나머지는 各寺의 奴婢는 모두 屬公시키고, 절 안에서 밥을 짓고

불을 때는 等事는 직책이 없는 雜僧으로 충당하게 하고.[98]

이러한 상소에 대해 태종은 그대로 윤허하고, 오직 衍慶·興天·華藏·神光·釋王·洛山·聖燈·津寬·上元·見菴·觀音窟·檜庵·般若殿·萬義와 서울의 甘露 등의 寺社는 예전대로 하게 하였다.[99] 그해 12월에는 승려들이 공이 있다고 칭하여 寺社 奴婢를 속여 얻어서 마음대로 弟子나 族人에게 사사로이 주는 것을 못하도록 하여 소유권 동결을 단행하였다.[100]

또한 태종 6년(1406) 3월 의정부에서는 왕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계청하였다.

> 本府에서 일찍이 受敎하기를, 고려 密記[101]에 붙은 裨補寺社[102] 및 外方 각 고을 踏山記에 기재된 寺社 가운데, 新都(한양)와 舊都(개성)는 五敎兩宗을 각각 1寺씩, 外方의 牧·府는 선종·교종을 각각 1사씩, 郡·縣은 선종·교종 중에 1사를 잘 헤아려 남겨 두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의논된 것은, 신도와 구도의 각사 가운데 선종·교종 각각 1사에는 屬田이 2백結, 奴婢가 1백 口, 常養(승려)이 1백 명으로, 그 나머지 각사에는 속전이 1백결, 노비가 50구, 常養이 50명이며, 各道 界首官의 선종·교종 가운데 1사에는 속전이 1백결, 노비가 50구이고, 각 고을 邑 안의 資福에는 給田이 20결, 노비가 10구, 常養이 10명이며, 읍 밖의 각사에는 급전이 60결, 노비가 30구, 常養이 30명입니다.[103]

태조가 머물렀던 양주의 檜巖寺는 佛道에 뜻이 있는 僧徒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속공에서 제외시켜 田地 1백결과 노비 50구를 더 급

98) 『太宗實錄』 권10, 태종 5년 11월 癸丑.
99) 『太宗實錄』 권10, 태종 5년 11월 癸丑.
100) 『太宗實錄』 권10, 태종 5년 12월 壬申.
101) 道詵密記에 의하여 태조가 창건한 사찰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들 사찰은 裨補記에 등재되어 있다. 黃仁奎, 1998, 「高麗 裨補寺社의 設定과 寺莊運營」, 『東國歷史敎育』6, p.60.
102) 고려 태조에 의해 개경을 중심으로 창건되어 운영된 사찰로서 道詵의 裨補寺塔說에 근거를 두고 있다. 許興植, 1986, 『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p.60.
103)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3월 丁巳.

여하라고 하였다. 금강산의 표훈사와 유점사도 회암사의 예에 따라 원래 속해 있던 노비는 예전대로 두고 정한 숫자 외의 사사도 잘 헤아려 柴地 1-2결을 주라고 하였다.[104] 그리고 고려의 밀기에 붙은 各寺는 구도에서는 名堂을 비보하는 것이나, 그 신도의 명당에는 실로 손익이 없다. 그러므로 그곳에 소속한 전지와 노비를 오교 양종 가운데 전지와 노비가 없는 각사에 옮겨서 급여하고, 또 정한 숫자 외의 寺社 전지와 노비를 정한 숫자 내의 各寺에 옮겨서 급여하고 그 나머지는 속공할 것을 청하였다.[105] 또한, 전국의 寺社 수를 제한하여 합류 및 잔류시킬 것을 정하였다.

曹溪宗과 摠持宗은 합하여 70사를 남기고, 天台宗의 疏字宗·法事宗은 합하여 43사를 남기고, 華嚴宗·道文宗은 합하여 43사를 남기고, 慈恩宗은 36사를 남기고, 中道宗·神印宗은 합하여 30사를 남기고, 南山宗·始興宗은 각각 10사를 남길 것.[106]

이러한 조치에 따라 종단은 조계종, 총지종. 남산종, 천태소자종, 천태법사종, 화엄종, 도문종, 자은종, 중도종, 신인종, 시흥종 등 11종에서 7종으로 축소되었고 242사의 비보사사로 정리되었다.

또한 태종 7년 12월에는 사사를 혁파하여 없앨 때 三韓 이래의 대가람이 도리어 汰去되어 망하여 폐지된 사사에 주지를 내려 보내는 일도 간혹 있어서 승도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 산수 좋은 곳의 대가람을 택하여 태거된 사원에 승려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정부 상소가 있었다. 이에 따라 242사에 들지 못했던 명찰을 선정하여 각 고을의 資福寺를 대체하게 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태종 7년 資福寺로 지정된 사찰 목록

曹溪宗(24寺)	양주 통도사, 송생 쌍암사, 창녕 연화사, 지평 보리갑사, 의성 빙산사, 영주 정각사, 언양 석남사, 의흥 인각사, 장흥 가지사, 낙안 징광사, 곡성 동리사, 감음 영각사,

104) 『太宗實錄』 권10, 태종 6년 3월 丁巳.
105) 『太宗實錄』 권10, 태종 6년 3월 丁巳.
106) 『太宗實錄』 권10, 태종 6년 3월 丁巳.

	군위 법주사, 기천 정림사, 영암 도갑사, 영춘 덕천사, 남양 흥법사, 인동 가림사, 산음 지곡사, 옥천 지륵사, 탐진 만덕사, 청양 장곡사, 직산, 천흥사, 안성 석남사
天台宗(17寺)	충주 엄정사, 초계 백암사, 태산 흥룡사, 정산 계봉사, 영평 백운사, 광주 청계사, 영해 우장사, 대구 총천사, 도강 무위사, 운봉 원수사, 대흥 송림사, 문화 구업사, 금산 진흥사, 무안 대굴사, 장사 선운사, 제주 장락사, 용구 서봉사
華嚴宗(11寺)	장흥 금장사, 밀양 엄광사, 원주 법천사, 청주 은흥사, 의창 웅신사, 강화 전향사, 양주 성불사, 안변 비사사, 순천 향림사, 청도 칠엽사, 신령 공덕사
慈恩宗(17寺)	승령 관음사, 양주 신혈사, 개령 사자사, 양근 백암사, 남포 성주사, 임주 보광사, 의령 웅인사, 하동 양경사, 능성 공림사, 봉주 성불사, 여흥 신이사, 김해 감로사, 선주 원흥사, 함양 엄천사, 수원 창성사, 진주 법륜사, 광주 진국사
中神宗(8寺)	임실 진구사, 함풍 군니사, 아주 동림사, 청주 보경사, 봉화 태자사, 고성 법천사, 백주 견불사, 익주 미륵사
摠南宗(8寺)	강음 천신사, 임진 창화사, 삼척 삼화사, 화순 만연사 나주 보광사, 창평 서봉사, 인제 현고사, 계림 천왕사
始興宗(3寺)	연주 오봉사, 연풍 하거사, 고흥 적조사

태종의 배려로 亡廢된 사찰을 대체해 새로이 자복사로 지정한 88사를 보면, 태종 6년 3월에 공표한 전국 11개 종단이 태종 7년 12월에 자복사를 지정하면서 조계종·화엄종·자은종·중신종·총남종·시흥종의 7개 종단으로 다시 감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천태소자종과 법사종이 합해 천태종이 되고, 화엄종 도문종이 화엄종으로 별립되면서 도문종은 사라지고 조계종, 자은종, 시흥종은 각각 그대로이며, 중도종 신인종이 합쳐져 중신종으로, 남산종은 조총지종과 다시 합쳐져 총남종이 되었다.[107]

태종의 억불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왕 18년(1418)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태종 8년(1408) 7월 태종의 재궁으로서 개경사가 창건되자 그 10월에는 태조가 창건한 선종본사 흥천사의 元屬 토지와 노비를 국가에서 몰수하고 개경사를 선종 본사로 삼았으며, 대신 흥천사에는 화엄종의 支天寺를 폐하고 그 전민을 준 후 화엄종에 속하게 하였다.[108] 태조가 강화에서 대장경판을 수송할 때 잠시 그것을 봉안케 하기도 했던 지천사를 폐지한 것은, 이 절이 태평관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와 중국 사신과 수행원을 위한 숙소로 쓰기 위함이었다.[109] 이 조치 또한 의정부의 계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서 유신들은 배불의 여러 방안

107) 이봉춘, 2015,『조선시대 불교사연구』, 민족사, p.158.
108)『太宗實錄』권16, 태종 8년 7월 乙亥.
109)『太宗實錄』권16, 태종 8년 10월 乙未.

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많은 정책이 실행되었다. 승도의 도첩을 정밀하게 살펴 무도첩자를 환속시키는 한편[110] 처녀로서 니승이 된 사람을 모두 환속 혼인시키도록 하고,[111] 사간원의 상소에 따라 내원당을 혁파하기도 하였다.[112]

태종의 뒤를 이은 제4대 세종의 재위 32년간(1418-1450)은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국가재정의 충실, 영토의 확장, 민생의 안정, 문화의 爛熟, 국게 관계 안정 등 제 방면에 걸쳐 개국 이래 가장 큰 발전을 이룩한 시대였다. 세종 치세의 이 같은 발전은 전적으로 세종 개인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선대, 특히 태종대의 개혁과 성과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태종대에 정치사회적인 제도의 개편과 함께 물질적 토대가 어느 정도 굳건히 다져지고, 그 터전 위에서 세종대에는 이를 더욱 심화 세련시키는 작업이 추진된 것이다.[113] 불교정책에 있어서도 세종은 태종대의 배불정책을 그대로 계승, 강화하였다.

세종대의 불교정책은 크게 다음의 9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寺社의 노비와 승려들이 相傳하는 法系의 노비를 革去 屬公함
② 7宗을 禪敎兩宗으로 통폐합
③ 사원수를 대폭 줄임
④ 內佛堂을 폐함
⑤ 都城內에는 興天寺와 興德寺만 남기고 나머지 사원은 철폐
⑥ 불사의 設行을 줄여서 비용을 절약함
⑦ 철폐된 사원의 佛像과 鐘을 녹여서 병기로 만듬
⑧ 승도들이 함부로 도성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함
⑨ 度僧制를 엄하게 시행하고 특히 年少者의 출가를 금함

세종이 즉위한 후 가장 먼저 시행한 조치는 사원노비의 전면적인 혁거 속공이었다. 세종 3년 8월 형조판서 許遲의 상서에서,

---

110) 『太宗實錄』 권20, 태종 10년 11월 癸未.
111)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6월 丙子.
112) 『太宗實錄』 권24, 태종 12년 7월 壬子.
113) 한영우, 1991,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p.68.

> 대저 불교라는 것은 청정과 慈悲를 가지고 주장으로 삼으므로, 釋迦는 고행과 걸식으로 도를 이루었다 하고, 六祖도 자신이 몸소 절구방아 일을 하였다가 바로 그들의 祖派를 이어 받게 되었다 하니, 모두 부지런히 수행하고 욕심이 적은 것으로 道로 삼았으며, 奴婢를 가지고 봉양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114]

라고 하여 노비의 혁거를 주장하여 법손 노비는 모두 관에 속하도록 하고, 그들의 자식들은 형편에 따라 각기 그 宗都會所에 분배하게 하며 죄를 지은 승려들은 변방 먼 곳에 보내어 군에 보충하게 하였다. 또한 양반의 자제로서 승려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부모나 친족이 승록사에 신고하면 예조로 보고하고, 나라에서 교지를 받은 뒤에 丁錢을 납부한 후 度牒을 주어 출가하게 하였다. 또한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獨子, 처녀는 출가를 금하였다.

그리고 사원노비의 혁거 속공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태종 5년(1405) 시행된 조치를 이어받아 革罷한 사찰과 노비 가운데 처리가 되지 못한 것을 계속 추진한 것이었다.[115] 세종대 사사노비 전원을 속공시킨 조치는 태종 5년(1405)때와 마찬가지로 승려들의 寺婢에 대한 음행사실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의정부, 대간, 육조에서 일제히 사사노비는 물론 승려들이 상전하는 법속노비까지도 혁거하여 속공시킬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이러한 신료들의 상소에 대해 세종은 사사노비의 혁거만을 받아들여 중외의 모든 사사노비는 물론 개경사, 연경사, 대자암 같은 능사의 노비까지도 혁거하고 다만 淨業院은 과부들이 모인 곳으로 비구가 가까이 하는 곳이 아니라 하여 이곳만은 제외시키고 있다.[116] 그리하여 혁거속공이 된 사사노비는 세종 3년 典農寺에 소속되었다.[117]

또한 세종 6년(1424) 2월부터 사헌부를 비롯하여 의정부, 육조, 집현전, 성균관, 예문관 등 조정의 여러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배불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동년 2월 사헌부 대사헌 河演 등은 흥천사의 노비들이 宗選

114) 『世宗實錄』 권13, 세종 3년 8월 乙未.
115) 『世宗實錄』 권6, 세종 원년 11월 丁卯.
116) 『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戊辰.
117) 『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戊戌.

을 행할 때의 규정으로서 금하는 油蜜果를 사용하고 금령을 어기고 음주하였으며, 焚修僧의 인원수를 자의로 감소시켜 그 비용을 전용한 사실 등을 들어 이에 대한 규탄과 함께 불교 전반을 대폭 정리할 것을 상소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영의정 柳廷顯, 좌의정 李原, 호조판서 李之剛 등 조정의 각 기관 제신으로부터 성균관 유생들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대한 여러 차례 상소가 올라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종 6년 4월 예조에서 불교종파 정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제시하였다.

… 조계, 천태, 총남 3종을 합하여 선종으로, 화엄, 자은, 중신, 시흥 4종을 합하여 교종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승도가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사를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일입니다. 그리고 전지를 優給하고 거승의 수를 배정하여 … 승록사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를 선종도회소로, 흥덕사를 교종도회소로 하며, 年行이 함께 높은 이를 뽑아 양종의 行首掌務를 삼아서 승중지사를 살피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분속하려는 서울과 지방의 사사와 거승의 정액과 급여할 전지의 결수를 啓합니다.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사가 18개소, 전지가 4,250결, … 교종에 소속된 것으로는 사가 18개소, 전지가 3,700결입니다.[118]

이러한 예조의 제안에 따라 대대적인 배불정책이 시행됨으로써 7종을 통합하여 선교 양종으로 하고 중외의 36사만 자격을 인정하고 양종에 18사씩 분속시키며 각 잔류 사사에 전지를 우급하고 항거승의 수를 배정하며 승록사는 파하고 경중의 흥천사, 흥덕사를 각기 선, 교종의 도회소로 삼았다. 또한 서울과 지방의 寺社와 거처하는 승려의 정원과 급여할 전지의 結數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田地가 4천 2백 50결입니다. 서울 흥천사는 元屬田은 1백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恒居僧은 1백 20명입니다. 留後司 崇孝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백명이며, 演福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백명이며, 개성 觀音堀은 원속전이 45결인

118) 『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庚戌.

데, 이번에 1백 5결과 水陸位田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이며, 경기 楊州 僧伽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입니다. 開慶寺는 원속전이 4백결이고, 항거승이 2백명이며, 檜巖寺는 원속전이 5백결이고, 항거승이 2백 50명이며, 津寬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륙위전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高陽 大慈菴은 원속전이 1백52결 96卜인데, 이번에 97결 4복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충청도 公州 鷄龍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경상도 晉州 斷俗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慶州 祇林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전라도 求禮 華嚴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泰仁 興龍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 高城 楡岾寺는 원속전이 2백 5결인데, 이번에 95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50명이며, 原州 覺林寺는 원속전이 3백결이고, 거승은 1백 50명입니다. 황해도 殷栗 亭谷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함길도 安邊 釋王寺는 원속전이 2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119]

위의 기록에서 따르면, 선종에 소속된 18개 사사에 지급할 전지는 총 4천 2백 50결이었으며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었다. 또한 원속전의 경우 적게는 45결, 많게는 500결이었으며 항거승도 70-250명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종에 소속된 18개 사사를 살펴보면,

敎宗에 소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가 3천 7백결입니다. 서울 흥덕사는 원속전이 2백 50결이고, 거승은 1백 20명이며, 유후사 廣明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神巖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開城 甘露寺는 원속전이 40결인데, 이번에 1백 6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경기 海豊 衍慶寺는 원속전이 3백결인데, 이번에 1백

119) 『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庚戌.

결을 더주고, 거승은 2백명이며, 松林 靈通寺는 원속전이 2백결이고, 거승은 1백명이며, 楊州 藏義寺는 원속전이 2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이며, 逍遙寺는 이번에 속전이 1백 50결이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충청도 報恩 俗離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1백 4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忠州 寶蓮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경상도 巨濟 見巖寺는 원속전이 50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陜川 海印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1백 2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입니다. 전라도 昌平 瑞峯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全州 景福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 淮陽 表訓寺는 원속전이 2백 1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50명입니다. 황해도 文化縣 月精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海州 神光寺는 원속전이 2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평안도 平壤 永明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120]

위의 기록에 따르면, 교종에 소속된 18개 사사에 지급한 전지는 총 3천 700결이며 선종과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원속전의 경우 적게는 40결, 많게는 300결이 있었으며 항거승도 70-150명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교종과 선종을 비교하면 선종이 교종에 비해 총 전지의 결수도 훨씬 많고, 각 사사별로 분급받은 토지 결수 및 항거승의 수도 많은 편이었다.

<표 2> 세종 6년 불교 종파의 통합

종파통합	殘留寺	給餘田地	恒居僧	京中都會所
曹溪宗 天台宗 → 禪宗 摠南宗	18寺	4,250結	1,970명	興天寺
華嚴宗	18寺	3,700結	1,800명	興德寺

120)『世宗實錄』 권24, 세종 6년 4월 庚戌.

慈恩宗 中神宗 → 敎宗 始興宗				
합계	36寺	7,950結	3,770명	

이러한 억불정책은 불교 각 종파의 성격은 물론 그 기능이나 의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의 행정 편의 위주로 종파를 폐합하고 사사를 대폭 정리함으로써, 막대한 사원의 전지를 강제 속공시키는 정책이었다.[121] 그리고 이 같은 배불정책은 주전이나 병기 제작을 위한 망폐사사의 불탑과 불기 등의 수납으로 나타나고,[122] 사찰에서 불공한 승려와 속인을 처벌하거나, 慶讚會에 참석한 승속 각인을 태와 장으로 논죄하는[123] 형태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승도의 도성출입을 규제하는 기록이 보이는데,

> 이제 서울 안에 출입하는 승도들은 모두 帖字를 상고하여, 禪敎宗의 승려는 각기 그 宗의 色掌이, 各司의 임무를 맡은 승려는 각각 그 관아에서 징험하되, 汗蒸僧과 明通寺의 승려는 본조에 의뢰하여 모두 印信이 찍힌 첩자를 발급해 주게 하고, 성안에 머물러 숙박하지 않고 공무로 인해 출입하는 자는 금하지 말도록 하옵소서.[124]

라는 예조의 계청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또한 세종 19년 5월 세종은 예조에 전지하여

> 京山의 僧徒가 부모친척을 보기 위해서나 시장에 매매하는 일로 입성하는 자는 도첩을 詳考하여 출입을 허락하게 하고, 먼 지방의 승려까지도 그 所在官의 文憑과 도첩을 詳考하여 출입을 허락하게 하라.[125]

고 지시하였고 세종대 승려의 도성출입금령은 무도첩승려의 단속과 관련

121) 이봉춘, 2015,『조선시대 불교사연구』, 민족사, p.214.
122)『世宗實錄』권29, 세종 7년 9월 戊戌 ;『世宗實錄』권108 세종 27년 6월 丁巳.
123)『世宗實錄』권33, 세종 8년 8월 壬午 ;『世宗實錄』권65 세종 16년 7월 壬午.
124)『世宗實錄』권49, 세종 12년 9월 己亥.
125)『世宗實錄』권77, 세종 19년 5월 丁未.

된 조치로서 볼 수 있다.

한편 內佛堂은 본래 태종이 창덕궁 밖에 태조의 추복을 위해 文昭殿을 세울 때 그 담 동쪽에 함께 세웠던 법당이었는데 세종 15년(1433), 문소전이 原廟로 옮겨지고 내불당은 철폐되었다. 내불당이 혁파되자 불상은 흥천사에 移安되었다.[126] 하지만 세종 30년 세종에 의해 다시 궁 안에 세워졌다.

조선초기의 이러한 억불정책을 통해 불교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사찰의 토지와 노비가 屬公되어 사원의 경제기반은 크게 약화되었고, 승려의 출가도 제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현저히 낮아졌다. 더불어 세종 6년(1424) 공적 기구인 승록사가 폐지되는 과정은[127] 결국 불교가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위치 및 역할을 서서히 상실해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6) 『世宗實錄』 권59, 세종 15년 正月 癸未 및 2월 庚子.

127) 『경국대전』에서는 六曹의 기능이나 官制, 試取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선종'과 '교종'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아, 兩宗이 국가의 중앙통치조직에서 탈락하였음을 확정할 수 있다. 승록사가 사라지고 세조대 제정된 대전이 수정되면서, 選試나 住持 임명 등의 규정이 항목명과 맞지 않게 度僧 조항 아래로 통합된다. (양혜원, 2017,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2) 세조의 불교관과 흥불사업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 초기 태종대에 정치사회적인 제도의 개편과 함께 물질적 토대가 어느 정도 다져지고, 그 터전 위에서 세종대에는 이를 더욱 심화 세련시키는 작업이 추진되었다.[128] 불교정책에 있어서도 세종은 부왕인 태종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더욱 강경한 억불정책을 실행하였다. 그의 대불인식에 있어서도, 세종은 佛事와 관련하여 신하들과 논란을 벌일 때마다 "불교는 믿을 것이 못된다."[129] 또는 "내가 이를 존숭해 믿는 것이 아니다."[130]라고 말했다. 명의 영락제가 조선에 있는 사리를 요청했을 때도 명나라의 사신 황엄에게 文昭殿의 내불당에 보관하고 있던 석가여래의 사리 네 개와 우리나라에서 선별한 사리 550개를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내주었다. 그는 당시 "사리 네 개는 신라 이래로 대대로 寶藏하였던 것이며, 또 진정한 것이어서 영검스럽고 이상스러운 일이 많았으니, 남겨 두어서 법문의 보호가 되게 하여 달라."는 승려 竺丘의 말에 대해서, "승려들은 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국가의 체통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거절했다. "비록 그 사리를 바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재화나 괴변이 없을 것을 (내가) 보증하겠으니, 염려하지 말라."[131]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 중기 이후 세종의 불교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불교정책은 그 전기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세종실록』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 처음에는 임금이 돈독하게 儒術을 숭상하여 학문을 좋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비로소 집현전을 설치하고 文士를 모아서 講官에 충당시키고 밤마다 3, 4鼓가 되어야 비로소 취침하며, 中官을 보내어 숙직하는 곳에 가서 顧問하기를 끊이지 아니하므로, 당직된 사람은 반드시 밤새도록 의관을 단정히 하고서 기다려야 했었는데, 中年 이후에 이르러 연속하여 두 아들을 잃고, 昭憲王后가 또 별세하니, 佛者들이 비로소

128) 한영우, 1991,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p.68.
129) 『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7월 壬午.
130) 『世宗實錄』 권82, 세종 20년 7월 己丑.
131) 『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9월 成申.

그의 학설을 드리게 되어, 임금이 그만 불교를 숭상하게 되었고, 불당을 세우게 하매, 시종과 대간·유신들이 그 옳지 아니함을 極言하였으므로, 임금이 몹시 미워하여 자주 물리쳤으되, 혹은 이르기를, "실지의 일에 쓸모없는 선비[迂儒]"라 하고, 혹은 "더벅머리 선비[竪儒]"라고도 하였다.[132]

세종이 신불하게 된 것은 廣平大君, 平原大君 및 소헌왕후의 죽음, 그리고 마음 붙일 곳이 없는 틈을 이용한 불자들의 접근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追薦의 불사가 계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두 왕자의 잇따른 죽음과 말년 왕후의 서거와 같은 단편적인 사건들이 전적으로 세종의 신불 동기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조선 초기 과도기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종의 나이 17세 때 중전이 병으로 위독하자, 태종은 약사여래에게 기도하는 불사를 설행하게 된다. 당시 태종은 불교가 허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전의 불교신앙을 명분으로 삼아 기도불사를 계획하였다.

임금이 승도에게 말하기를 '이처럼 위급한 때에 신비로운 효험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높여 믿겠지만, 만약 보응이 없으면 반드시 너희들 법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향을 피우게 하고 임금이 친림하여 연비하니 세자와 여러 왕자들도 모두 연비하였다. 승려들 가운데에 이마를 불사르고 손가락을 태우는 자도 있었으니 보시를 차등으로 내려 주었다. 중전의 병이 조금 나았다. 임금이 기뻐하여 회암사에 田 1백 결과 곡식 2백석을 하사했다.[133]

바로 이러한 자리에 청년 세종은 왕자로서 동참하여 연비의 예불까지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종교적 경험들은 세종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신의 즉위한 이후에도 세종 2년 5월 모후 대비가 학질에 걸리자 당혹감 속에 환관을 개경사에 보내 관음기도를 올리게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134] 또 그 이튿날에는 약사여래를

132) 『世宗實錄』 권127, 세종 32년 1월 甲午.
133)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5월 甲申.
134)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 5월 丙申.

비롯한 주위 곳곳에서 구병 기도 행사를 펼치게 하고 스스로는 궐내에서 식사와 취침을 미루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후의 질병이 학질로 판명되므로 세종은 불교식 치병구안의 끈을 놓지 않았고 모후의 별세 2일 전까지도 救病觀音精勤은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부왕 태종이 발병하자 세종은 역시 큰 사면조치를 취하면서 곳곳에 구병 기도행사를 올리게 하였다. 그 초기의 기도장소로는 道殿, 佛宇, 名山, 宗廟, 昭格殿 등이었으나, 이어서 여러 신하들을 나누어 보내 흥천사·승가사에서는 약사정근을, 개경사에서는 관음정근을 올리게 하였는데, 마침내 '병환이 조금 나았다'고 했다.[135] 또 그 이튿날에는 또 판돈령부사 권홍으로 하여금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올리게 하고 호조판서 신호에게는 길상사에서 나한재를 올리게 하였다.[136]

그리고 세종 28년(1446) 3월에는 소헌왕후가 발병했을 때도 역시 불사를 실시하였다. 발병 2일 후 세자가 여러 대군들과 함께 산천과 신사, 불당에 기도하려 하자 세종은 동감하며 즉시 거행하게 하고, 나아가 민심화응을 유도하는 큰 사면 조치도 단행했다.[137] 그 초기의 기도에서는 승려 49인을 불러 세종과 왕비가 이어한 수양대군의 집 서쪽 대청에서 다음날까지 설행하였지만 중전의 병증은 오히려 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 규모를 더 크게 하였는데 당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중전의 병이 더욱 심하여 다시 승려 80인을 모아 時御所에서 정근하며 밤을 새우게 했다. 세자가 팔을 태우니 여러 대군들과 내시들도 경쟁적으로 팔을 태웠다. 승려 일운에게 홍단 1필, 황견 3필, 세주 1필, 백면포 3필을 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각각 차등으로 하사했다.[138]

오랜 기간 상하 대중의 의식을 지배했던 불교의 문화적 전통이 일부분 지속되고 있었던 조선초기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의 불교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서

135) 『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 5월 庚申.
136) 『世宗實錄』 권16, 세종 4년 5월 壬戌.
137)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 3월 己卯, 庚辰.
138)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 3월 壬午.

술한 바와 같이 이로 인해 왕과 사대부 관료 사이에 갈등양상이 발생하는데 세종의 집권 후반기 즉 세종 20년(1438)부터 세종이 서거한 세종 32년(1450)까지의 12년간은 불교로 인한 충돌로 점철된 시기였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흥천사 사리각 수리를 둘러싼 충돌이었다. 세종 20년(1438) 태조가 건립한 궁궐 동쪽의 흥천사 사리각(5층)이 퇴락하게 되자 세종은 개조를 명했다. 세종은 처음에 이 공사를 위해 僧軍 6백명을 동원해 사역하도록 했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다시 “중으로 자원하여 30일 동안 노역한 자는 度牒을 주고, 양식을 가지고 온 자는 15일만 노역하여도 도첩을 준다”는 왕명을 내렸다. 이에 사방의 중들이 노소를 물론하고 모두 서울에 모여 들어 흥천사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 사찰 부근 여염집에 숙사를 정하고 백성과 섞여서 거처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安純과 成達生, 李順蒙 등 고위직 대신들이 제조가 되어 그 일을 감독하여, 도성에서는 일일공양[日齋]을 한다면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이로 인해 도첩의 무분별한 남발 문제가 야기되었고 조정 신료들은 먼저 흉년을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요청했다 흉년이 든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음식 공궤로 인해 “흉년 끝에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세종은 “근래에 비록 흉년이라 하나 승을 공양하는 것은 진실로 헛되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노역하는 사람에게 공궤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겠느냐.”[139]고 반박했다. 그러자 언관들은 궁궐에 佛骨을 들여온 것을 들어 비판했다. 사리각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보관 차에 불골을 궁궐 안으로 들여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사헌부에서는 불골과 같은 더러운 물건이 궁궐에 들어온 것은 극히 놀라운 일이며,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매한 백성들의 미혹함이 이로부터 한층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간원 역시 불골과 사리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세종은 “내가 이를 존숭해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더럽다고 했는데, 이미 더러운 물건이라면 흥천사의 사리각에 내다 둔다는 것도 역시 불가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언관들은 “전하께서 숭상하고 믿으신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불골이 더럽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골이란 것은 불서에 있어야만 비로소 그

139) 『世宗實錄』 권80, 세종 20년 2월 乙亥.

처소를 얻는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세종 역시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땅히 (그 요청을) 따르겠다."[140]고 회답했다

그러나 사리각 개조가 끝나고 불골이 돌아가자 언관들은 효령대군의 '호불행위'를 비판하고 나섰고 더불어 이번에는 승도들을 체포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까지 취했다. 즉 효령대군 등이 흥천사에서 安居會를 개최하자, 사헌부는 "근고 이래로 도성 안에서 불사를 행함은 듣지 못했는데" "불사를 크게 베풀어 곡식을 허비"[141]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僧徒 40여 인을 잡아간 것이다. 이에 세종은 언관들을 불러 "佛事로 말하면, 승도들이 크게 모여서 날짜를 정하고 법회를 여는 것인데" 지금 흥천사 중들은 誦經만 할 따름인데 그것을 불사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나아가 그는 "승도도 역시 나의 백성"이라면서 "이미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중에 굶주리는 자를 국가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며 과잉반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좌정언 李禮長은 "승도가 비록 우리나라 백성이기는 하나, 실상은 모두 놀고 먹는 무리로서 국가에 무익한 자들"이니, 차라리 "놀고 먹는 자들을 공양하는 물건을 가지고 궁핍한 자들을 진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세종은 "중들도 역시 사람인데, 어찌 먹지 않고 살아가겠느냐."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흥천사, 흥덕사 두 절을 국왕의 허가 없이 수사하지 말 것과 僧人을 함부로 고문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142] 이후에도 세종과 대신들 간에는 많은 논쟁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논쟁의 원인을 세종의 개인적인 종교 취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사상이 존속하고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즉 조선초기 국왕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교정치를 추구하고 유학자 관료들의 이념지향적인 요구와 충고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종교로서 신앙과 의례의 차원에서 국가 구성원에게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불교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훈민정음 창제에 뒤이은 정음불서 찬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는 국왕과 왕실의 주

140) 『世宗實錄』 권82, 세종 20년 7월 己丑.
141) 『世宗實錄』 권85, 세종 21년 4월 己丑.
142) 『世宗實錄』 권85, 세종 21년 4월 己丑.

관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종 28년(1446)에 소헌왕후가 사망하자, 세종은 조정 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거한 왕후의 推薦을 명분으로 『釋譜詳節』[143]의 편찬을 주선하고 세종 28년(1446) 12월 부사직 김수온에게 명하여 『釋迦譜』를 증보 편집케 하였다. 한문으로 작성된 『석보상절』은 다시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다음해 7월 간행되었고 『석보상절』에 대하여 다시 세종이 찬송을 짓고 이름하여 『月印千江之曲』이라 했으며 뒷날 세조가 이 둘을 합편하여 『月印釋譜』라 하였다.[144] 이 과정에서 유서가 아닌 불서가 먼저 간행된 것은 신앙과 의례의 차원에서 서거한 왕후의 推薦을 위한 목적, 또는 儒書의 국역 작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보상절』 등의 정음불서가 편찬되는데 있어, 일찍부터 불교를 숭상함으로써 유신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던 수양대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역할 및 성향은 수양대군이 왕으로 즉위 이후 시행된 불교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흔히 大典體制로 일컬어지는 조선왕조의 통치체제는 태종과 세종대에 골격이 형성되고 세조대에 보완되어 성종대에 완성되었다고 설명된다.[145] 그런데 세조는 동서반 관직의 정비, 공납제도의 개혁, 호패법의 실시 등으로 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경국대전의 편찬을 추진하여 대전체제의 완성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공신을 양산하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폐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대에 지속되었던 50~60년간 억불정책에서 벗어나 불교를 비호하였는데 세조대의 불교정책은 대전체제의 정비와 왕권의 강화라는 두 가지 흐름 사이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146]

---

143) 『석보상절』, 『월인석보』의 편찬 목적, 과정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御製月印釋譜 序」에는 "追薦에 轉經만 한 것이 없으니, 네가 釋譜를 만들어 번역함이 마땅하다."라는 세종의 언급이 소개되어 있다. 세종의 언급은 『석보상절』의 편찬 목적을 보여 준다. 곧 『석보상절』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비는 추천의식인 전경법회에서 많은 승려가 함께 소리 내어 읽는 대본으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 24권 가운데 권3,6,11,13,19,20,21,23,24의 10권만이 현재 전하고 있다 10권의 현전본 중, 권3과 권11은 16세기 중엽의 복각본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간본이다. 그리고 권6,9,13,19는 중간본의 간행을 위한 교정본이다. 김기종, 2019, 『한국고전문학과 불교』, 동국대학교 출판부.

144) 안병희, 1992, 『월인천강지곡해제』, 문화재관리국, pp.2-3.

145) 대전체제란 조선왕조 초기에 시행된 각종 경제적, 정치적 개혁과 유교의 지배이데올로기화가 경국대전으로 성문법으로 체계화된 체제를 가리킨다(권연웅, 앞의 논문, p.235).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 각종 전적을 국역하여 간행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세조는 이러한 전적에서 국역 작업이 세종의 유업을 잇는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먼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의 편찬 경위는 월인석보 序와 세조가 수양대군이던 시절인 세종 29년(1447)에 지은 석보상절 序에 나타나 있다.[147] 두 서문은 모두 월인석보의 1권에 실려 있다.

부처님이 나타나시며 가만히 계시던 처음과 마지막을 알 사람이 드무니,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어도 또 팔상을 넘지 아니하고서 마느니라(그 정도에서 그치니라) 이사이 추천하는 일로 해서 이제(이에) 여러 경전에서 가려 내어, 따로 한 책을 만들어 이를 붙여 말하되(붙이되) '석보상절'이라 하고 벌써 차례를 헤아리어 만든 바에 의지하여 세존의 도를 이루어 내신 양자를 그려 이루고(이루어 내고) 또 정음으로써 한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노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의지하게 되도록(되기를) 바라노라.[148]

옛날 병인년에 소헌왕후가 영양을 빨리 버리시매(돌아가시매) 서러워 슬퍼함에 있어 할 바를 알지 못하였더니, 세종이 나더러 말씀하시기를, "追薦이 경을 옮겨 씀만 같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옮김이 마땅하니라."고 하시매 내가 사랑의(인자한) 분부를 받들어, 더욱 생각함으로써 넓이 하여 승우와 도선 두 을사가 각각 제보를 만든 것이 있거늘, 얻어보되 그 자세함과 줄임이 같지 아니하매, 두 책을 합하여 '석보상절'을 만들어 이루고, 정음으로 번역하여 사람마다 쉬이 알게 하여, (내가 세종께 석보상절을) 올리니, (세종께서) 봄을 내려 주시고(보아 주시고), 곧 기리는 노래를 지으시어 이름을 '월인천강'이라 하시니, 이제 와서 높이 받들기를 어찌 녹이겠는가?(소홀히 하리오?) 요즈음에 집안의 불행한 일을 만나, 맏아들이 지레 죽어 없어지니, 부모의 뜻은 천성에 근본을 둔 것이라 (중략) 서천의 글자로 된 경이 높이 쌓였으매 볼 사람이 오히려 읽고 외기를 어려이 여기지만, 우리나라

146) 권연웅, 1993, 「세조대의 불교정책」, 『진단학보』75, pp.236-261.
147) 최병헌, 앞의 논문, p.264.
148) 석보상절 서, 허웅 역, 『(역주)월인석보』 제1·2권, 1992.

말로 옮겨 써서 펴면 들을 사람이 다 능히 크게 우러를 것이다.[149]

왕위에 오른 후에 세조가 월인석보를 편찬한 직접적인 동기는 앞서 인용한 『월인석보 서』의 "요즈음에 집안의 불행한 일을 만나 맏아들이 지레 죽어 없어지니, 부모의 뜻은 천성에 근본을 둔 것이라"는 문장에 드러난다. 여기서 집안의 불행한 일이란 1457년 9월에 일어난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세조는 세자의 명복을 빌고 스스로 三途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불경을 간행 또는 轉寫하였다. 여기에서 『월인석보』의 직접적인 편찬동기가 세조 개인의 공덕적 취지와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 이후 진행된 불교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강경국역』「飜譯廣轉事實」에서도 이를 잘 보여준다.

> 임오년(1462) 9월 9일에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세종이 세조에게 금강경 四菩薩 八金銅名字의 뜻을 물었고 요절한 세자 懿敬도 만났다. 또한 중궁도 꿈에 세종이 이룩하신 불상을 보았다. 세조가 이에 감격하고 한편으로는 亡者에 대한 애특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금강경의 번역을 결심했다.[150]

세조가 세종의 유업을 잇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성리학사상의 의리명분론에 어긋나는 즉위 배경으로 인해 세종이 집권 훅에 추진한 불서 국역 작업을 계승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정치적 명분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1] 고대 이래 한반도에서 불교는 왕권의 강화와 권위 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사대부의 철학인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하였어도, 국왕의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할 때 불교가 이용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왕들은 공적으로는 불교를 억압하면서도 사적으로는 그것을 신봉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며, 세조대에 이르러서는 왕권의 강화와 함께 공적인 차원에서까지 일시적으로 불교를 장려하게 되었다.[152]

---

149) 어제 월인석보 서, 허웅 역, 『(역주)월인석보』 제1·2권, 1992.
150) 간경도감본 『金剛經諺解註解』.
151) 박정숙, 1996, 「世祖代 刊經都監의 설치와 佛典 刊行」, 『釜大史學』20, pp.63~64.
152) 최병헌, 1993, 「월인석보 편찬의 불교사적 의의」, 『진단학보』75, p.270.

이러한 특성은 그의 학문관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靖亂을 통해 왕위에 오르고 많은 政敵들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학문에 대한 관심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오로지 一書만 연구하면 학문이 넓지 못하여 혹 걸리고 막힘이 있을 것이다. 내가 世宗朝에 命을 받고 諸書와 經史를 찬술하여서, 많이 섭렵하고 律呂와 風水의 서책에 이르기까지 講究하지 않음이 없었다."[153]라고 자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潛邸時부터 經史는 물론 佛學, 曆學, 算學, 音律, 醫術, 卜筮, 技藝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하였고 동시에 무예에도 출중하였다.[154] 즉위한 이후에도 "무릇 儒者라 하더라도 天文·地理·醫藥·卜筮를 모두 알아야만 비로소 通儒라고 이를 수 있다."[155]라고 하여 儒學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臣僚들에게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를 과거제에도 적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명하기도 하였다.

> 근래 科擧의 法은 일정한 법식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자들이 程文에 얽매여서 博學하고 폭넓은 식견을 가진 선비를 보기가 어렵다. 혹시 經書를 講하거나 혹시 史書를 강할 때 武經을 겸하게 하고, 혹시 製述을 쓸 때 임시하여 사람을 酌定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書에만 專心하지 못할 것이고, 한 가지 伎藝에만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僥倖을 바라는 자들도 사라질 것이다. 명년 봄부터 이와 같이 시험하도록 하라.[156]

이러한 세조의 폭넓은 학문관은 殿講에서 잘 드러난다. 즉, 전강의 교재는 經書와 史書가 주를 이루었던 經筵과는 달리 經史 외에 陳法, 兵要, 諭將三編, 兵將說, 兵法大旨, 武經 등 병법서가 자주 강론되었으며, 또한 律呂新書, 大明律, 印地儀頌, 東坡集, 楞嚴經, 韓愈文, 醫書, 吏文, 漢訓, 冶鑄法, 打圍法, 新舊詔令 등이 채택되기도 하였다.[157] 실제로 문신과 무

153)『世祖實錄』권3, 세조 2년 3월 丁亥.
154) 김윤식, 2004,「朝鮮 世祖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대한 考察」,『서지학연구』29, pp.25-30.
155)『世祖實錄』권33, 세조 10년 4월 戊申.
156)『世祖實錄』권33, 세조 10년 4월 甲辰.
157) 姜泰訓, 1991,「朝鮮朝 經筵의 敎育的役割」,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92-94.

신이 함께 참석한 殿講에서 經書와 兵書를 함께 강론하게 한 사례가 다수 보이며, 習陣을 지시한 경우도 있었다.[158] 이밖에도 大司成 徐岡, 判奉常寺事 任元濬 등에게 명하여 『老子』·『莊子』와 韓愈의 文을 강하게 하거나[159] 좌의정 權擘과 더불어 儒·釋·老子의 道를 논하기도 하였다.[160] 세조 13년에는 새로 간택된 文臣 107人에게 『禮記』·『周禮』·『左傳』 등과 함께 『莊子』·『老子』를 내려주고 기한 내에 읽도록 傳敎하기도 하였다.[161]

세조가 다양한 학문을 두루 섭렵할 것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차원에서의 博學多識을 위한 것이 아니라 經世致用을 위한 實學이 바로 학문의 要諦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162] 이 때문에 세조는 일찍이 司章을 중시하면서 經學을 소홀히 한 集賢官들에게 "사람은 마땅히 實學에 힘써야 하며 실학이 근본이다. 국가는 詞章을 쓰기에 간절한 까닭으로 부득이 사장을 써서 사람을 취하나, 스스로 하는 道에 있어서는 실학을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163]라고 훈계하였으며, 또한 세조 12년에는 아래와 같은 文科 試題를 직접 지어서 '致用之學'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 임금이 친히 策題를 짓기를, "巡省함은 백성의 疾苦를 알고자 함이다. 이제 강원도를 보건대,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무니, 어떻게 하면 생활이 부유하고 인구가 많게 할 것인가? 軍需가 넉넉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넉넉히 쌓을 것인가? 땅이 험하고 길이 머니, 나가서 세상에 쓰이고자 하여도 떨치고 나서지 못하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그것을 각각 모두 진술하여 대답하라. 장차 致用의 학문을 보려고 한다.[164]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조가 殿講에서 병법서를 비롯해서 大明律, 吏文과 冶鑄法까지 강론하게 한 것도 역시 이들 학문이 經世에 매우 실용적

158) 김윤식, 2004, 앞 논문, p.32.
159) 『世祖實錄』 권23, 세조 7년 1월 壬戌.
160) 『世祖實錄』 권28, 세조 8년 5월 丙辰.
161) 『世祖實錄』 권42, 세조 13년 6월 乙卯.
162) 韓沽劤, 1993, 「第3篇 文宗-世祖朝에 있어서의 對佛敎施策」, 『儒敎政治와 佛敎-麗末鮮初 對佛敎施策』, 一潮閣, p.197.
163) 『世祖實錄』 권3, 세조 2년 4월 甲寅.
164)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 윤3월 戊子.

인 것들이었기 때문이며, 마찬가지 이유에서 의원들에게 醫書를 강론하게 한 사례도 확인된다.[165] 여기에서 언급한 經世致用의 핵심은 유교정치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德治·爲民의 정치일 것이다.[166] 세조가 즉위 2년에 議政府에 傳旨하기를, "백성은 하늘이니, 백성의 마음이 편안한 뒤에 하늘의 마음도 편안하여지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마땅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無良에게 괴로워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된다. … 내 비록 부덕한 몸으로 욕되게 大寶를 차지하였으나, 하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민생을 내 몸으로 삼아 밤낮으로 다만 그것을 생각하고 한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167]라고 한 것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實學을 중시하여 儒書 외에도 道家·佛敎·兵書·醫書에서 曆學·卜筮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했던 세조의 학문관은 불교에 대한 태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168] 세조는 여느 조선의 국왕들과 다름없이 유교정치의 기틀을 재정비하여 통치의 바탕으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교를 비방하는 儒臣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a) 경이 내 뜻을 몸받지 못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올리어 아뢰는 것이 없고 碎碎한 말단의 사무만을 첫머리로 먼저 거행하니, 어찌 위임한 뜻이겠는가? 三寶를 破毁하는 것으로 先務를 삼는 것은 근일 姦臣의 일이다.[169]

---

165) 『世祖實錄』 권18, 세조 5년 11월 戊戌.
166) 韓沽劤, 1993, 위 논문, pp.197-198.
167) 『世祖實錄』 권4, 세조 2년 5월 丁亥.
168) 유교, 불교 및 다양한 학문을 강조했던 세조의 학문과 및 국정 철학은 세조 연간 출판기구의 조직에도 큰 영향을 주어 세조 7년(1461)이라는 같은 시점에 교서관의 조직을 강화하고 간경도감을 설치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먼저 세조 7년(1461) 당시 대학자로 명망이 있었던 梁誠之를 교서관의 제조로 임명하고 교서관을 '二品官의 衙門(기관)'으로 格上시킴으로 그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유서를 비롯한 각종 서적의 간행에 주력하였다. 이 기간 즉 세조 7년(1461)-세조 12년(1466) 동안 조선시대 교서관의 역사상 가장 상위 등급의 기관으로 운영하였다. 둘째, 세조 7년(1461) 불서 간행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대량의 불서가 간행되고 국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냈다. 간경도감 이후로는 조선말기까지 더 이상 불서 간행을 전담하는 도감을 설치되지 않았다.

(b) 국가가 祖宗 이래로 淨舍를 세우고 水陸齋를 베풀어서 祈禱와 追薦이 이미 尊仰되고 있는데, 어찌 侮慢하고 侵毁할 수가 있겠는가? 俗儒의 무리는 한갓 利口만 숭상하고 일의 大體는 돌아보지 않고서 말하기를, '이를 물리치는 사람은 聖人의 무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학문을 처음 배우는 書生들의 하는 짓이다. 심한 것은 君上과 더불어 是非를 다투려고까지 하니, 이런 風習을 커지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비록 덕이 없지마는 符瑞를 잡고 天運을 받아 수많은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하여 한 나라 神과 사람의 君主가 되었으니, 밤낮으로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안정된 처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상시로 寺社를 보호하여 雜役을 면제해 주어서 僧侶와 俗人으로 하여금 각기 그 道를 닦게 하였으니, 이른바 고양이는 당(堂)에서 놀고, 쥐는 구멍에서 찍찍대고, 소리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어 논다는 것이다.[170]

(a)는 세조 2년에 충청도 觀察使 李重이 사사로이 승려가 된 이들을 처벌하기를 주청한 것에 대한 대답인데 그 가운데 백성들을 위한 정사보다도 三寶 비방을 급선무로 하는 태도를 姦臣과 같다고 하여 매우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b)는 세조 3년, 불교와 관련한 事目을 정할 때 禮曹에 傳旨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는 불교행사의 금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俗儒의 무리, 初學書生들의 所爲라고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儒學에만 치우친 편협한 전문화를 경계하였던 세조의 기본적인 학문관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通儒·眞儒는 유교 외에 다른 분야도 두루 알아야 하는 것으로, 유교만을 고집하여 불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두 자료에서 공통으로 불교 배척보다는 백성들의 安慰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祖宗 이래의 전통적 관행'과 더불어 세조가 시행한 불교적 시책의 대외적 명분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다.

169) 『世祖實錄』 권5, 세조 2년 11월 庚辰.
170) 『世祖實錄』 권7, 세조 3년 3월 丙戌.

실제로 세조대를 전후한 시기에 왕실 혹은 국가에서 설행하였던 많은 佛事들이 旱災나 疫病 등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한다는, 혹은 죽은 王과 王族의 追薦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었다. 문종 1년, 경기도에 惡疾이 돌아 水陸齋를 설행할 때, 司憲府의 금지 요청에 대해 문종이 "이는 다만 백성들의 情願에 좇아 우선 그 마음의 위안을 주려는 것이다. 대저 병이란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롯하는 것이어서 마음에 편안함을 얻으면 병도 또한 간혹 그치게 된다."[171]라고 한 것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세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세자에게 "너는 반드시 네 아비가 부처를 숭상한 것을 다 본받을 것이 없다. … 너는 마땅히 옷을 보거든 여자의 功力이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라. 음식을 보거든 農夫들이 심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라."[172]라고 하여, 崇佛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여러 흥불정책이 시행되었다. 먼저 승려와 사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지고 그 법적 규정을『경국대전』에 수록하고자 하였다. 즉 관리나 유생이 함부로 사원에 들어갈 수 없음은 물론, 범죄를 저지른 승려의 경우에도 관리가 먼저 왕에게 보고한 다음 체포 심문하게 하였으며, 관리의 사원 수색 역시 사전에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관리의 사원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사원에 대해서는 公賦 이외의 잡역을 면제하는 조치도 취하였다.[173]

세조는 승려와 사원의 보호를 위한 행정적 법적인 조치 이외에 불교계에 특히 공헌한 것은 사원의 후원과 불서의 간행에 있었다. 먼저 사원의 후원으로서는 중수와 창건 및 이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다수 이루어졌다. 세종 30년(1448)에 폐지되었던 淨業院을 세조 3년(1457) 복설하고, 토지 100결과 노비 30구를 하사하였고, 다음해(1458)에는 죽은 懿敬世子를 위해 正因寺를 중창하였다. 그리고 세조 9년(1463)에는 壯義寺와 水陸社를 지었으며, 세조 10년(1464)에는 전라감사에게 하명하여 守眉가 道岬寺를 중창하는데 지원하도록 하였다. 세조 10년(1464)에는 흥복사 터에 圓覺寺의 창건을 시작하여 다음해 준공하였다. 또한 세조는 海印寺, 上院寺, 靑巖寺, 檜巖寺, 神勒寺, 雙峰寺 등의 중수와 보수를 지

171)『文宗實錄』권9, 문종 1년 9월 癸丑.
172)『世祖實錄』권31, 세조 9년 10월 丙申.
173)『世祖實錄』권7, 세조 3년 3월 丙戌.

원하였으며, 속리산 복천사 및 오대산 月精寺, 금강산 楡岾寺, 양양 洛山寺 등의 명찰을 참배하고 공양하는 등 많은 불사를 일으켰다. 세조의 사원의 중흥 노력은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도 나타난다. 이들 각 사찰에 노비와 전지를 지급하거나 米布를 보시하는 일은 물론, 상원사에 蒜山堤堰을 하사하고 낙산사 해안의 禁標를 허락했던 사례들도 이에 해당한다.[174]

세조의 사찰 창건과 중수를 지원한 사실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원각사의 창건과 상원사의 중창 불사였다. 그 가운데 원각사의 창건과 관련해서는 金守溫의 『拭疣集』에서 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 孝寧君 補가 檜菴의 동편 언덕에 石鍾을 세워 석가의 舍利를 安置하고, 法會를 열어 圓覺經을 강의하는데, 이날 저녁에 여래가 공중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神僧이 壇上을 횡행하며, 瑞氣가 넘쳐흘러 광채가 어리어 비치고, 甘泉이 널리 젖어 사리의 分身이 8백여 개가 되었다. 5월 갑인에 補가 靈跡을 갖추고 사리를 받들어 아뢰니, 전하는 왕비와 더불어 含元殿에서 禮佛을 드렸는데, 사리는 또 4백여 개를 분신하였다. 그래서 조정의 백관이 箋을 올려 하례를 하니, 이에 中外에 대사령을 내리고 議政府에 傳旨하기를 … 나는 (원각경의) 名句를 번역하고 그 義를 발휘하여 장차 流布하려던 차에, 백부 효령대군이 法會를 개설하여 諸佛 如來가 神變을 나타냄이 이 경지에 이르렀으니, 五濁의 像季에 흔히 볼 수 없는 일인즉, 마땅히 興福의 舊刹을 중건하여 원각이라 이름하고, 최상의 法文에 의를 붙이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하시니, 여러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고 손 모아 절을 하며, "감히 왕의 아름다우신 명령을 공경히 받들지 아니하오리까."하였다.[175]

이 내용에 따르면 세조 10년(1464) 4월 세조의 백부인 孝寧君 補가 회암사 동쪽 언덕에 석종을 조성하여 석가사리를 안치하고 『圓覺經』을 강의했는데 여래가 나타나고 사리 분신이 나타나는 등 瑞祥이 일어나자, 세조는 왕비와 같이 분신을 받들고 예불을 올렸다. 그리고 사면령을 내

174) 이봉춘, 앞의 책, pp.393-394.
175) 『拭疣集』 補遺,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

리고 傳旨하기를, 8만 4천여 부 경전 중에 『원각경』 하나가 究竟의 果를 보이니 옛 흥복사를 중건하여 원각사로 이름 붙이고자 하니 모든 신하들이 찬동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세조는 興福寺에 거동하여 왕세자와 孝寧大君 李補·臨瀛大君 李瑤·永膺大君 李琰 및 領議政 申叔舟·좌의정 具致寬·兵曹判書 尹子雲·戶曹判書 金國光 등 정권의 핵심 세력과 원각사 중건에 대해 상의하였다. 곧바로 補·瑤·琰·溥·申叔舟·具致寬·朴從愚·河城尉 鄭顯祖 등을 造成都監 都提調로 삼고, 예조판서 元孝然과 尹子雲·金國光·金漑를 提調로 삼고, 僉知中樞院事 尹岑·崔善復, 도승지 盧思愼 등을 副提調로 삼아 원각사를 중건할 핵심적인 인물들을 발표하였다.[176]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간경도감의 핵심 참여 인물들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조는 원각사에 직접 행차하여 役事를 직접 감독하기도 하였다.

> 임금이 圓覺寺에 거둥하여, 靑城尉 沈安義·吏曹判書 韓繼美를 左廂·右廂의 大將으로 삼고, 安堯卿 등 13인을 部將으로 삼아, 軍士들을 檢察하여 役事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때 軍士로서 役事에 나온 자가 2천 1백여 인이었다.[177]

이 기록에 의하면 세조는 원각사에 직접 가서 대장, 부장을 정해 역사를 감독하도록 했는데 軍士로서 참여한 자가 2천명이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각사 주변 인가 2백여 채를 철거하였는데, 세조는 인가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신숙주에게 承政院 注書 柳洵을 보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 임금이 승정원 주서 유순을 영의정 신숙주의 집에 보내어 의논하기를, "지금 원각사를 창건하고 人家의 基地를 철거하는데, 1束의 값을 처음에는 正布 1匹에 准하고, 材木 10間을 轉輸하는 값을 쌀 2石과 보리 1石에 准하고자 하였으나, 집터가 곧 市廛의 아주 要地이니, 내가 갑절

176) 『世祖實錄』 권33, 세조 10년 5월 乙卯.
177) 『世祖實錄』 권33, 세조 10년 6월 丁亥.

로 3匹이나 주려고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신숙주가 의논하기를, “재목을 轉輸하는 값은 비록 주지 않아도 좋으나, 집터 같으면 곧 저자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이권을 노리는 땅이니, 세 갑절로 하여 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178]

원각사가 요지에 자리한 만큼 주위 집터 200여 채를 철거하면서 3배로 계산하여 보상하는데 원각사를 세우기 위해 주변 정리에 든 비용이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원각사 중건 과정에는 법당을 덮을 청기와가 8만 장이나 소요되었다.[179] 또한 원각사 중건에 소요되는 재목은 일부 충청도에서 벌목해 충당하였는데, 線工注簿 林重이 세조의 명을 받고 벌목 책임자로 가서 공명심 때문에 민폐를 끼치자, 세조가 폐단이 없이 마무리하기를 지시하기도 하였다.[180] 원각사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사상자도 생기고[181] 역부가 떨어져 죽기도 하는[182]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세조 11년(1465) 완성되었다. 당시 세조실록의 내용에 따르면,

圓覺寺가 낙성되었다. 慶讚會를 베푸니 경찬회에 참석한 승려가 128명이고, 임금이 口訣 飜譯한 『圓覺修多羅了義經』을 펴보고, 外護의 승려 2만 명에게 飯僧하였다. 이날 세조는 圓覺寺에 나아갔다.[183]

라고 하였는데 원각사가 낙성되자 128명의 승려가 경찬회에 참석한 가운데 세조가 구결 번역한 『圓覺經』을 펴보고 2만 명의 승려에게 飯僧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성식이 거행된 후 마지막으로 圓覺寺에 전지 3백 結을 내려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184]

또한 세조 10년(1464)에 중창된 상원사의 경우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세조의 상원사 개창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수온이 쓴 『上院寺重創記』에 남아 있다.

---

178) 『世祖實錄』 권33, 세조 10년 6월 丁酉.
179) 『世祖實錄』 권33, 세조 10년 6월 甲午.
180) 『世祖實錄』 권34, 세조 10년 8월 乙酉.
181) 『世祖實錄』 권34, 세조 10년 8월 壬辰.
182) 『世祖實錄』 권35, 세조 11년 2월 甲辰.
183) 『世祖實錄』 권35, 세조 11년 4월 癸未.
184) 『世祖實錄』 권35, 세조 11년 4월 壬午.

(세조는) 天順 8년(1457) 4월에 우리 세조 惠莊大王이 10일간 병을 앓았는데 太王太妃殿下가 근심스럽고 두려워 내관을 慧覺尊者 信眉와 大禪師 學悅 등에게 보내 中外 사찰이 모두 作法해 임금을 祝壽한다지만 名山勝地에 하나의 가람을 세워 別願의 장소로 삼아 국가에서 祈請할 만한 곳이 있으면 이곳에 나아갈 것이다. 卿 등은 사방을 遊歷했으니 반드시 그 곳의 缺과 實을 들어서 알 터이다. 신미 등 대답하기를, 五臺山은 우리나라 명산으로 中臺의 上院寺는 지덕이 더욱 기이하고 僧徒의 結制 즈음에 반드시 警枕의 걸출함이 있는데 불행스럽게 공양주의 失火로 化主의 힘이 작고 取辦이 급해 겨우 비바람만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옛터를 개축해 그 규모를 넓혀 오대산의 명찰로 삼는다면 祈祝하기에 적당합니다. 특별히 香幣를 내리시어 불사를 지으신다면 이 사찰처럼 便利함은 없을 것입니다.[185]

이 기록에 따르면 상원사 중창은 세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처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1457년(세조 3) 4월에 세조가 10일간 병을 앓자 내관을 가장 신임하던 信眉와 學悅에게 보내 가람을 세울 장소를 찾도록 부탁하였다. 세조의 부탁을 받은 신미 등은 오대산은 동국의 명산이고, 불타버린 상원사는 地德이 기이하고 승도들의 영험이 있는 곳이라고 추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원사중창기』에는 상원사의 중창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해지는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원사의 중창보고를 받은 세조는 學悅에게 상원사 중창의 일을 맡긴 후, 경상감사에게 米 五百石을 江陵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濟用監은 布 一千匹을 내어 중창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 곧이어 세조의 병도 점점 나아지자 세조는 功德疏를 지어 반포하니 宗親과 宰樞들이 세조의 뜻에 따라 재물을 捻出하고 仁粹王妃도 租 五百石을 보시하여 부족한 데 보태도록 하였다. 學悅은 밤낮으로 계획하고 독려하여 1465년(세조 11) 3월에 중창한 일이 그 이듬해인 1466년에 마무리되었다. 상원사 전각을 보면, 佛殿 東西에 上室을 두었는데 학열은 지혜를 짜내어 상실 兩壁을

185) 『拭疣集』 권2, 上院寺重創記.

철거하고 칸막이로 대신하고 大精進이 있을 것 같으면 양벽을 들어 올려 佛殿과 통하도록 하여 한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남쪽 회랑 사이에 5칸 樓를 짓고 鐘·雲版 도구를 달고 그 아래는 문을 만들어 출입하도록 하였다. 동쪽에 있는 上室의 동쪽에는 羅漢殿을 세우고, 서쪽에 있는 上室의 서쪽에는 靑蓮堂을 세우고 靑蓮堂의 서쪽에는 齋宮이 있다. 그 외 건물로도 廚室·僧堂·禪堂·廚庫·泡湢 등이 있었는데 기둥만 헤아려도 56개나 된다. 강릉에 옛날부터 있어온 葑田 數 百結을 學悅의 요청으로 상원사에 귀속시켜 논으로 만들고 수백 석을 파종해 해마다 수확해 상주 비용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仁粹王妃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願佛을 만들면서 租 150석을 시납하고, 한편 죽은 어머니의 저녁마다 施食을 위해 租 60석을 시납하였다.[186] 또한 실록에서도 상원사 중창 비용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승정원에 명하여 경상도 관찰사에 馳書하여 正鐵 1만 5천 근, 中米 5백 석을 주고, 또 濟用監에 명하여 綿布 2백 匹, 正布 2백 필을 주게 하고, 內需所는 綿布 3백 필, 정포 3백필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다.[187]

한편 세조는 호조에 특별히 지시하여 강릉부에 있는 蒜山堤堰을 信眉에게 하사했는데,[188] 그 이유는 세조가 신임하던 信眉가 상원사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施納은 상원사의 운영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89] 세조는 상원사가 중창되던 해에 상원사 중창법회에 참석하기 앞서 강원도 금강산 소재 사찰을 두루 찾아보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해서 洛山寺를 거쳐 上院寺에 도착하였다. 서울을 떠나 금강산 일대를 거쳐 상원사 중창법회에 참석할 때까지는 대체로 1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세조가 상원사 중창법회에 참석한 것은 세조 12년(1466) 윤3월 17일이었다. 세조실록에서는 당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上院寺에 행차하니, 王世子가 孝寧大君 李補, 永膺大君 李琰, 勿巨尹 李徹, 蛇山君 李灝, 영의정 申叔舟, 上黨君 韓明澮, 좌의정 具致寬, 仁山君 洪允成, 中樞府同知事 金守溫, 金國光, 이조 판서 韓繼禧, 호조판

186) 『拭疣集』 권2, 上院寺重創記.
187) 『世祖實錄』 권35, 세조 11년 2월 丁酉.
188) 『世祖實錄』 권44, 세조 13년 11월 戊子.
189) 진성규, 2007, 「세조의 불사행위와 그 의미」, 『백산학보』78, pp.179-180.

서 盧思愼 등과 같이 임금의 수레를 따라갔다. 임금이 行宮에 돌아와서 신숙주, 한계희, 노사신에게 명하여 문과 시험 장소에 나아가서 參試하게 하였다.[190]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상원사 행차에는 왕세자, 효령대군 등을 비롯한 왕실 측 인물과 세조의 핵심 측근세력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영의정 신숙주, 이조판서 한계희, 호조판서 노사신은 세조의 명을 받고 試場에 직접 참석하였다.

세조는 중창이 끝나자 쌀 500석과 포 1,000필을 하사하고 衣鉢 坐具 湯藥 등 四事를 갖추고 학승 52명을 모아 크게 落成會를 說하였다.[191] 뿐만 아니라 상원사 文殊童子像에 명주로 만든 자신의 겉적삼과 속적삼 및 법화경 등 불경을 腹藏物로 넣었음이 확인되었다.[192] 또 복장물 가운데 懿淑公主 발원문이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세조 12년(1466) 세조의 둘째 딸인 懿淑公主와 그의 남편 鄭顯祖가 왕과 왕비, 세자저하를 위해 만수무강을 빌고, 또 자신의 득남을 위해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문수보살·보현보살·미륵보살·관음보살·지장보살·16나한·제석천 등을 조성하여 문수사에 봉안했다는 사실이다.[193] 상원사는 세조의 治病을 위한 기도처로 중창되어 일약 조선시대 최대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찰이 되었다. 예종 1년(1469)에는 세조의 願刹로 지정되고 특별히 內需司 노비 15구가 하사되고 노비의 잡역과 寺田地稅 외 鹽盆의 세금도 왕패를 내려줘 모두 영원히 면하게 하는 특혜가 주어졌다.[194]

이러한 사원의 창건과 중흥을 지원한 사실과 함께 세조의 불교 치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서 간행과 국역 사업이었다. 조선 전기는 건국 초기부터 역대의 왕과 왕비 그리고 대군, 공주 등 왕실 구성원들이 불교전적을 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寫經하는 등 부처에게 공양하는 불사를 직접 주도하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세조도 수양대군 시절부터 『釋譜詳節』의 편찬을 비롯하여 불교 전적의 간행에 참여한

190) 『世祖實錄』 권41, 세조 12년 윤3월 戊子.
191) 『拭疣集』 권2, 「上院寺重創記」.
192) 月精寺 聖寶博物館, 2000, 『월정사성보박물관도록』, pp.55-67.
193) 月精寺 聖寶博物館, 위의 책, p.46.
194) 『拭疣集』 권2, 「上院寺重創記」.

바 있었는데, 즉위한 이후에는『월인석보』등 불교 전적의 간행 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세조 7년(1461) 6월 국가의 임시기구로서, 간경도감을 설치하였는데 불서간행 자체가 비난을 받던 당시 상황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간경도감의 설치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간경도감에서 대규모의 한문본 불서과 국역본 불서가 간행되었는데 간경도감의 운영과 불서 간행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三. 간경도감의 설치와 운영

1. 불서 간행의 전통과 간경도감 설치

1) 고려시대 불서 간행의 흐름

都監은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임시관서로서 도감이 기록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광종 12년(961)에 설치된 '宮闕都監'이 시초라고 평가받고 있다.[195] 이후 고려시대 동안 도감은 국가적인 차원의 대장경 및 불서 간행때마다 설치되어 활용되었다.

한국불교사에서는 네 번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규모의 불서간행 불사가 추진된 적이 있었다. 고려왕조에서 세 번, 조선왕조에서 한번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려왕조에서의 첫 번째 불사는 고려 8대 顯宗~11대 文宗 때의 大藏經의 刊行이었는데, 현종 9년(1018), 대거란전쟁이 마무리되던 해에 현종은 양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서 개경에 玄化寺를 창건하고 대장경을 조조하였다.[196] 송에서 들여온 開寶版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그 뒤 문종 때에 들여온 契丹의 대장경의 보완을 거쳐서 13대 宣宗 4년(1087) 初雕 대장경은 완성되었다. 당시 새겨진 목판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1106부 5,148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 때 玄化寺의 창건불사와 함께 대장경의 조성 및 印經사업을 수행한 중앙의 임시행정기구로서 성조도감이 설치되었다. 1022년에 건립된 「玄化寺碑」의 음기에는 大般若經 600권과 三本 大方廣佛華嚴經 · 金光明經 · 妙法蓮華經 등을 판각하고 般若經寶를 설치하여 이들 경전을 印經하여 보급하였다[197]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성조도감의 구성조직은 別監—使—副使—錄事 또는 判官—記事와 같은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성조도감의 직제는 고려시대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다른 도감의 직제와도 상당히 유사한

---

195) 『高麗史節要』권2, 광종 12년.

196) 許興植, 1986, 앞의 책, pp.71~73 ; 韓基汶,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pp.276-278.
당시 현화사는 현종이 왕실의 안녕 등을 기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 왕실 眞殿사원으로 瑜伽宗계열의 중심 사원이 되었다.

197) 蔡忠順, 「玄化寺碑陰記」 ; 許興植 편저, 1984, 『韓國金石全文』, 아세아문화사.

점이 발견된다.[198] 고려시대 설치· 운영된 상당수 都監의 상층 직제에는 別監·使 등이 위치하였고, 하위관직에는 判官·錄事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실무를 맡은 吏屬으로는 記事·記官등이 충원되어 있다.[199]

두 번째는 대장경의 조판 불사가 마무리되기 1년 앞선 선종 3년(1086)에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하여 문종의 원찰인 興王寺에 敎藏都監을 설치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송과 거란에서 수집한 대장경에 대한 章疏들을 모은 敎藏을 간행하였다. 교장의 간행 불사는 15대 肅宗(1095~1105)때에 마치었는데, 교장의 분량은 간행목록인 『新編諸宗敎藏總錄』에 의하면, 1,010부 4,857권에 이르고 있다.[200] 첫 번째 간행된 초조대장경이 經律論 3장, 곧 正藏인데 비하여 교장은 그 정장에 대한 章疏들을 모은 것이라는 점에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종교신앙의 측면이 아닌 사상사나 문화사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장은 인도에서 수입한 원전(중국 찬술의 위경 포함)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지만, 교장은 중국을 비롯해서 신라와 고려, 거란 등 동아시아불교문화권에서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불교적 업적의 결정체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동아시아불교권에서의 최초의 업적이 고려출신인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사상사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23대 고종 19년(1232) 몽고병의 침입으로 초조 대장경과 교장의 판목은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당시의 집권자인 崔瑀는 고종 23년(1236) 강화도 禪源寺에 大藏都監을 설치하고 다시금 대장경의 조성에 착수하였다. 강화도에 본사, 진주에 분사를 두어 16년만인 고종 38년(1251)에 완성을 보았다. 재조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은 1,512부, 6,791권으로 총 81,258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그리고 화엄종 승려인 守其 등 30 여명이 각종의 異版들과 대교하여 정밀히 교정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우수한 漢譯大藏經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재조대장경은 고

198) 나영훈, 2016,『조선시대 도감의 성립과 발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p.22-23.

199) 文炯萬, 1985,「高麗特殊官府研究」,『釜山史學』9 ; 1986,『高麗諸司都監各色研究』, 제일문화사.

200) 임혜경, 2012,「義天의 《新編諸宗敎藏總錄》 편찬과 그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려말기까지 강화도에서 보존되어 와서 조선초기 태조 때에 해인사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대장경은 조선초기 억불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왕실의 주도하에 여러 차례 인출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일본의 무로마치막부의 요청으로 보내졌다.

한편 당시 강화경판의 조성사업을 주관한 중앙 정부의 高麗國大藏都監과 지방의 高麗國分司大藏都監 가운데 강화경판 조성사업을 총괄한 大藏都監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현재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체계를 복원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조직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장도감의 지방조직으로 설치된 분사대장도감의 조직체계가 성조도감과 유사하였다는 사실에서 성조도감과 유사한 조직체계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

李奎報의 저술인『東國李相國集』을 판각할 고종 38년(1251) 당시, 진주목에 설치된 분사도감의 구성조직은 使—副使—錄事—校勘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분사도감의 조직은 앞서 언급된 성조도감의 경우와 비교하여, 別監을 제외한 使—副使—錄事의 직제까지 동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2] 그리고 분사도감이 대장도감의 하위 보좌기구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성조도감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임시행정기구였던 대장도감에는 최고 행정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한 別監의 직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별감은 분사도감의 책임자인 使에 비해 상위의 직제에 있으면서 관련 행정업무와 실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03] 이를 통해 본다면 대장도감의 직제 가운데는 별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조직은 別監—使—副使—錄事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4]

또한 대장도감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몽고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경판의 조성사업은 鎭護國家의 목적에서 추진된

201) 최영호, 2009,「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석당논총』43, pp.156-157.
202) 나영훈, 2016, 앞의 논문, pp.35-38.
203) 최영호, 앞의 논문, pp.157-159.
204) 나영훈, 2016, 앞의 논문, pp.35-38.

불교사업으로, 당시 국왕과 태자 및 공·후·백을 비롯하여 宰臣, 樞臣 및 문·무 관료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범국가적인 불교사업이었다. 또한 대장도감은 분사도감이나 현화사성조도감과 마찬가지로 敎·俗 이원적인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別監 내지 그 이하 직제에는 중앙관료들과 함께 불교계의 僧階를 가진 고승이나 僧錄司의 僧官들도 배치되어 대장도감의 운영체계에 적극 개입하였다고 짐작된다. 행정업무와 실무를 담당한 대장도감은 불교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얻어내기 위해 교·속 이원적인 협조체계로 운영되었으며 불교계에서는 당시 불교 교단과 행정기구와의 협력 기능을 맡은 僧錄司의 조직체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205] 고려시대 대장경의 간경을 위해 설치했던 대장도감도 조선이 개국되고 며칠 안 된 시점인 태조 1년(1392) 8월 폐지 상소가 올라왔으며 이후 대장도감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폐지상소 이후 오래지 않아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및 운영방식은 이후 간경도감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05) 최영호, 앞의 논문, p.172.

2) 조선초기 인쇄 출판기관의 변천

조선초기 인쇄기관들이 변화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회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과 함께 인쇄 기술 역량의 증가, 인쇄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의 등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였다. 또한 활자에 주목하고 서적 인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태종, 세종, 세조대 등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206] 이 시기 서적의 편찬과 인쇄 및 배분에 관한 업무는 관에서 주도하였으며 반드시 왕명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서적은 귀중한 재산으로 그 관리 또한 엄중하였다. 이 절에서는 조선초기 중앙인쇄기관의 변천과정을 통해 간경도감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은 개국 초 고려의 직제를 답습하여 교서감과 서적원을 설치하였다. 서적을 관리하고 제사의 축문을 작성하던 일을 담당하였던 고려말의 전교시가 교서감의 형태로 등장했으며, 수행하던 업무도 유사했다.[207] 서적원 역시 고려 말에 설치된 서적원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활자를 주조하고 인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고려 직제의 답습은 건국 초기 조선 직제의 일반적 특징이었다.[208]

이후 교서감은 1401년 태종 즉위와 함께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7월 13일 “교서감을 고쳐 교서관으로 하고, 少監 이상의 관원을 혁파하고, 종5품 校理 하나, 종6품 副校理 하나를 두고, 參外는 전과 같이 하도록” 한 것이다.[209] 이때 교서감이 교서관으로 변경되었다.[210] 교서감을 교서관으로 바꾼 것은 태종 대의 대대적인 직제 개편의 결과 중 하나로서, 교서관은 6조 중 예조의 속아문이었고, 당시 예조에 속했던 예문관, 춘추관, 성균관, 承文院 등의 기관들도 함께 변화를 겪어 文翰을

206) 김화선, 2017, 「조선 초 인쇄 기관의 변화와 정착」, 『한국과학사학회지』33-3, p.383.

207) 『太祖實錄』 권5, 태조 3년 4월 戊子 ;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 12월 丙申. 교서감은 개국 초기에 역대의 기록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거나 文廟를 감독하는 업무 등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8) 김화선, 2017, 앞의 논문, p.387.

209) 『太宗實錄』 권2, 태종 1년 7월 庚子.

210) 한동명은 교서감과 서적원을 합하여 교서관이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동명, 1979, 「교서관고」, p.24.

관장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211] 특히 태종은 예문관, 춘추관, 교서관을 三館으로 칭하고, 이 기관의 문신들은 經筵에도 참여하게 하였다. 결국 교서감을 고쳐 교서관으로 한 것은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관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서관은 문신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문적을 관리하고 제초의 축문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문관, 춘추관과 함께 국가의 예악, 제사, 宴享, 朝聘, 학교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는 예조의 임무를 함께 수행했다.[212]

교서관이 설치된 지 2년 만인 태종 3년(1403) 태종은 주자소를 설치했다. 실록에 따르면,

> 새로 주자소를 설치하였다. 임금이 본국에 서적이 매우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명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예문관 대제학 李稷, 摠制 閔無疾, 知申事 朴錫命, 右代言 李膺으로 제조를 삼았다. 內府의 銅鐵을 많이 내놓고, 또 대소 신료에게 명하여 自願해서 동철을 내어 그 용도에 이바지하게 하였다.[213]

이는 즉 태종이 조선에 서적이 매우 적어서 유생들이 독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주자소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유학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나라로서, 학문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중시한 것은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왕도 정치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었다. 따라서 서적의 필요성이 이전 왕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자소가 설치되었고 태종이 굳이 '주자'라는 명칭이 들어간 주자소를 새로이 설치한 데에는 태종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적원이 설치되던 당시에 서적원을 중심으로 활자를 주조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서적을 인쇄해내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적원에서 인출된 서적의 활자는 銅이 아닌 나무로 제작된 것이었다. 서적원은 목활자를 만들어서 일부 필요한 문서를 인쇄해내는 데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은 좀 더 '활자의 주조'에 초점을 두기 위해 '주자소'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주자소가 서적원을 잇는 기관이었는지에 대한 어

211) 『太宗實錄』 권2, 태종 1년 7월 庚子.
212) 김화선, 2017, 앞의 논문, p.388.
213) 『太宗實錄』 권5, 태종 3년 2월 庚申.

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의 선후 관계를 명백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두 기관은 지향하는 목표가 같았던 것이다.[214]

이처럼 태종은 1401년 교서관을, 1403년에는 주자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교서관은 문신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문적을 관리하거나 제사에 쓸 축문을 작성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반면 주자소는 활자를 주조하고 인쇄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이렇듯 엄밀히 구분되는 직무와 직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두 기관의 관계에 대해 교서관을 상급 기관으로 주자소를 하급기관으로 보는가 하면 별개의 기관으로 보기도 한다.[215]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세조 6년(1460)에 주자소가 교서관에 통합되었고, 그 결과 『경국대전』에는 교서관 관련 사항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개국 초기 교서관과 주자소의 상황은 달랐고, 이는 두 기관에서 수행했던 임무에서 잘 드러난다.[216]

먼저 교서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주목할 수 있다.

> 李守頲, 朴居善에게 杖 60대를 때리도록 명하였다. 교서관의 관원으로서 宗廟祭에 七祀의 祝文을 빠뜨렸기 때문이었다.[217]

교서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축문을 작성하고 의례에서 사용되는 祝板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교서관은 예조의 소속 기관으로서 국가의 의례 의식에 사용되는 축문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실록의 기

---

214) 김화선, 2017, 앞의 논문, p.390.

215) 한동명은 태종은 1401년 교서감과 서적원을 통합하여 교서관으로 만들었고, 동왕3년(1403)에 주자소를 새로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면서 초기부터 교서관보다 그 分司인 주자소를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한동명은 교서관과 주자소는 같은 기능을 했던 기관이라는 전제를 두었고, 이에 따라 주자소를 교서관의 하급 기관으로 이해한다(한동명, 1986,「한국 중세 인쇄 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pp.54-57). 이에 반해 유대군은 교서관과 주자소는 별개의 기관이었다고 보았다. 주자소는 설립 초기에는 교서관 소속이 아니었고, 직접 군주에 소속된 왕궁 내의 한 기구였다고 본다(유대군, 2003,「조선 초기 주자소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pp.91-94).

216) 김화선, 2017, 앞의 논문, p.390.

217)『太宗實錄』권28, 태종 14년 10월 甲午.

사는 그러한 업무에 착오를 일으킨 교서관원이 장형에 처해졌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교서관에서 篆字를 공부하는 법이 六典에 기재되어 있으나, 黜陟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마음먹고 공부하지 아니하여, 도서 및 碑碣의 篆額을 잘 쓰는 자가 적사오니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월 시험으로 [인재를] 뽑으매, 殿最하는 데에는 비록 중·하등에 있더라도 字學을 상등에 둔다면, 자학이 이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깎아 내림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니, 매양 상등에 처하여 대단히 정숙한 자는 차서를 가릴 것 없이 등용하여 후에 오는 자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18]

또한 위 기사는 교서관이 자학을 중시했던 기관이었음을 보여준다.[219] 교서관원을 뽑을 때 시재를 자학으로 하여 점수를 기록해 두었다가 외임으로 서용되더라도 특별히 경관으로 뛰어 올려 제수하거나, 인장에 쓰이는 글씨체인 전자를 잘 쓰는 자를 교서관의 겸관으로 들여 달라는 것이다. 예조에 속해서 제사에 필요한 축문을 작성하고 축판을 만드는 일이 교서관원의 주요 임무였기에 자학에 뛰어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게다가 교서관원으로 하여금 “크고 작은 篆字와 八分을 익히게” 하자는 교서관의 요청을 통해서도 교서관의 성격을 유추해볼 수 있다.[220]

이에 반해 주자소의 주요 임무는 활자를 주조하고 서적을 인쇄하는 것이었다.[221] “경연에 소장한 古註詩書와 左氏傳을 내서 字本으로 삼게 하여 그 달(2월) 18일부터 주조하기 시작한 것이 수개 월 사이에 수십만

---

218) 『世宗實錄』 권83, 세종 20년 11월 甲申.

219) 자학은 十學 중의 하나이다. 십학은 태종 6년(1406)에 左政丞 하륜이 설치한 10가지 교육 기관으로 첫째는 儒學, 둘째는 武學, 셋째는 吏學, 넷째는 譯學, 다섯째는 陰陽風水學, 여섯째는 醫學, 일곱째는 자학, 여덟째는 律學, 아홉째는 算學, 열째는 樂學이었다.

220) 『世宗實錄』 권86, 세종 21년 7월 壬戌.

221) 조선 전기 활자의 주조 활동은 김두종, 1974, 『한국고인쇄 기술사』, 탐구당, 1974 ; 천혜봉, 1993, 『고인쇄』, 대원사 ; 천혜봉, 2012,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 참조.

자나 되는 많은 숫자에 이르렀다."[222]는 기사는 주자소가 설치되던 해인 1403년에 수십만 자에 이르는 계미자 주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자소가 설치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적원에서는 동활자가 주조되지 못했던 데 비해, 주자소는 설치되던 그해에 활자 주조를 완성해냈다.

주자소에서 인쇄한 서적은 『大學衍義』, 『경제육전』, 『승선직지록』 등 대략 14종이었는데, 대다수가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이었다.[223] 주자소는 세종 17년 경복궁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각 지방에서 바친 책판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서 새긴 易經, 書經, 春秋, 詩經, 禮記 등과 같은 경전들의 목판이 중앙으로 바쳐지면 바로 주자소에 내려서 보관케 했다. 그러나 세종 22년 이후 교서관이 인쇄를 수행한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문종 즉위년(1450)에 "安平大君 李瑢이 … 書法板本을 바치니, 명하여 교서관에 주어 사람들이 模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교서관에서 板本을 본떠서 목판인쇄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단종 대에 교서관이 책판의 보관과 인쇄 작업을 수행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224] 이후 세조는 1460년(세조 6)에 주자소를 혁파하면서 이를 교서관에 합속시켰으며 교서관의 기능이 다시 강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더불어 1461년 세조는 당시 대학자로 명망이 있고 실용을 중요시하며 국력 배양과 민생안정을 중요시한 梁誠之를 교서관의 제조로 임명하였다. 교서관 또한 양성지의 제조 임명과 함께 '二品官의 衙門'으로 格上되었고, 그 이전까지 주자소가 활자 인쇄 업무를, 교서관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목판 인쇄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이제 교서관이 이전 주자소의 기능까지 포괄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225] 이 당시(1461-1466) 교서관의 조직은 조선시대의 교서관 史上 가장 상위 등급의 기관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226] 하지만 1466년(세조 12) 교서관은 '典校署'

222) 『國朝寶鑑』 권3, 태종조 ; 『東文選』 권103, 鑄字跋.
223) 김성수, 2004, 「조선 초기 금속활자 간행도서의 주제 분석」, 『서지학연구』28.
224) 『端宗實錄』 권7, 단종 1년 9월 戊寅.
225) 김화선, 2017, 앞의 논문, p.398.
226) 김성수, 2009, 「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의 조직 기능 및 업무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42.

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五品의 衙門'으로 강등되었고 인원도 축소되었다.[227] 5년 뒤인 1471년(성종 2) 간경도감이 혁파됨과 동시에 교서관에 合屬되었으나 교서관조직의 승격은 없었지만 1484년(성종 15) '전교서'는 '교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3품의 아문'으로 그 관제가 승격되었다. 이로써 교서관의 조직체계는 1485년(성종 16) 「經國大典」이 최종 반포와 더불어 '三品의 官衙'로 제도화되었다. 1777년에 정조의 강력한 문화정책 및 개혁정치의 큰 틀을 마련할 때 교서관은 奎章閣의 外閣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기능은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228] 또한 태종 15년(1415)에는 造紙所를 설치하여 서적의 간행에 필요한 종이 생산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었다.[229]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초기 왕실에서 불경을 간행하는 일이 있었지만 태종이 문교진흥을 위해 세운 교서관 및 주자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였다.[230] 또한 고려시대 대장경의 간경을 위해 설치했던 대장도감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이 개국되고 며칠 안 된 시점에 이미 폐지 상소가 올라온 것으로[231] 볼 때, 조선초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대장도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폐지상소 이후 오래지 않아 대장도감은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32] 이 때문에 세종은 사대부관료들의 반발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궁중에 사설 인쇄기관을 설치하였는데, 이 곳에서 불경 간행을 추진하였다.

먼저 책방은 세종 때에 설립된 왕실의 사설 출판 기관으로, 『세종실록』에는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훈민정음 제정이 끝난 뒤 언문청과 전후하여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33] 책방의 존재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문종과 단종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27)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 1월 戊午.
228) 김성수, 앞의 논문, p.196.
229) 박광헌, 앞의 논문, p.8.
230) 이봉춘, 2015, 『조선시대 불교사연구』, 민족사, p.419.
231)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8월 辛亥.
232) 나영훈, 2013, 「조선전기 도감의 운영과 관제정비」, 『한국사연구』162, p.339.
233) 이숭녕, 1970, 「이조 초기 역대 왕실의 출판 정책의 고찰」, 『한글』1146, p.98.

正音廳은 小學의 인쇄를 끝낸 뒤에 마땅히 鑄字所에 돌리겠다. 報漏閣도 또한 장차 혁파하겠으나, 冊房이라면 혁파할 수 없다.[234]

이렇게 의정부에서 문종에게 正音廳과 冊房은 다 주자소에 돌렸으니, 報漏閣의 雜工도 또한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하여 문종의 답변은 冊房만은 혁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책방에 대한 혁파의 상소는 문종대 뿐만 아니라 단종 즉위초에도 持平 柳誠源, 侍讀官 成三問 같은 신하들도 궐내에 설치된 冊房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세종께서 佛經을 粧幀하고자 하였으나, 외인의 말을 혐의스럽게 여겨 드디어 궐내에 冊房을 따로 두었던 것은 궐내에 사용하기에 편하게 하려는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 세종에서 문종에 이르기까지 兩朝 大臣과 언관으로서 이를 말하는 자가 많이 있었으므로, 문종께서 이를 혁파하고자 하셨으나 실행하지 못하시고 晏駕하셨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빨리 혁파하소서.[235]

이 기록은 단종대 대간들이 책방을 혁파하자는 상소를 올릴 때 제시된 내용으로서 冊房은 世宗代 왜인들이 대장경과 대장경판을 요구[236]해 오고 이를 다 들어줄 수 없자 불경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불경의 보관이외에 불경을 제작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37] 또한

世宗께서 책방, 墨房, 雕刻房을 禁內에 설치한 것은 득별히 일시적인

---

234) 『文宗實錄』 권4 문종 원년 11월 己酉.
235) 『端宗實錄』 권6, 원년 5월 庚辰.
236) 외인들의 대장경 요구는 태조 3년부터 『실록』에 보이며 정종, 태종, 세종대에는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런 외인들의 요구에 계속적으로 대장경을 하사하게 되자 世宗 5년에 가서는 비치된 대장경이 모자라게 되어 금산사 등지에서 대장경과 대장경판을 운송해오도록 하기에 이르렀다(『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0월 25일 壬申). 하지만 대장경에 만족치 않은 외인들이 대장경판을 요구해 오자 세종은 우리나라에 오직 1본 밖에 없으므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후 대장경판을 외인들에게 하사하지 않고 있다(『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2월 壬申).
237) 사문경, 2001, 고려말 조선초 불교기관 연구_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95.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文宗朝에 신 등이 모두 이를 혁파하도록 청하였으나, 문종께서 조각방, 화빈방, 묵방을 혁파하여 尙衣院에 합하였으며, 또 책방을 혁파하여 鑄字所에 합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혁파하지 못하고, 別坐 2인을 뽑아서 鑄字의 일에 久任시킬 자로 삼았으며, 冊房을 鑄字에 합하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생각건대, 이미 鑄字所가 있고 또 冊房을 설치하여 工匠을 나누어 역사시키니, 실로 폐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한 바이니, 신 등이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238]

즉, 의정부에서 책방의 학파를 상소할 때 문종대 책방이 혁파되지 않은 것은 책방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책방은 묵방, 화빈방, 조각방과 함께 궐내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관들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기관 명칭으로 미루어 묵방은 인쇄용 묵을 제조할 수 있는 곳, 화빈방은 불로 강철을 다루는 곳, 조각방은 새기는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239] 또한 책방에 따로 "鑄字의 일을 久任시킬 자"를 뽑았으며, "工匠을 두어 역사시킨다"는 것은 冊房에서 대장경판의 주조 또는 대장경의 간행을 맡아 해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40] 단종은 이러한 상소에 세종이 창설한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대간들의 冊房 革罷 주장에 밀리어 단종 3년(1455) 2월에 책방은 폐지되었다.[241]

정음청의 경우 책방과는 별도로 설치된 기관으로써, 정음청에서 어떠한 서적들이 인쇄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자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몇몇 기사들을 통해 정음청에서 인쇄 업무를 수행했던 상황은 알 수 있다. 세종 승하 후 문종은 정음청을 혁파하라는 신하들의 요청을 받게 된다.

---

238) 『端宗實錄』 권6, 단종 1년 5월 戊午.
239) 이근우, 2016, 「언문청과 창제 시기와 정음청의 위치」, 『인문사회과학연구』 17-1, pp.349-374.
240) 사문경, 2001, 앞의 논문, p.96.
241) 『端宗實錄』 권13, 3년 2월 癸卯.

정음청은 신 등이 명을 들은 이래로 전하께서 불경을 찍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금일에 이를 아뢰는 까닭은 오로지 아문을 따로 설치하여 환관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여서, 좌우의 세력이 커지는 患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군이 불경을 찍는 일을 내가 어찌 금하겠느냐?'고 하시니, 신 등은 命을 듣고 낙담하는 바가 실로 큽니다 … 청컨대 모름지기 파하도록 명하소서.[242]

정음청은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 대군들이 서적을 인쇄하고자 하여, 이 때문에 가서 감독하는 것이다 … 요즈음 憲府에서 여러 대신들과 여러 번 불가하다고 말하므로, 내가 이를 혁파하고자 하나, 그러나 지금 『小學』을 인쇄하는데 끝내지 못하였으니, 끝마치기를 기다려 혁파하겠다.[243]

이 기록을 통해 정음청에서 대군들의 불서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신하들은 그곳에서 인쇄되는 서적의 성격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정음청은 여러 논란 끝에 단종 즉위년(1453)에 폐지되었다.[244]

책방과 정음청이 폐지되고 세조 4년(1458) 세조는 해인사에 소장된 재조대장경 50부를 인경하였는데, 世祖는 재위 3년부터 대장경 50벌을 박아낼 종이 40만 6천 2백 권을 여러 도에 나누어 바치게 하였고[245] 6일 뒤에는 경상도 관찰사에게 海印寺에서 인쇄하여 대장경 50벌을 2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내도록 명하였다.[246] 이 과정에서 주자소에서 불경을 인행하였고 이는 결국 유신들의 반발을 야기하였는데, 세조 4년(1458) 정인지가 상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상께서 주자소에서 法華經 등 여러 經 수백 벌[件]을 印行하게 하였고, 또 大藏經 50벌을 간행하였는데, 또 이제 釋譜를 간행하시니, 신은

242) 『文宗實錄』 권, 즉위년 10월 戊戌.
243) 『文宗實錄』 권, 즉위년 10월 更子.
244) 『端宗實錄』 권4 즉위년 11월 己巳.
245) 『世祖實錄』 권8 세조 3년 6월 壬子.
246) 『世祖實錄』 권8 세조 3년 6월 戊午.

그윽이 생각하건대, 옳지 못한가 합니다.[247]

라고 하여 주자소에서 『월인석보』와 『법화경』 및 『대장경』이 간행되었을 알 수 있으며 주자소에서 불서가 간행된 것은 세조의 강력한 권력하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이 설치된 것은 책방, 정음청으로 이어지는 불서 간행기관의 흐름이 이어진 것이며 비록 임시기구라 할지라도 전담기관을 갖추고 국가적 사업으로서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7) 『世祖實錄』 권11 4년 2월 辛丑.

2. 간경도감의 구성과 운영

1) 간경도감의 체제 및 운영양상

간경도감은 불서의 간행을 위해 세조가 설치한 임시기구로서 세조 7년(1461) 6월 16일에 설치되어[248] 성종 2년(1471) 12월 5일까지[249] 대략 10년간 유지되었다.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감은 고려시대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정무나 군무, 사회, 경제, 토목, 의례, 문화, 불교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설치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무분별한 도감의 설치는 건국의 치자들에게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상설화된 도감을 혁파하였지만[250] 이후에도 불서간행과 같이 상설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무가 있을 경우 임시기구로서 설치되었다.

하지만 간경도감 관련 내용은『조선왕조실록』에서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敎藏의 重刊 사업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불교에 대한 억압정책이 실행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사관들이 불교에 관련된 내용을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 남아 있는 간경도감 관련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실록의 간경도감 관련 주요 기록

왕조	월/일	주요 사건
세조 7년	6월 16일 (을유)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도제조, 제조, 사, 부사, 판관을 둠
세조 8년	1월 30일 (을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간경도감 주위의 인가 23채를 철거하고 궁성 부근의 거주하는 사람의 사례와 같이 보상함
	2월 24일 (기축)	간경도감에서 소용되는 쌀, 어물 등의 용도가 번잡하여 停罷하도록 함
	4월 4일	간경도감 역사에 참여하는 부역승에게 도첩 대신 상직을 주기로 함

248)『世祖實錄』권24, 세조 7년 6월 乙酉.
249)『成宗實錄』권13, 세조 2년 12월 壬申.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한 직후부터, 사대부들은 간경도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문제 등이 이유로 도감의 혁파론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성종 2년(1471)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50) 나영훈, 앞의 논문, p.75.

	(기사)	
세조 9년	9월 2일 (무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法華經을 바침
세조 11년	1월 10일 (무오)	간경도감에서 공철 대납법의 운용에 대해 아룀
세조 12년	3월 21일 (임술)	간경도감에 명하여 수륙회를 열도록 함
세조 13년	11월 13일(을해)	간경도감에 명하여 無注法華經을 인출하게 함
세조 13년	12월 14일(병오)	司饔院 東廊의 炭庫에서 失火하여 간경도감의 銅鐵, 布帛, 米麵 여러 창고가 불에 탐
예종 즉위년	9월 10일 (병인)	간경도감이 경상도에서 동을 구입한 것 가운데, 이미 산 것은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경차관의 사목에 비추어 회계에 기록하게 함
	9월 11일 (정묘)	간경도감 제조 한계희가 간경도감 정파에 반대함
예종 1년	1월 14일 (기사)	간경도감의 낭관과 사옹원 관리들을 불사에 참여시킴
	1월 27일 (임오)	호조에서 간경도감이 갖고 있는 대납의 폐해를 지적함
	6월 18일 (경오)	예종이 간경도감에 거동했을 때에 가로가 떠들썩하고 분잡하여 소라를 불도록 함
	9월 1일 (신사)	예종이 간경도감에 거동함
	9월 28일 (무신)	오백창, 조민 등이 봉선사 및 간경도감의 관리를 논상하지 말 것을 청함
	10월 1일 (신해)	봉선사, 간경도감의 동역 제조와 낭관 등에게 논상할 것을 명함
성종 1년	2월 14일 (계해)	김수녕 등이 간경도감을 파하고, 승니를 쫓아내기를 상소하였고 이에 성종은 일이 끝나면 파하기를 약속함
	4월 14일 (임술)	김수녕 등이 간경도감을 파하기를 재차 상소함
	6월 8일 (을묘)	경연에서 柳輊가 간경도감을 임시로 파하기를 청함
	7월 27일 (계묘)	사재감의 奴 문검동이 간경도감을 파하기를 청함
성종 2년	1월 21일 (갑오)	侍講官 김계창, 執義 손순효 등이 간경도감을 통해 불경을 구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함
	1월 27일 (경자)	김수녕 등이 불서 간행을 중지하고 간경도감을 파하기를 상소함
	12월 5일 (임신)	간경도감을 파함

성종 3년	2월 7일 (갑술)	간경도감 당상 난청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김수온 등에게 하사품을 내림

먼저 실록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간경도감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간경도감은 서울에 本司를 두고 지방에 分司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本司의 정확한 본사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실록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몇몇 기록이 남아 있다. 세조 8년 간경도감을 설치한 몇 개월 후, 화재를 염려하여 간경도감 부근의 人家 23호를 철거시키고 궁성 부근의 예와 같이 보상하며[251] 경복궁 내 司饔院에 화재가 발생하여 본원과 간경도감의 銅鐵, 布綿, 米麵 등을 보관하는 여러 창고가 소실되었다는 것이 그 기록이다. 도감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기록을 통해 사옹원의 창고 옆 건물에 간경도감의 창고가 있었으므로[252] 아마도 궐내가 아니라 궐외의 번화가[253] 또는 경복궁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254] 추정하기도 한다. 간경도감에서 발간된 한문불전의 간기를 통해 간경도감의 分司는 지방의 慶尙道 尙州牧, 安東府, 晋州府와 全羅道 南原府, 全州府, 光州牧과 黃海道 開城府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255] 현재 발견된 간경도감 간행본 이외에 더 많은 지역이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으며, 分司는 지방을 통해 관찰사에게 명하여 지역의 서적을 간행하는 조선의 전형적인 출판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256]

간경도감의 관직 구성은 총책임자인 都提調와 提調, 副提調, 使, 副使, 判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57] 조선초기 도감의 조직은 '제조-사-부사-판관-녹사'로 이어지는 고려의 유제를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258] 간경도감 역시 조직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간경도감의 체제 및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

251) 『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 1월 乙丑.
252) 『세조실록』 권44, 세조 13년 12월 丙午.
253) 박정숙, 앞의 논문, p.43.
254) 김무봉, 앞의 책, p.198.
255) <표 2>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전 참조
256) 박광헌, 앞의 논문, 2018, p.18.
257) 『세조실록』 권24, 세조 7년 6월 乙酉.
258) 나영훈, 앞의 논문, p.73.

2) 간경도감의 재정기반

조선전기 도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였다. 일반적으로 의례, 토목, 영접 등에 관련된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이 외에도 각종 功臣·推刷·模寫·宴享·刊行등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기도 하였다.[259] 이들 사안은 대부분 임시적으로 발생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들 사안이 발생하면 도감이 설치되고, 도감을 유지하고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및 인원 구성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조직이 편성되면 각기 필요한 물품을 중앙의 각 官署에 요구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물품의 조달과 관련하여 특히 戶曹나 工曹의 도움을 받았으며, 각각의 물품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供上衙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조선은 공물을 각 지방에서 중앙 각사로 직접 수납받았기 때문에, 이들 관서에 여러 종류의 물품이 있었고, 도감은 각 직능의 해결에 필요한 물품을 각 관서에서 조달받아야 했다. 도감에서 필요한 여러 물품의 마련은 각 관서에서 즉각 지급할 수 있었으나, 각 관서의 물품은 본래 貢案과 橫看에 의한 경상비로 활용해야할 재원이었다.[260] 따라서 도감은 중앙 각 관서에서 수납받을 수 없는 물품, 예를 들어 중앙 관사에서 이미 소모하여 없는 물품이나, 중앙에서 항상 구비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직접 외방에 요구할 수도 있었다. 도감에서는 移文을 통해 각 도의 관찰사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필요에 따라 敬差官을 직접 지방 군현에 파견하여 물품을 조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현물의 재원 마련은 크게 두 가지 방식, 각종 유관한 경관서에서 물품을 조달받아 활용하는 것과 경관서에 해당 물품이 없는 경우 외방에 직접 경차관을 보내어 차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261] 간경도감의 경우도 경상도에서 동을 차출했다는 기록[26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도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물품을 조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경도감에서 支用하는 숫자가 일년에 1천 수백 碩 이하로 내려

259) 나영훈, 2014,「조선전기 都監의 조직과 기능」,『朝鮮時代史學報』70, pp.59-63.
260) 김옥근, 1984,『朝鮮王朝財政史硏究』, 일조각, pp.122-142, pp.166-174.
261) 나영훈, 2016, 앞의 논문, pp.101-103.
262)『睿宗實錄』권1, 예종 즉위년 9월 丙寅.

가지 않을 정도로[263] 불서를 간행하는 등 도감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간경도감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貢物 代納의 기록이 일부 남아 있다. 방납이란 원래 각 군현에서 諸司에 바치는 공물 가운데 백성이 自備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바친 후에 그 값을 보상받는 代納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264] 조선시대 방납에 대한 최초의 기사는 태종 9년(1403) 3월 사헌부에서 올린 時務數條 가운데 나타난다. 즉

> 지금 大小人員과 棟樑僧徒들이 각도 각관의 陳省을 받아 각사에 바치는 공물을 스스로 준비해 先納하고 帖紙를 받아 그 고을로 내려가서 값을 배로 징수하므로 백성들을 침해함이 심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위와 같이 스스로 준비하여 선납하는 것을 일절 금단하여 그 폐단을 없애도록 하소서[265]

즉 대소인원과 동량승도들이 각도 각 군현의 陳省을 받아 각사에 바치는 공물을 스스로 준비해 先納하고 그 군현에 내려가 값을 배로 징수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받게 되자, 사헌부에서 이를 금단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기사는 대소인원과 동량승도에 의해 방납이 국초부터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266]

그런데 태종 9년(1409) 방납 행위를 금단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방납행위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 2년(142) 11월 예조에서 대소인원과 간사승들의 방납행위를 재차 건의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원육전』·『속육전』 안에 실려 있는 각년 判旨를 中外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하지 아니합니다. 그 받들어 시행하지 않는 조건을 삼가 기록하여 올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더욱 명백히 거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자는 논죄하소서 … 홍무 7년에 사헌부에서 장계

263)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1월 庚子.
264) 『世祖實錄』 권18, 세조 4년 윤12월 庚午.
265) 『太宗實錄』 권17 태종 9년 3월 壬戌.
266) 박도식, 2011.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혜안 pp.187-188.

로 신청한 것인데 大小人員과 綠化僧으로서 陳省을 받고 사사로이 공물을 준비하여 선납하면 그 관사에서 영수한 문서를 받게 되나, 늦어서 하부 관서로 넘어가게 되면 공물 가격은 갑절이나 더 받게 되어 미약한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 지금부터는 모두 그런 일이 없도록 금단할 것이라 하였다."[267]

위의 기사는『원육전』·『속육전』내의 여러 해 동안 내린 判旨를 당연히 遵行해아 하는 것인데도 내외관리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예조에서 뽑아 올린 30조목 중의 하나이다. 국가에서는 방납을 원칙상 금지하였지만, 세종 4년(1422) 윤12월에 방납금지를 8도 관찰사에게 下諭하면서도 민간이 自備할 수 없는 공물에 대해서 자원방납자가 있으면 民情의 便否 를 사실대로 탐문하여 계문하도록 함으로써 방납의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이다.[268]

그리고 최초로 합법적인 방납활동을 허용받은 자는 佛事와 관계 있는 幹事僧이었다. 세종 말년 廣平大君·平原大君과 昭憲王后의 연이은 죽음 이후 문종 원년(1451)에 이르기까지 津寬寺를 비롯하여 10여개 소에 달하는 佛寺가 營造 및 重修되었을 뿐만 아니라 佛事도 상당히 활발하게 행해졌다.[269]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여 공안수입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되자 공물을 引納하거나 加定하여 이에 보충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27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서는 草苫 등 일부 공물의 대납을 허용하였던 것이다.[271] 이러한 이유로 민인이 자비할 수 없는 공물에 한하여 간사승에게 대납을 허용하였다. 이들은 왕실 및 종실의 비호 아래 방납을 행하였기 때문에 陳省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272]

그러나 간사승이 각 군현에 직접 내려가서 대납가를 가혹하게 징수하는 폐단이 야기되자 문종 즉위년(1450) 4월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

267)『世宗實錄』권10, 세종 2년 11월 辛未.
268)『世宗實錄』권18 세종 4년 윤12월 庚午.
269) 한우근, 1993, 위의 책, pp.178-179.
270)『文宗實錄』권1, 문종 즉위년 3년 乙巳 ;『文宗實錄』권1, 문종 즉위년 4월 癸未,『文宗實錄』권4, 문종 즉위년 10월 庚寅.
271)『文宗實錄』권1 문종 즉위년 4월 辛丑.
272) 박도식, 2011, 앞의 책, p.204.

등은 “금년부터 진관사 간사승에게 허가한 대납을 금지하는 대신에 충청도의 祿轉 잉여미 1,080석으로 진관사 조성비로 충당하게 하고,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전년도분의 대납가 未收分을 소재관이 수납하여 지급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국고미로 경비에 보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문종은 “간사승의 대납을 금지하더라도 잡인 청탁·대납하는 폐가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空處에서 대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273]

승도의 침요를 억제하기 위해 문종 즉위년(1450) 5월 충청도관찰사 권극화가 木炭·木材의 대납가를 정할 것을 아뢰었을 때, 이사철·이사순·김흔지·정이한 등은 “각도 각관의 원근에 따라 물가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한다는 것은 도리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종전대로 하자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에, 이계전·김문기 등은 “잡물의 대납가는 원래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납하는 자가 倍徵하는 폐단이 많음으로 의정부의 의논에 따라서 입법화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래 문종은 “육전에 수령이 친히 감독하여 收納하는 법을 거듭 밝혀서 시행하라”고 하였다.[274] 그리고 금후부터 대납한 승려들이 직접 각 군현에 가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재관의 수령이 참작하여 대납가를 거두어 船價를 주어 간사승에게 전해 주도록 하되, 만약 금령을 어기고 대납할 때에는 대납가를 관에서 몰수하도록 하였다.[275] 그러나 특별히 정해진 대납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성이 게재될 소지가 있기 마련이었다.[276]

세조가 즉위한 이후, 세조 4년 윤 2월에 호조는 먼저 富商大賈의 代納價 勒徵과 수령들도 따라서 督徵하는 자가 많아서 그 후로는 대납자는 대납인은 장물을 계산하여 논죄하고 沒官하며, 情狀을 안 수령은 罷黜할 것을 諸道에 下諭하도록 啓請하여 세조는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277] 호조는 세조 5년 8월에 “대납공물은 民의 情願을 듣도록 이미 명령”하였는데, 수령, 幹事僧 등이 그 본의를 망각하고 민간에서 備納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대납하여 크게 폐해를 입히므로 그러한 수령, 幹事僧은 중

273)『文宗實錄』권1 문종 즉위년 4월 辛丑.
274)『文宗實錄』권1, 문종 즉위년 5월 戊申.
275)『文宗實錄』권1 문종 즉위년 5월 己未.
276) 박도식, 2011, 앞의 책, p.193.
277)『世祖實錄』권11, 세조 4년 윤2월 癸未.

하게 論罪하도록 啓請하여 세조도 그대로 좇았다.[278]

또한 호조는 공물과 대납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기를

공물은 陳省에 대납인가 自備인가를 기록하여 한결같이 입법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만약 자비한다고 핑계하고서 몰래 대납을 행하거나 혹 干請에 따라 법을 어기고 폐단을 만드는 자는 宥赦 전을 논하지 말고 즉시 罷黜하게 하소서[279]

을 계청하여, 세조는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朝士가 商賈와 연락하여 대납하는 자는 여전히 많았고 수령 역시 간청에 따라 민간에서 쉽게 備納할 수 있는 공물은 情願을 묻지 않고 대납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아서, 세조는 諸道 觀察使에게 반드시 법대로 민간의 情願에 따라 하고 收納文牒을 憑考하고 給價하도록 거듭 諭示하고 있었다.[280] 그러나 승인의 대납은 계속되어 代納價를 남징하는, 처를 거느리고 자식을 기르는 僧人들이 고발되어 推鞫당하는 경우도 있었다.[281]

그러나 세조는 세조 9년(1463) 9월에 上院寺 僧이 그가 창건한 佛殿에 불상을 조성 및 안치하기 위하여 경상도 공물의 대납을 청원하였을 때, 세조는 禮曹의 반대 계청이 있었음에도 上院寺가 효령대군의 원찰이라는 이유로 寺僧의 대납을 허용하였다.[282] 세조 12년(1466) 9월에 刑曹는 경기관찰사 尹慈가 民情을 묻지 않고 승려인 海修의 狀告에만 의거하여 司僕寺에 生芻를 대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啓聞하였으나, 세조는 거론하지 못하게 하였다.[283] 결국 세조는 공물대납에 대한 국가적인 僧人庇護와 공물대납은 "民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의 遵行 사이의 현실적인 모순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284]

이러한 상황하에서 충훈부과 간경도감에 공물상납권을 지급했음이 실록에서 확인된다.

---

278) 『世祖實錄』 권17, 세조 5년 8월 辛酉.
279) 『世祖實錄』 권22, 세조 7년 1월 甲辰.
280) 『世祖實錄』 권23, 세조 7년 3월 庚戌 ; 『世祖實錄』 권29, 세조 8년 8월 壬申.
281) 『世祖實錄』 권28, 세조 8년 7월 庚子.
282) 『世祖實錄』 권31 세조 9년 9월 癸未.
283) 『世祖實錄』 권44, 세조 12년 9월 癸酉.
284) 한우근, 1993, 앞의 책, p.248.

승정원에서 “某邑의 貢物을 刊經都監에게 주고, 某邑의 공물을 忠勳府에 주니 이는 어긋남이 있고, 값을 거둘 때도 폐단이 많다라고 전교하여 세조가 司憲府로 하여금 檢察케 하였다.[285]

먼저 충훈부는 태종대에 설치된 공신도감을 세종 16년(1434) 9월에 충훈사로 개칭하였다가,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공신이 되어 충훈사에 속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단종 2년(1454) 정월에 이르러 駙馬府의 예에 의하여 충훈사의 격을 올려 충훈부로 칭하였다.[286] 세조 7년(1461) 3월 효령대군이 충훈부와 함께 공물을 상납하기 전에 受價하여 방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287] 충훈부에서는 이전부터 방납을 해 왔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288]

간경도감에서의 방납은 세조 7년(1461) 7월 간경도감 제조 尹師路가 啓請하여 경기 제읍에서 사복시에 납부하는 生草의 대납을 京中의 富人으로 하여금 청부 상납케 한 후에 그 受價를 兩分하여 도감에 납입케 한데서 비롯되었다. 사복시에서 기르는 말의 사료인 생초는 경기제읍 농민의 요역으로 輪次 上納하였는데, 군현 가운데 길이 멀고 수송에 곤란한 지역은 사람을 고용하여 대납케 하였다.[289] 또한

세조께서 무릇 민간의 田稅와 貢物을 사람들로 하여금 京中에서 先納하도록 허락하고, 그 값을 민간에서 倍로 징수하였는데, 이것을 ‘代納’이라 이르고, 간경도감으로 하여금 대납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여, 남의 財貨를 먼저 받아 대납하게 허락하였는데, 이것을 ‘納分’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豪家 巨室로서 매우 이를 좋아하는 자와 富商大賈 및 僧徒들이 勢家에 의탁하거나, 혹은 信眉와 學悅, 學祖에게 의지하여 서로 다투어 먼저 붙으려 하였다 … 중들이 백성에게 징수하고 독촉하게 하는데 이들은 반드시 大君의 代身인 信眉, 學悅, 學祖의 弟子라 칭하여 뜻

285)『世祖實錄』 권28, 세조 8년 7월 癸卯.
286)『端宗實錄』 권10, 단종 2년 1월 丁卯.
287)『世祖實錄』 권23, 세조 7년 3월 庚戌.
288) 박도식, 2011, 앞의 책, p.206.
289)『世祖實錄』 권25, 세조 7년 7월 庚申.

과 같지 않으면 매질을 가하여 백성들이 경계하였다.[290]

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납의 판매권인 '納分'을 富商大賈에게 주고, 그 대신 代價를 징수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당시 방납활동에 참여한 부상대고·사족·승도 등은 납분을 인수하기 위해 관세가 혹은 왕실과 두터운 친분을 가진 승려 信眉 등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간경도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공물 방납의 폐해는 간경도감 폐지의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간경도감의 인력은 크게 도감의 사안을 관장하는 관원과 서리, 그리고 도감이 담당한 의물을 제작할 전문적인 匠人, 마지막으로 단순한 역사에 동원될 役夫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291] 관원과 같이 도감의 지휘체계에 들어가는 인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여기서는 장인과 역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도감이 설치되고 역사가 진행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부분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진 장인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보통 관서에 소속된 장인, 즉 京·外의 工匠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은 초기부터 도감이 설치되고 기술적인 제작이 필요한 경우 장인을 동원하였다.[29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 대체로 장인(匠人) 1백 70여 인이 소비하는 식량이 하루에 5, 6석(碩) 이하가 아닐 것이니, 한 달의 비용을 계산하면 2백 석(碩) 가까이 되는데,[293]

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경도감의 간행 사업에 참여한 장인의 수는 170여 명으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의 양이 5,6석이었다는 성종 2년(983)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간경도감의 운영 기간 중 가장 많은 불서가 간행된 세조 8년-12년에는 사역에 참여한 장인의 수는 적어도 170명

290)『睿宗實錄』권3, 예종 1년 1월 壬午.
291) 나영훈, 2015,「17세기 후반-18세기 國葬都監의 재원 조달과 규모」,『大同文化研究』91, p.190.
292) 나영훈, 2016, 앞의 논문, p.106.
293)『成宗實錄』권9, 성종 2년 1월 甲午.

이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선전기에는 주로 민력을 동원하여 도감의 사안을 처리하였지만, 특별한 경우 승려를 동원하여 부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간경도감 설치 이전 도감에 승도를 부려 역사를 수행한 사례는 태종 12년(1412) 開川都監에서 확인되는데, 이 때 외방의 遊手 僧徒를 모아서 양식을 주어 역사를 시켰다는 기록을 통해,[294] 역부와 함께 승도를 동원하여 역사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295] 또한 세종 28(1446)에는 산릉도감에서 농사철을 당하여 농민을 사역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度牒이 없는 승려를 모아 사역시키고 도첩을 발급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296] 간경도감의 경우도 불서를 간행한다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승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승려들이 도감에 부역했음이 실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 간경 도감에 역사하여 도첩을 받은 자는 定數가 없고 ... 일을 마칠 기약도 없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다투어 서로 머리를 깎으므로 그 폐단이 작지 않으니, 여러 곳의 赴役僧은, 청컨대 이제부터는 도첩을 주지 말고 願에 따라 상직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97]

> 예조에서 아뢰기를 ... 간경 도감과 여러 곳에서 역사한 중에게 도첩을 준 것이 또한 수를 계교할 수가 없으므로,[298]

조선초기 도첩승이 된다는 것은 비단 불교의 출가자로 공인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을 면제받는 것이었으므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통제하는 일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사항 중 하나였다. 더불어 전체 승의 규모는 국가의 役 운영과 연동되는 문제였고 역은 신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299] 결국 도감에 부역한 승려들에게 도첩을 발급하

294)『太宗實錄』권23, 태종 12년 2월 乙丑.
295) 나영훈, 2016, 앞의 논문, p.119-120.
296)『世宗實錄』권111, 세종 28년 3월 乙未.
297)『世宗實錄』권28, 세종 8년 壬午.
298)『世祖實錄』권35, 세조 11년 1월 乙酉.

는 방식은 승려를 양산하고 良丁을 없앤다고 하여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후 간경도감 폐지의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299) 양혜원, 2016,『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309.

3) 간경도감의 여러 기능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경도감의 지속된 시기는 세조 7년(1461)부터 성종 2년(1471)까지 10여년 간이었고, 간경도감의 가장 중요한 목적 및 역할은 물론 佛典을 간행하는 것이었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고 하지만, 현존하는 불서의 간행연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간경도감이 설치된 세조 7년(1461)부터 세조 11년(1465)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靖難功臣인 奉石柱의 난과 李施愛의 난이 세조 11년(1465)과 세조 13년(1467)에 각각 발생하여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작업이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불서 간행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세조 사후에는 유신들의 반발로 불서 간행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조 12년(1466) 관제개혁으로 상설도감이 개혁의 대상이 되며, 도감의 운영 양상이 완전히 정비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300] 이와 관련하여 간경도감의 경우도 계속 유지되기는 하나 그 운영 방식이나 체제가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간경도감이 설치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서 간행이 점차 진행되지 않지만 이와 별도로 서적의 수입과 의례의 주관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간경도감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이 설치된 직후부터 다수의 불서가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는데, 불서 간행 이외의 작업으로서는 간경도감이 興天寺의 鑄鐘을 주도했을 확인할 수 있다.[301] 또한 불교적인 상서가 세조 10년(1464)부터 12년(1466)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서와 동반하여 많은 인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큰 불사가 행해졌다.[302] 세조 10년(1464) 효령대군이 檜巖寺에서 圓覺法會를 설행할 때 여래현상과 사리분신의 奇祥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圓覺寺의 창건이 추진되었는데, 세조 13년(1465)에 원각사

300) 남지대, 1993,『조선초기 중앙정치제도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45-50.
301) 興天寺鑄鐘名, 조선금석총람 하 pp.739-742.
302) 박세연, 2011,「조선초기 世祖代 불교적 祥瑞의 정치적 의미」,『사총』7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p.40.

조성에 참여한 공으로 圓覺寺 造成提調와 함께 간경도감 提調에게도 資級을 올려주고 있어[303] 간경도감이 원각사 건립에도 참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圓覺寺碑의 뒷면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造成都監과 刊經都監의 관리 명단은 刊經都監이 圓覺寺 건립에 참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한다.

또한 水陸齋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無主孤魂을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설법하고 먹을 것을 베푸는 의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불교의례로.[304] 조선의 억불정책 속에서도 불교의례의 통합과 함께 왕실에서 수륙재를 중시하면서 수륙재는 대표적인 불교의례이자, 공적으로 설행이 허락된 유일한 불교의례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조선시대 수륙재가 지속적으로 설행되는 바탕이 되었다.[305] 그런데 세조 12년(1466) 3월 21일에 간경도감에 명하여 水陸會를 베풀게 하였음이[306] 확인된다.

수륙재 이외에도 간경도감이 각종 불사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종 1년(1469) 1월 14일에는 간경도감의 낭관과 사옹원 관리들을 官階를 더하여 殯殿佛事에 참여하게 하였다.[307] 또한 예종 1년(1469) 6월 18일에는 간경도감의 郎官으로 하여금 靑玉佛像을 제조하는 데 감독하도록 하였고,[308] 간경도감의 李時珟는 洛山寺의 역사를 감독하기도 하였다.[309] 이로 미루어 간경도감의 관리들이 간경도감의 末期에는 佛經의 간행보다는 佛事의 참여나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빈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초기부터 일본의 막부장군 및 對馬島를 비롯한 일본 각처의 영주들이 서로 다투어 客使를 조선에 보내와서 토물을 獻上하고 回賜物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때로는 대장경을 請求하는 일도 있었다. 세조대에 들어와 그들의 내왕이 더욱 빈번하였고, 상당히 많은 부수의

303) 『世祖實錄』 권42, 세조 13년 4월 乙巳.
304) 강호선, 2017,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 p.486.
305) 강호선, 2014, 「수륙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엮음, 『테마 한국불교』2, 동국대학교출판부, p.352.
306)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 3월 壬戌.
307) 『睿宗實錄』 권3, 예종 1년 1월 己巳.
308)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 6월 庚午.
309)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 7월 甲申.

불경류가 일본인들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일본에 전파되었다. 당시의 일본으로서는 佛經傳受의 주요한 루트가 조선이었으며,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공사무역에 수반되는 대외외교정책 나아가서는 왜구방어책의 일단이기도 하였다.[310] 流球國의 경우, 단종조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사이에서 불교와 관련되는 교섭기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세조조에 이르러 주로 조선인 표류자 등의 송환이 계기가 되어 그들의 請求로 유구국왕과 그 사신에게 적지 않은 불경류가 賜與되었다.

한편, 세조 13년(1467)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日本國 冷泉津 藤氏의 어미가 使送한 茂村이 亡父를 위하여 중 3인이 쓴 刺血寫의『法華經』1件을 청하여 사찰에 安置하고자 하니 ... (세조가) 刊經都監에 명하여 無注法華經을 인쇄하여 주게 하였다.[311]

라고 하여 일본・대마도・유구국으로 賜與된 불서 중에서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조 연간에 일본・대마도・유구국으로 불서가 賜與된 기록 중 한번에 대규모로 보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12]

310) 한우근, 1993, 앞의 책, p.261.
311)『世祖實錄』권44, 세조 13년 11월 乙亥.
312) 馬場久幸, 2016,『日韓交流と高麗大藏經』, 法藏館, pp.153-230,

<표 4> 세조 연간 외국으로 賜與된 불서 목록

연도		세조5년(1459)	세조6년(1460)	세조7년(1461)	세조 8년(1462)		세조13년(1467)	
월 일		8월 23일	9월 27일	4월 22일	1월 10일	1월 16일	8월 14일	8월 17일
도착지		일본	일본	대마도	유구국	유구국	유구국	유구국
1	成道記	○	○	○	○	○	○	○
2	法華經	○	○	○	○	○	○	○
3	金剛經	○	○	○	○	○		
4	金剛經十七家解	○						
5	金剛經五家解					○	○	○
6	金剛經冶父宗鏡						○	○
7	心經	○	○	○	○	○	○	○
8	維摩詰經						○	○
9	維摩經宗要				○	○	○	○
10	圓覺經	○		○	○	○	○	○
11	涵虛堂圓覺經						○	○
12	楞嚴經	○		○	○	○	○	
13	楞嚴義解						○	○
14	楞嚴會解						○	○
15	永嘉集證道歌	○	○	○	○	○	○	○
16	碧巖錄						○	○
17	高峯和尙禪要	○					○	○
18	眞實珠集						○	○
19	楞伽經							○
20	楞伽經疏					○	○	○
21	阿彌陀經疏					○	○	○
22	觀無量壽經義起					○	○	○
23	大悲心經		○	○	○	○	○	○
24	四敎儀			○	○	○	○	○
25	起信論	○	○	○	○	○	○	
26	法鏡論						○	○
27	法經論					○		
28	飜譯名義	○	○	○	○	○	○	○
29	法敎						○	○
30	水陸文						○	○

31	宗鏡錄					○		
32	地藏經	○						
전적수		12	8	11	16	18	26	26

이 표에 따르면 간경도감이 설치된 세조 7년(1461) 이후 賜與된 전적수가 점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간경도감에서 대규모 간행작업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永嘉集, 圓覺經, 楞嚴義海, 眞實珠集, 金剛經, 阿彌經疏 등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인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인본들 중에도 간경도감에서 印出한 印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경도감의 폐지 후에도 貞熹王后와 仁粹大妃 등의 발원으로 간경도감 版木을 통한 印出은 지속되었다. 특히 성종 3년(1472) 인수대비의 발원으로 가장 많은 불경이 인출되었는데, 이 중에는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서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세조 사후 간경도감의 폐지 여론이 조성하는 상황 속에서 간경도감이 佛典의 수입에 관여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성종 2년(1471) 중국에서부터 불경을 수입하고자 하는 문제를 두고 司憲府執義 孫舜孝가 그 불가함을 아뢰자,

>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 지금 다만 불경만을 사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유교의 경전도 사 오는 것이니, 중국 사람들이 반드시 불경이라고 하겠는가? 노대비께서 구하는 바이시므로, 그대들이 비록 날이 다하도록 감히 간하더라도 나는 끝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313]

중국에서 불경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孫舜孝가 불가함을 아뢰자, 대왕대비(예종의 비)가 직접 전교하여 불서 수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司諫院行大司諫 金壽寧이 올린 상소에서, “간경도감에서 布 50匹을 가지고 중국에서 佛書를 구한다는데, 분격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314]라고 한 것을 보아 대왕대비

313)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1월 乙未.
314)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1월 甲午.

의 지지를 받은 간경도감이 주체가 되어 불서을 수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경도감의 활동은 불서 간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불교의례 및 사찰 관련 업무 등 세조가 주도하는 불교 관련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간경도감의 성격을 불경의 간행기구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세조대 불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관장·수행한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315]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경도감의 중심 인물들이 세조의 측근 엘리트로서 세력을 형성해갔다는 점에 주목하여 간경도감의 성격을 세조의 의중을 지원하는 불교통제기관으로 이해하고,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면서 불서간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통제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강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316] 하지만 불교가 공적인 체제에서 밀려나는 조선 초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거의 유일한 불교 관련 공적 기구로서 간경도감이 불교 관련 사업에 다수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세조 측근 중 불교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불서간행 뿐만 아니라 불교 관련 사업에 중첩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315) 최윤곤, 2002, 앞의 논문, p.159.
316) 박정숙, 1996, 앞의 논문, p.75.

3. 간경도감의 인적 구성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경도감의 조직 구성은 총책임자인 都提調와 提調, 副提調, 使, 副使, 判官 등의 관직으로 구성되었다.[317] 조선초기 도감의 조직은 '제조-사-부사-판관-녹사'로 이어지는 고려의 유제를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318] 간경도감 역시 조직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국역본의 권두에 보이는 雕造官의 列銜에 의하면, 간경도감 최초의 국역불서인 『楞嚴經』 국역본부터 제조 밑에 부제조라는 직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전 국역불서 중 雕造官의 列銜을 전하는 문헌 및 원각사비를 바탕으로 하여 참여 인물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319]와 같다.

<표 5> 간경도감의 인적 구성 명단

	간행 시기	都提調	提調	副提調	使	副使	判官	계
능엄경	세조 8년 (1462)	桂陽君瑈 尹師路 黃守身	朴元亨 曹錫文 尹子雲 李克堪 元孝然 成任 韓繼禧	洪應 李文烱 盧思愼 姜希孟 尹贇	金琢 李季專 鄭文烱 松申舟	權璄 尹弼商	李克增 李克墩 崔灝	24명
법화경	세조 9년 (1463)	尹師路 黃守身	朴元亨 曹錫文 尹子雲 金守溫 元孝然 成任 韓繼禧 姜希孟	盧思愼 尹贇	李季專 南倫 金達全 安寬厚 申松舟	尹弼商 金永堅	0명	19명

317) 『세조실록』 권24, 세조 7년 6월 乙酉.
318) 나영훈, 앞의 논문, p.73.
319) <표 5>는 김무봉, 『훈민정음, 그리고 불경 국역』, 역락, 2015를 참고한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현전 국역불서의 雕造官 列銜을 조사하여 수록하였다.

금강경	세조 10년 (1464)	黃守身	朴元亨 尹子雲 金守溫 金國光 元孝然 成任 韓繼禧 姜希孟	盧思愼 尹贇	安寬厚 金達全 南倫	權瑊 李元孝 趙祉 金永堅	崔灝 金季昌	20명
원각경	세조 11년 (1465)	黃守身	朴元亨 金守溫 尹子雲 金國光 元孝然 韓繼禧 成任 姜希孟 尹**瓚**	盧思愼	安寬厚 金達全 權瑊 洪若治 金元臣	趙祉 尹壕 閔孝男	金季昌	20명
원각사비	성종 2년 (1471)	韓明澮 尹子雲 金守溫	金漑 韓繼禧 盧思愼 權瑊 鄭孝常 尹瓚	趙祉	**執事**: **金孟鱗** **□□** **林□昌** **趙嶔** **李□** **李有仁** **成繼性** **李□□**			18명

각 불경을 간행할 당시 참여 인원수를 살펴보면,『楞嚴經』국역본에는 도제조 3명, 제조 7명, 부제조 5명, 사 4명, 부사 2명, 판관 3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었다.『法華經』국역본에는 총 19명으로 도제조 2명, 제조 8명, 부제조 2명, 사 5명, 부사 2명이고 판관은 설치되지 않았다.『金剛經』국역본의 구성인원 수는 도제조 1명, 제조 8명, 부제조 2명, 사 3명, 부사 4명, 판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圓覺經』국역본에는 도제조 1명, 제조 10명, 부제조 1명, 사 5명, 부사 3명, 판관 1명 등 21명으로 되어 있었다.

국역불서에 수록된 '進箋文' 이외에도『圓覺寺碑』에도 간경도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圓覺寺碑』는 成宗 2년(1471)에 세운 것으로 간경도감이 革罷된 마지막 해의 관직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도제조 3명, 제조 6명, 부제조 1명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을 이전의 기

록에서 使, 副使, 判官으로 나눈 것과 달리 '執事'로 표현되어 있으며, 8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실록에서도 간경도감의 관리의 명단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실록에서 확인되는 간경도감 관직 명단

	간행 시기	都提調	提調	副提調	使	副使	判官	계
세조실록	세조 7년 (1461)	尹師路						1명
세조셀록	세조 8년(1462)					崔有池		1명
성종실록	성종 18년(1487)					權珹 (졸기)		1명
세조실록	세조 12년 (1466)		具致寬					1명
세조실록	세조 14년 (1468)				崔灝			1명
예종실록	예종 1년 (1469)		金守溫					1명
성종실록	성종 1년 (1470)		具致寬 韓繼禧					2명

한편 간경도감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서간행은 당시 집권세력의 강력한 의지로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그리고 간경도감에서 이루어지는 불서 간행사업은 불교사상을 주제로 하는 내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번역에 따른 국역자 또는 언어학적인 문제, 간행업무 추진과 경비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많은 인원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사대부 관료 이외에도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은 孝寧大君과 같은 왕실측 인물들과 승려들로, 그들은 불서를 간행하거나 국역하는 작업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 인물이었다. 특히 불서 국역 사업에서는 번역 및 교정에 효령대군, 昭惠王后(仁粹大妃) 등과 信眉, 守眉, 學悅, 海超, 學祖 등 당대의 승려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그래서 간경도감의 인적 구성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효령대군과 같은 왕실측 인물, 두 번째 간경도감의 도제조 이하 사대부 관료, 세 번째 불서 간행에 협력하고 동참한 승려들이다. 이 부분에서는 각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분석함으로써 간경도감의 인적 구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왕실 측 인물

조선 초기에는 강력한 억불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심이 깊었던 王과 王妃를 비롯하여 妃嬪, 大君, 宗親 등에 의해 궁궐과 都城 내의 사찰을 중심으로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다. 궁궐 내 文昭殿에는 불당이 설치되었으며, 尼寺인 淨業院과 慈壽宮에는 불상과 불화 등을 봉안하여 先王과 대군의 명복을 빌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억불정책이 시행되던 상황 속에서 佛事와 관련된 왕실 측 인물들의 활동은 주목할 만 하다. 간경도감의 활동과정에서 왕실 측 인물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조를 제외한다면 孝寧大君, 桂陽君 李瑈, 昭惠王后, 永順君 李溥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효령대군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太宗의 둘째아들이자 世祖의 숙부로 諱은 補, 자는 善叔, 시호는 靖孝이다. 그는 성종 17년(1486) 죽기 전까지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7명의 왕을 거쳤으며, 宗室의 큰 어른으로서 佛事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의 신불자로서의 행적에 대해서 『세종실록』에서는 그를 '生佛', '彌勒菩薩'로 칭송하고 있으며,[320] 『성종실록』의 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 李補가 佛를 좋아하여 중들을 많이 모아 불경을 講하였는데, 세조의 돌보아 줌이 지극히 융숭하여서 賞賚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 이보는 釋敎를 惑信하여 緇髡의 집합 장소가 되었으며, 무릇 中外의 사찰은 반드시 首唱하여 이를 營建하였다. 세조가 불교를 崇信하여 중들로 하여금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니, 반드시 李補의 권유가 아닌 것이 없었다.[321]

이러한 평가대로 그는 오랜 기간 사원의 창건과 중창, 수륙제 등의 불

320) 『世宗實錄』 권94, 세종 23년 윤11月 丁亥.
321) 『成宗實錄』 권191, 성종 17년 5월 乙卯.

사 설행, 불서 간행, 불상 및 불탑 조성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숭불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사원의 창건과 중창 측면에서 그의 활동을 간략히 언급한다면, 세종 11년(1429)부터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 전라도 月出山 無爲寺의 重創을 指諭하였으며, 萬德山 白蓮寺 중창의 大功德主가 되어 재물을 시주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원각사, 정인사의 창건, 그리고 해인사, 상원사, 월정사, 청학사, 회암사, 도갑사, 신록사, 쌍봉사, 표훈사 등 사찰의 중수와 보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속리산 복천사 및 오대산과 금강산의 여러 사찰과 양양 낙산사 등의 명찰을 찾아 삼보에 공양하는 등 많은 불사를 일으켰다.[322]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각사 창건과 관련하여『세조실록』에서는

> 근일에 효령대군이 檜巖寺에서 圓覺法會를 베푸니, 如來가 現相하고 甘露가 내렸다 … 사리 분신이 수백 개였는데, 곧 그 사리를 含元殿에 공양하였고, 또 분신이 수십 매였다. 이와 같이 기이한 상서는 실로 만나기가 어려운 일이므로, 다시 興福寺를 세워서 圓覺寺로 삼고자 한다.[323]

라고 하여, 세조는 원각사 창건이 효령대군의 法會에 靈應한 祥瑞로 말리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효령대군은 다른 대군 및 대신들과 함께 원각사 조성도감의 도제조가 되는 등[324] 종친의 어른으로서 원각사 창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舍利分身과 如來現相과 같은 불교적 祥瑞는 세조 즉위 후 7년(1461)부터 14년(1468) 사이에 35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평가받고 있다.[325]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교 이적의 시발점인 회암사를 비롯하여 상원사, 원각사, 표훈사 등이 모두 효령대군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당시 계유정난 및 왕권에 대한 왕실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라는 상황 하에서 효령대군은 불교 이적들을 통해 세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였다.[326]

---

322) 이봉춘, 2015, 앞의 책, 민족사. p.638.
323)『世祖實錄』권33 세조 10년 5월 甲寅.
324)『世祖實錄』권33, 세조 10년 5월 乙卯.
325) 權延雄, 1993, 앞의 글, pp.206-210.
326) 인용민, 2008,「孝寧大君 李補의 佛事 活動과 그 意義」,『선문화연구』5,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초기 왕실에서 수륙재를 중시하면서 대표적인 불교의례로 자리 잡았다. 효령대군도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세종 14년(1432) 判官 吉師舜이 올린 수륙재 중지 상소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대규모 수륙재를 개최하여 三壇을 쌓아 승려 천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보시를 주었으며, 길가는 행인에게 이르기까지 음식을 대접하는 등[327] 수륙재 개최와 같은 佛事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회암사와 흥천사 불사에 참여한 승려들에게 度牒을 발급하게 하고,[328] 行乎를 불러와 大慈庵에 주석하도록 세종에게 請을 넣거나 자신의 집에 信眉를 머물게 하여 왕에게 우대받게 하는 등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높여주기도 하였으며[329] 이 과정에서 여러 승려 즉 行乎, 신미 및 비구니 師室 등과도 교류하였다.[330]

그리고 불서 간행에 있어서도 효령대군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그는 세종 연간부터 불서 간행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세종 4년(1422) 誠寧大君과 元敬王后의 명복을 위해 成抑이 발원한『妙法蓮華經』간행에 부인과 함께 大功德主로 참여하거나[331] 세종 30년(1448)에는 안평대군과 함께 발원하여『묘법연화경』의 간행을 주도하기도 하였다.[332] 특히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치한 이후, 국역불서 간행사업에서의 효령대군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국역불서 중『大佛頂首楞嚴經』,『禪宗永嘉集』,『金剛般若波羅密經』,『般若波羅密多心經』,『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등의 간행에 번역 및 교역의 역할로 깊이 관여하였다. 먼저 세조 8년(1462) 간행된『대불정수능엄경』국역본 권10의 권말에는 世祖가 직접 쓴 御製跋이 수록되어 있는

---

pp.53-54.

327)『世宗實錄』권55, 세종 14년 2월 癸卯.

328)『世宗實錄』권3, 세종 11년 2월 己卯, 辛巳.

329)『世宗實錄』권85, 세종 21년 4월 戊戌 ;『文宗實錄』권1, 문종 즉위년 4월 己卯 ;『文宗實錄』권2, 즉위년 7월 辛亥 ;『文宗實錄』권8, 1년 6월 戊子.

330)『世宗實錄』권94, 세종 23년 윤11월 丁亥 ;『世宗實錄』권112, 세종 28년 4월 庚申.

331)『妙法蓮華經』(大慈庵 板本) 卷5-7,「發願」.

332) 朴桃花, 1997,『朝鮮 前半期 佛經版畵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81.
『법화경』끝부분에는 안평대군의 手書 3매, 成均生員 梁尹孫의 跋文 1매에 이어 효령대군과 안평대군, 永興大君, 瑞原君, 樂安君, 永川君, 留守 安碩德을 비롯한 大臣과 昭月軒 定菴 등 발원자 15인과 刻手, 木手, 爐冶匠, 化主 등 소임자 명단, 일반 시주자 50인의 명단 등이 적힌 刊記가 덧붙여져 있다.

데, 이에 따르면 세종 31년(1449) 세종의 명으로 세조가 번역을 시작하였으나 어려워 미루다가 세조 6년(1460) 5월 효령대군이 양주 檜巖寺에서 佛事를 하다가 釋迦分身舍利를 進上하여 이를 계기로 효령대군이 楞嚴經과 永嘉集의 飜譯을 청하여 승려와 유학자들을 동원하여 완성하고 찍어내었다.[333] 또한 세조 10년(1464) 간행된 『선종영가집』 국역본에는 孝寧大君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세조가 친히 口訣을 하였고, 신미 등의 승려와 함께 효령대군이 국역 및 교정작업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 10년(1464) 간행된 『금강반야바라밀경』 국역본에서도 효령대군이 교정작업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同年 간행된 『반야바라밀다심경』 국역본의 발문에서는 세조가 정음으로 구결을 달고, 효령대군 등에 명하여 번역하게 하였으며, 효령대군이 승려들과 함께 자세히 교감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세조 11년(1465) 간행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국역본은 원각사 창건과 때를 같이하여 세조가 구결을 정하고 효령대군 등이 함께 국역 및 교정작업을 거쳐 완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334] 이를 통해 보면 간경도감의 국역불서 간행과정에서 효령대군이 기여한 바가 매우 컸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경도감 참여한 왕실 측 인물 중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 桂陽君 李瑈을 들 수 있다. 그는 세종의 庶子로 字는 顯之, 諱는 瑈이며 諡號는 忠昭이다. 그의 어머니는 세종의 후궁인 愼嬪金氏이며, 부인은 좌의정 韓確의 딸이다. 그는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癸酉靖難을 도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공으로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에 올랐다.[335] 세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李瑈은 세조의 측근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서적의 간행에 관여하였다. 세조 3년(1457) 세조가 대장경을 印經할 당시 李瑈에게 명하여 承政院에 전지하기를, “大藏經 50벌을 찍을 종이 40만 6천 2백 권을, 각 도에 나누어 諭示하여 漢麻을 쓰고 楮皮과 섞어서 製造하여 바치게 하라.”고 하였다.[336] 또한 藝文館에서 관리들을 모아 梁誠之를 提調로 삼아 書籍을 간행하게 하였는데, 이때 李瑈에게 考閱을 담당하게 하였다.[337] 그리고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333) 『大佛頂首楞嚴經』 국역본 권10, 御製跋
334) 『世祖實錄』 권33, 세조 11년 3월 丙辰.
335) 『世祖實錄』 권2, 세조 1년 9월 丁丑.
336) 『世祖實錄』 권8, 세조 3년 6월 壬子.

간행된 『대불정수능엄경』의 卷首에는 그가 쓴 進首楞嚴經箋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이 책의 雕造官 列銜에 의하면, 李瑨은 尹師路, 黃守身 등과 함께 간경도감의 都提調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병을 얻어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세조 10년(1464) 8월 16일 사망하고 말았다.[338]

『세조실록』 계양군 이증의 졸기에 따르면, 그에 대한 부왕의 총애가 지극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했다고 하였지만[339]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그가 불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는 실록 및 현재 남아 있는 여타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즉 韓明澮처럼 단순히 세조의 측근으로서 간경도감 도제조에 역임된 것인지 아니면 金守溫처럼 호불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왕실 측 인물로, 간경도감의 도제조를 역임한 유일한 경우로서 간경도감 초창기 활동과정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대불정수능엄경』 국역본의 御製跋에는 이 책의 국역 과정 및 교정이 어떠한 절차 및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또한 각각의 단계는 누가 담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340] 그 내용을 살펴보면

> 上이 입겨출ᄃᆞ르샤 慧覺尊者ᄭᅴ마ᄀᆡ와시ᄂᆞᆯ 貞嬪韓氏等이 唱準ᄒᆞ야ᄂᆞᆯ 工曹參判臣韓繼禧前尙州牧使臣金守溫ᄋᆞᆫ 飜譯ᄒᆞ고 議政府檢詳臣朴楗 護軍臣尹弼商 世子文學臣盧思愼 吏曹佐郎臣鄭孝常은 相考ᄒᆞ고 永順君臣溥ᄂᆞᆫ 例一定ᄒᆞ고 司贍寺臣曺變安 監察臣趙祉ᄂᆞᆫ 國韻ᄊᆞ고 慧覺尊子信眉入選思智 學悅 學祖ᄂᆞᆫ 飜譯正히온 後에 御覽ᄒᆞ샤 一定커시ᄂᆞᆯ 典言曺氏豆大ᄂᆞᆫ 御前에 飜譯 닑ᄉᆞ오니라[341]

라고 하여, 왕실 측 인물로는 세조를 제외하고 貞嬪韓氏와 永順君 臣溥

---

337) 『世祖實錄』 권27. 세조 8년 1월 癸亥.
338) 『世祖實錄』 권34, 세조 10년 8월 丁酉.
339) 『世祖實錄』 권34, 세조 10년 8월 丁酉.
340) 이에 대해서는 Ⅳ. 간경도감의 불서간행 3) 간경도감의 국역불서 간행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341) 『능엄경국역』 권10, 御製跋.

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貞嬪韓氏는 昭惠王后(仁粹大妃)를 일컫는 것이며, 唱準는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함을 뜻한다. 그녀는 서원부원군 韓確의 딸로 세조 1년(1455) 세조의 장남인 懿敬世子와 혼인하였으며, 그녀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을 때는 원래 '貞嬪'이었으나 元敬王后 閔氏의 칭호도 '정빈'이었기에 세조가 '粹嬪'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342] 2년 뒤인 세조 3년(1457) 세자가 요절하여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인 者乙山君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다시 궁궐로 돌아와 휘호를 仁粹王妃로 하여 예종의 비인 安順王后보다는 높은 位次를 받았다. 그리고 2년 뒤 그녀는 남편이 德宗으로 추존됨에 따라 德宗妃가 되었다.[343] 위에서 언급한 『대불정수능엄경』 국역본의 御製跋 기록을 보면 간경도감이 설치된 초기부터 세조가 국역불서 간행사업에 소혜왕후를 직접 참여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불정수능엄경』 이외의 국역 불서에서는 소혜왕후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종 2년(1471) 간경도감의 폐지 이후 그녀가 국역불서 간행을 주도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여러 불서의 국역작업에도 그녀가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불정수능엄경』 국역본의 御製跋에서 언급된 永順君 李溥는 세종의 손자로, 부친은 廣平大君이며, 모친은 좌의정 申自守의 딸인 永嘉府夫人 申氏였다. 영순군은 세종 26년(1444)에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난 지 6개월만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세종이 이를 불쌍히 여겨 문종과 세조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나중에 지금 나의 뜻을 받들어 한결같이 보살피도록 하라." 하였다.[344] 이러한 유지에 따라 문종 원년 문종이 그를 嘉德大夫에 제수하고 永順에 봉하였고,[345] 세조 5년(1459) 세조는 그에게 興祿大夫를 제수하는 등 여러 임금의 사랑을 받아 중대한 일을 맡고 임금을 보좌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조는 그를 곁에 두고 政院에서 출납하는 문서와 各司에서 조사하여 밝힌 일을 그에게 참관토록 하였는데,[346] 국역불서의 간행과정에도 그를 참여시켜 例를 정하

342) 『世祖實錄』 권36, 세조 11년 7월 壬申.
343) 『成宗實錄』 권2, 성종 1년 1월 丁酉.
344) 『國朝人物考』권5 國戚.
345) 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6일 병오 5번째기사

는 등의 국역 및 교정작업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조 13년(1467) 李施愛의 난 토벌에 참여한 공으로 精忠敵愾功臣 칭호를 받고 顯祿大夫로 품계가 올랐으며, 예종 원년(1469) 南怡의 역모사건 진압에 참여한 공으로 保社定難翊戴功臣의 칭호를 더하였다. 성종이 즉위한 후에는 세조조의 예에 따라 庶政의 출납을 맡기고 아울러 經國大典의 수찬을 감독하게 하였지만 성종 원년(1470) 2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경도감은 세조의 강력한 의지로 바탕으로 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억불정책이 시행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신들의 반발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서국역을 추진함에 있어, 불교에 우호적인 왕실 측 인물들을 적극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로 효령대군 등이 불서 국역의 기획과 진행 등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346) 『國朝人物考』권5 國戚.

2) 사대부 관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조는 宗親, 勳臣, 戚臣으로 이루어진 측근 세력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정국을 운영하였고, 당시 왕권의 안정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데 그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세조때 설치되었던 여러 도감들에서 이들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간경도감의 경우도 역시 都提調, 提調 등을 비롯한 인적 구성에서 이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간경도감 참여 유신의 공신 책봉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간경도감 참여 사대부 관료의 공신 책봉 내역

	靖難功臣	佐翼功臣	敵愾功臣	佐理功臣
桂陽君瑈				
尹師路		1		
黃守身		3		
韓明澮	1	1		1
朴元亨		3		
金漑				
曹錫文		3	1	1
尹子雲		3		1
李克堪		3		
金守溫				4
金國光			2	
權瑊		3		1
元孝然		3		
成任				
韓繼禧				2
鄭孝常				3
洪應				3
李文炯				
盧思愼				
姜希孟				3
尹贊				
趙祉				
具致寬		3		

이를 통해 보면 공신으로 책봉된 세조의 측근 인물들이 都提調, 提調

등 도감의 고위직을 맡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세조 2년(1456) 端宗의 복위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이 혁파한 이후에 세조는 이들 인적자원을 불서간행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간경도감 人事의 변천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7]

347) 박광헌, 2017, 앞의 논문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표 8> 간경도감 人事의 변천

	세조 8년 (1462)	세조 9년 (1463)	세조 10년 (1464)	세조 11년 (1465)	세조 12년 (1466)	예종 1년(1469)	성종 2년 (1471)	성종 6년 (1475)	품계와 직제	
桂陽君 瑈	○								정1품	都提調
尹師路	○	○								
黃守身	○	○	○	○						
韓明澮							○			
朴元亨	○	○	○	○					종1품	提調
金漑							○			
曹錫文	○	○	○						정2품	
尹子雲	○	○	○	○			都提調(정1품)에 역임			
李克堪	○									
金守溫		○	○	○		○	都提調(정1품)에 역임			
金國光				○						
權璄							○			
元孝然	○	○	○	○					종2품	
成任	○	○	○	○						
韓繼禧	○	○	○	○			提調(종1품)에 역임	○		
鄭孝常							○			
具致寬					○			○		
洪應	○								정3품	副提調
李文炯	○									
盧思愼	○	○	○	○			提調로 승진			
姜希孟	○	提調(종2품)에 역임	提調(종2품)에 역임	提調(종2품)에 역임			提調(종1품)에 역임			
尹贇	○	○	○	○			提調(종2품)에 역임			
趙祉							○			

<표 8>에 나타난 인물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간경도감 설치 초기인 세조 8년(1462)에는 수양대군의 세력에 가담하여 세조의 즉위를 도운 桂陽君 李瑈, 尹師路, 黃守身에게 都提調를 맡겼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들 중 계양군 증은 세조 10년(1464)에 사망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尹師路의 경우, 세종의 딸인 貞顯翁主와 결혼하여 왕실의 인척이 되고 세조의 측근세력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역시 세조 9년(1463) 일찍 사망하였다. 黃守身도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워 좌익공신에 책록되는 등 세조의 측근세력으로서, 간경도감 설치 초기부터 세조 13년(1467)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도제조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 12년(1466)부터 성종 원년(1470)까지는 실록의 일부 기사 이외에는 직제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이를 알 수 없지만, 성종 2년(1471) 세워진 「원각사비」에 수록된 명단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간경도감의 도제조는 韓明澮, 尹子雲, 金守溫이 맡았는데, 한명회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세조에게 "나의 張良"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그의 최측근으로, 세조 즉위 이래 성종조까지 고관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예종이 죽은 뒤에는 院相으로서 국정을 좌우하였다. 尹子雲도 계유정난 당시 수양대군을 도운 공로로 推忠左翼功臣이 되었고, 이후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한명회 등과 함께 院相으로서 국정을 이끌했던 인물이다. 김수온의 경우는 앞서 서술한 도제조들과는 다르게 佛心이 매우 깊었던 인물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간경도감의 提調를 맡았던 인물들도 都提調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가 많았는데, 간경도감 설치 초기부터 提調를 맡았던 朴元亨은 세조가 즉위한 후 좌익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고관 요직을 역임한 후 예종 때 익대공신 2등에 책록되고 영의정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와 함께 도감 설치 초기부터 提調를 맡았던 曹錫文의 경우도 역시 세조가 즉위한 후 좌익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이후 여러 요직을 역임한 후 영의정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들 외에도 提調를 맡았던 李克堪, 元孝然, 權瑊, 洪應 등 모두 세조시기 공신에 책록되고 고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로 대부분 세조의 집권 기간 중 측근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결국 **都提調**와 提調을 역임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세조의 측근들로서 왕권의 안정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348] 그리고 세조가 강력한 왕권의 행사를 통해 이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서를 간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해 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세조의 측근으로서 간경도감에 참여한 유신들이 과연 불교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국가의 재정을 대량 소비하는 불서의 간행에 찬성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세조 사후 간경도감의 혁파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데, 당시 간경도감을 혁파해야 된다는 사간원 등의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신뿐만 아니라 간경도감의 도제조나 제조 등을 역임했던 한명회나 조석문 같은 인물들도 혁파에 찬성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다.[349] 이는 간경도감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세조가 죽은 후 3년만에 간경도감이 혁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신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숭불성향을 견지하고 간경도감에서 불서가 간행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수행했던 김수온과 한계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金守溫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신봉하였으며 김수온의 모친과 형수도 여승이 되었으며, 중형 金守經도 두터운 불교신앙을 갖고 있었다. 특히 김수온의 큰 형인 信眉는 출가하여 유명한 고승이 되었으며 김수온 역시 불경을 읽어서 그 뜻을 얻게 되면, 大學과 中庸은 찌꺼기에 불과하다[350]고 할 정도로 大學·中庸의 儒學思想보다 華嚴經·法華經·楞嚴經의 불교사상을 더 비중 있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친인 金訓의 죄는 김수온가를 몰락하게 하였다. 김수온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김수온과 신미의 숭불활약은 가문을 다시 번창하게 만들었으며, 金守溫家는 조선초기 불교의 盛衰와 더불어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351]

김수온의 卒記에 “登俊試에서 장원을 한 김수온을 위해 세조는 김수온

---

348) 한편, 한계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지만 세조대 불사를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349)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9월 丁卯 ; 『成宗實錄』 권5, 성종 1년 5월 庚辰 ; 『成宗實錄』 권6, 성종 1년 7월 癸卯.
한편, 도감의 혁파에 대해서, 일부 유신 즉 김수온, 한계희 등만이 반대했음을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0) 『世宗實錄』 권126, 세종 31년 11월 丁丑.

351) 조윤호, 2004, 「조선전기 김수온가의 불교신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p.70.

의 집이 가난하다 하여, 司饔院과 여러 官司를 시켜 慶宴을 준비하게 하고, 議政府의 여러 정승들에게 명하여 宮醞을 가져가서 押宴하게 하고, 또 중사를 보내어 犀帶·錦囊·羅·綺·의복·靴·帽 따위의 물건 40여 件과 鞍馬와 쌀 10碩을 내렸다. 우리 조정에서 科擧를 설치한 이래로 급제의 영광에 이런 전례가 없었으며, 文科·武科의 壯元에게 쌀을 내리는 것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352]라는 기록을 통해 세조가 김수온을 특별대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대우는 단순히 그의 형 신미의 위상이 높아서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김수온은 世宗朝에 집현전에서 『治平要覽』의 修撰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집현전의 儒臣을 대상으로 詩文을 짓게 하면 여러 번 장원을 차지하였으며, 世祖朝에도 拔英試, 登俊試 등에 장원으로 入格하는 등 그의 문장 솜씨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문신 李承召(1422~1484)의 시문집인 三灘集의 서문에는 四佳徐居正, 乖崖金守溫, 私淑齋姜希孟 등을 大手로 칭하였으며, 이들의 세 大家詩文은 모두 관청에서 印刊하고 세상에 유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석가 일대기의 追遠을 통해 소헌왕후를 追福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는 釋迦譜를 중수하게 되는데 석가보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기초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양대군과 자연히 더욱 긴밀해졌다. 또한 세종대 內佛堂 慶讚佛事에서 신미와 더불어 김수온은 '三佛禮懺文'을 제작하거나 '音聲供養' 불사를 진행하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하였다.

世宗 31年(1449) 1월 5일에는 그를 守兵曹正郎으로 삼았는데, "그의 형인 신미 때문에 특별히 政曹에 제수하기를 명하였다."[353]고 하여 김수온의 출세에 信眉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조대에는 대대적 간경불사가 이루어졌으며, 세조 초기부터 의경세자의 추복을 위한 印經佛事가 설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수온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涵虛堂의 金剛經說宜를 禪宗永嘉集에 편입시키고, 證道歌 3인의 註를 각각 합하여 한 책으로 만들는 등 간경도감의 불서 국역 사업에서 핵심적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

352) 『成宗實錄』 권130, 성종 12년 6월 7일 庚戌.
353) 『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1월 丙戌.

성종 2년(1471)부터는 대신들로부터 김수온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그해 12월 5일 간경도감이 혁파된 이후로는 김수온의 권력은 서서히 힘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 成宗 7年(1476)에 이르러서는 처벌과 파직을 요구하는 상소가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나 성종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10월 26일 김수온은 불법적 토지 점탈에 대해 추국을 당하게 되었으며,[354] 다음해 1월 2일에는 직접 辭職上書를 올리기에 이르렀고,[355] 성종은 끝내 사직을 윤허하지 않아 대신들과 김수온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김수온은 성종 12년(1481) 4월 24일에 輔國崇祿大夫에 올랐으며,[356] 그 해 6월 7일에 7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다음으로 한계희의 자는 子順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그의 집안은 조선 초기의 명문 거족으로서 그의 조부는 開國功臣으로 영의정을 지낸 韓尙敬이며 부친은 咸吉道觀察黜陟使를 지낸 韓惠이다. 또한 그는 한명회와 6촌 관계이며 그의 형인 西原府院君 韓繼美의 부인은 貞熹王后의 동생으로 왕실의 인척이기도 하였다.[357] 그의 모친은 昌寧成氏로, 成達生의 딸이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은 그의 벼슬길에 큰 힘이 되었고, 잠저시절부터 그의 학문과 인품을 인정한 세조가 즉위한 후 그의 신임을 받아[358] 인순부윤, 이조판서, 중추부사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 예종이 즉위한 후, 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推忠定難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西平君에 봉해졌으며, 성종 2년(1471)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좌찬성에 이르렀다.[359] 성종 13년(1482) 사망하였으며 성종은 극진한 예우로 장사토록 하고 文靖의 시호를 내렸다.[360]

그는 文名이 높아 세조의 명으로 『國朝寶鑑』, 『經國大典』, 『東國通鑑』, 『易學啓蒙要解』, 『醫方類聚』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蠶書의 국역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간경도감의 提調로서 불서를 국역하는 작업에도

354) 『成宗實錄』 권72, 성종 7년 10월 丙申.
355) 『成宗實錄』 권75, 성종 8년 1월 庚子
356) 『成宗實錄』 권128, 성종 12년 4월 戊辰.
357) 한충희, 1995, 「朝鮮初期 淸州韓氏 永矸系 家系硏究」, 『啓明史學』6, pp.3-4.
358) 『성종실록』에도 세조가 문종에게 "한계희가 經書에 밝고 처신을 잘하여 당대에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359) 『成宗實錄』 권10, 성종 2년 4월 丙寅.
360) 『國朝人物考』 권12 卿宰.

참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대불정수능엄경』국역본의 御製跋 기록을 통해서도 정음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계희와 김수온이 맡았음을 알 수 있으며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대부분의 국역불서에는 그의 이름이 확인된다. 즉『大佛頂首楞嚴經』,『妙法蓮華經』,『金剛般若波羅密經』,『般若波羅密多心經』,『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국역작업에 참여하였고『반야바라밀다심경』국역본의 발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한계희는 김수온과 더불어 간경도감의 국역불서 편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3) 승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려의 존재는 불서를 간행하고 국역하는 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간경도감이 설치되기 이전인 세조 3년(1457) 9월 懿敬世子가 요절하자 세조는 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서사하고 유신과 승려들로 하여금 편집과 교감, 서사와 인출 등의 불사를 추진케 하였다. 이때 인출한『永嘉玄覺大師證道歌』의 발문에는 세조의 御製跋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 慧覺尊者 信眉, 演慶寺住持 弘濬 등으로 하여금 涵虛堂의 金剛經說義를 校定하여 (金剛經)五家解에 넣어 한 책을 이루게 하였으며, 또한 永嘉集의 여러 본의 異同을 校定케 하였다. 또한 僉知中樞院事 金守溫과 함께 涵虛堂의 (金剛經)說義를 永嘉集에 넣고[361]

라고 하여 교감 및 교정 작업에 있어서 승려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조 4년(1458) 해인사에 소장된 재조대장경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불사에 있어서도 종실 및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信眉, 守眉, 學祖, 해인사 주지 竹軒 등과 같은 고승들도 참여하였다.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사업에 있어서도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선종영가집』국역본에 의하면 세조가 국역 작업을 하면서 유신들이 불교적 지식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승려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유신들과 토론을 시키기도 하였다.[362] 이는 宗室 및 고위 관료들와 더불어 僧階를 받은 고승들이 인경불사의 수행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이원적인 협조 체제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된『대불정수능엄경』국역본의 御製跋에는 국역 과정 및 교정이 어떠한 절차 및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또한 각각의 단계는 누가 담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363] 이 중 두번째 단계는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확인하는 과

---

361)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所, 李朝前期佛書展觀目錄, p.50, 永嘉玄覺大師證道歌註解, 初鑄甲寅字本.
362)『禪宗永嘉集』국역본, 箋文
363)『大佛頂首楞嚴經』국역본 권10, 御製跋.

정인데 이는 신미가 담당하고, 여덟 번째 단계는 잘못된 번역을 고친다는 과정인데 이는 신미, 思智, 學悅, 學祖가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신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신미의 출생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金守溫의 출생 연대를 참고하면 太宗 3년(1403)경으로 추정된다.[364] 信眉는 고향에서 멀지 않은 속리산 法住寺로 출가하였다.[365] 그는 법주사에 출가하여 沙彌時節에 守眉와 함께 大藏經을 읽고 戒律을 익혔다고 한다. 즉, 守眉의 「道岬寺妙覺和尙碑」에는 "수미는 13세에 月出山 道岬寺로 출가하여 20세에 具足戒를 받고, 그 후 속리산 법주사로 가서 신미를 만났는데, 同歲同名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다. 대장경을 읽고 계율을 익혔다."라고 하였다.

世宗이 신미를 알게 된 것은 세종 28년(1446)부터라고 한다.[366] 金守溫의 「福泉寺御製後記」에는 처음에 세종이 신미의 이름을 듣고 산으로부터 불렀는데, 신미가 이르자 자리를 내어주고 조용히 이야기하니 말이 신속하고 義理가 정밀하게 드러났으며, 신미가 대답하여 아뢰는 것이 세종의 뜻에 맞으니 이로부터 寵遇가 날로 높아졌다고 하였다.[367]

세종 28년(1446) 3월에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5월에는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首陽·安平大君의 감독하에 李永瑞와 姜希顔 등이 誠寧大君의 집에서 금을 녹여 經을 쓰는 寫經이 완성되자 大君과 諸君이 모두 참석하고, 2,000여 명의 승려들이 참여하는 法席을 7일간 열고, 승도로 하여금 經을 大慈庵으로 옮겼다.[368] 實錄에는 이 기사에 신미에 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신미도 이 法會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369]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信眉를 敬愛하였는데, "守溫의 형이 出家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信眉라고 하였는데 首陽大君 李瑈와 安平大君 李瑢이 열심히 믿고 좋아하여, 信眉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 꿇어

364) 이숭녕, 1986,「신미의 역경사업에 관한 연구」,『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25, p.4.
365)『文宗實錄』권2, 문종 즉위년 7월 丁巳.
366)『文宗實錄』권1, 문종 즉위년 4월 己卯.
367)『拭疣集』권2,「福泉寺御製後記」
368)『世宗實錄』권112, 세종 28년 5월 甲午.
369) 민덕식, 2010,「慧覺尊者 信眉의 家系와 生涯」,『忠北史學』24, p.63.

앞에서 절하여 예절을 다하여 공양하고 守溫도 또한 부처에게 아첨하여 매양 大君들을 따라 절에 가서 불경을 열람하며 합장하고 공경하여 읽으니, 士林에서 모두 웃었다."[370]는 실록의 기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세종 30년(1448) 9월 8일 실록기사에는 "信眉가 僧道를 만들어 꾸며 임금께 총애를 얻었는데 守溫이 좌우를 夤緣하여 首陽과 安平 두 대군과 결탁해서 佛書를 번역하였다."[371]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信眉는 세종 시절부터 총애를 받았으며 김수온을 통하여 世祖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佛書의 번역작업에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간경도감의 국역본을 간행하는 시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文宗 즉위년(1450) 7월 6일에 信眉는 '禪敎宗都摠攝密傳正法悲智雙運祐國利世圓融無碍慧覺尊者'의 칭호를 받았는데 國朝이래로 이러한 僧職이 없었다고 한다.[372] 이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관교의 부당함을 상소하고,[373] 儒臣들도 들고 일어났다. 朴彭年의 경우 신미의 尊號에 극렬히 반대하였고 告身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다. 결국 다음달 7일에 '大曹溪禪敎宗都總攝密傳正法承揚祖道體用一如悲智雙運度生利物圓融無.惠覺宗師'로 칭호를 고쳐 받게 된다.[374] 이는 당시 불교계가 처해 있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유신들의 요구에 따라 祐國利世를 度生利物로, 尊者를 宗師로 바꾼 것이다. 신미의 慧覺尊者라는 존호는 세조 때에 가서야 사용되었다.[375]

수양대군이 단종의 禪位를 받아 즉위한 후, 세조 3년(1457) 世祖가 해인사에 있던 대장경 50부를 간행하고자 했을 때 信眉도 이에 관여하였으며, 세조 4년(1458) 9월에는『禪宗永嘉集』의 간행에 참여하였다.[376]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이 설치된 후 신미는 蒙山和尙法語略錄,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禪宗永嘉集, 牧牛子修心訣, 法語 등의 간행과 국역에 참여하였다. 비록 信眉는 간경도

370)『世宗實錄』권116, 세종 29년 6월 丙寅.
371)『世宗實錄』권121, 세종 30년 8월 辛酉.
372)『文宗實錄』권2, 문종 즉위년 7월 戊申.
373)『文宗實錄』권2, 문종 즉위년 7월 庚申·戊午.
374)『文宗實錄』권3, 문종 즉위년 8월 戊寅.
375)『世祖實錄』권32, 세조 10년 3월 戊辰 ;『世祖實錄』권44, 세조 13년 11월 戊子.
376) 민덕식, 2010, 위의 논문, p.73.

감의 관직을 받은 신하는 아니지만 세조의 측근으로서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世祖朝에는 신미와 더불어 信眉의 道伴인 守眉와 제자인 學祖와 學悅 등은 크게 위세를 키워 갔으며, 守眉, 學悅, 學祖는 三和尙[377]이라고 불렸다. 신미는 學悅, 學祖와 서로 결탁하여 위력 있는 福을 베푸니 勳戚과 士庶人이 많이 의지하였다[378]는 실록의 기사를 통해 三和尙은 훈척과 사대부들이 의지할 정도의 높은 권력과 지위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학열은 신미의 문도로서 幹事를 잘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端宗實錄』에 의하면 신미에 버금가는 고승이었다고 한다.[379] 그는 스승인 신미와 도반인 학조와 더불어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세조 13년(1467) 세조의 명으로 낙산사의 중수를 도맡았고 오대산 상원사를 중창했다. 그리고 그의 도반인 학조와 더불어 奉先寺를 중창하고 세조 4년(1458)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에 참여하였다.[380] 세조 8년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大佛頂首楞嚴經』 御製跋에서 알 수 있듯이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생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입적 시기는 기문에 의하면 성종 13년(1482년)으로 추정된다.[381]

학조의 경우 신미의 문도로서 세조, 자성대비, 인수대비 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의 행적을 간략히 보면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사업에 참여했으며, 세조 10년(1464) 속리산 福泉寺에서 세조를 모시고 신미·학열 등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으며, 세조 13년(1467) 왕명으로 금강산 楡岾寺를 중창하였다.[382] 간경도감이 폐지된 이후에는 왕실 여성들의 명을 받아 많은 불서를 간행하였는데, 성종 13년(1482) 자성대비의 명을 받아 『金剛經三家解』 국역본과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국역본을 편찬하고, 성종 16년(1485) 인수대비의 명을 받아 『五大眞言』 국역본을 편찬하였다. 이 외에도 『六經合部』, 『禮念彌陀道場懺法』 등 많은 불서의 간행 및 인출작업에 참여하였다.[383]

---

377) 『成宗實錄』 권161, 성종 14년 12월 戊子.
378) 『世祖實錄』 권45, 세조 14년 1월 甲申.
379) 『端宗實錄』 권1, 단종 즉위년 6월 甲申.
380) 曺偉 「海印寺重創記」, 『梅溪集』 권4.
381) 황인규, 2004, 「조선전기 불교계의 三和尙攷」, 『불교학연구』37, pp.221-223.
382) 『世祖實錄』 권41, 세조 13년 2월 癸丑.
383) 이 시기 승려들은 대부분 행장이나 비문 등 행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학열, 학조와 함께 『大佛頂首楞嚴經』 御製跋에서 확인되는 思智가 이러한 경우로 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없었다.

四. 간경도감의 불서간행

1. 간경도감 설치 이전의 불서간행

세조가 즉위한 이후 국왕이 주도한 불사는 크게 사찰의 후원과 불서의 간행으로 시행되었다. 사찰에 대한 후원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세조 3년(1457) 왕실 출신의 비구니 사찰인 淨業院을 부설하여 토지 100결과 노비 30구를 하사하였고, 다음해는 요절한 懿敬世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正因寺를 중창하였다. 그리고 세조 9년(1463)에는 莊義寺의 水陸社를 중지었으며, 10년(1464)에는 전라감사에게 하명하여 승려 守眉의 道岬寺 중창 불사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에 上院寺, 13년(1467)에는 楡岾寺와 洛山寺를 중창케 하였다. 그런데 세조의 사찰 지원의 백미는 세조 10년(1464) 도성 왕궁 인근에 圓覺寺를 창건한 것으로서 다음해 준공하였다. 태종대와 세종대에 연이어 추진된 억불정책은 사찰과 승려 수의 삭감, 사찰 소유 토지와 노비의 감소를 통하여 불교사원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려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불교 종파의 통폐합, 불교의식의 국가의례에서의 추방을 통하여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조대의 활발한 사찰 지원 불사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위축되어 가던 불교를 일거에 반전시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교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서 불교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불사는 불서의 간행이었다. 세조대의 불서 간행 사업은 불교 전성기인 고려중기 대각국사 의천에 의한 교장의 수집과 간행 사업에 비견될 수 있는 획기적인 불사였다. 세조의 불서 간행은 고려불교의 수준을 크게 높이었던 의천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서 사찰 지원 불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조는 불서 간행의 전문 기관으로서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서 간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불서 간행 사업은 한문불서와 국역불서 두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세조의 불서 간행은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이 설치되기 이전에도 이미 추진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서의 간행 사업은 불서의 편집, 서사, 인출, 판각, 조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세조에 의한 불서 간행은 세조 3년(1457) 9월 懿敬世子가 요절하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세조 자신이 직접 서사하는 한편 유신과 승려들로 하여금 편집과 교감, 서사와 인출 등의 불사를 추진케 하였다. 세조 3년(1457)에 初鑄甲寅字로 인출한 永嘉玄覺大師證道歌의 발문에는 세조 자신의 御製跋을 비롯하여 姜希顔, 申叔舟, 韓明澮, 曺錫文, 韓繼禧, 金守溫, 任元濬 등 8인의 중신들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특히 세조의 발문을 통해서 불서 간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존이 정법을 국왕과 대신에게 부촉하여 유통시켜 교화하도록 하였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중략) 이제 죽은 세자을 위하여 大藏經과 華嚴經을 각 한 벌, 法華經, 楞嚴經, 飜譯名義 각 100권, 地藏經과 懺法을 각 14건을 인출하였고, 法華經, 地藏經, 起信論, 梵網經, 普賢行願品을 각 1건식 寫成하여 책으로 묶게 하였다. 죽은 아들을 위해 金剛經 1건과 이어 法華經 1건을 몸소 썼다. 또한 慧覺尊者 信眉, 演慶寺住持 弘濬 등으로 하여금 涵虛堂의 金剛經說義를 校定하여 (金剛經)五家解에 넣어 한 책을 이루게 하였으며, 또한 永嘉集의 여러 본의 異同을 校定케 하였다. 또한 僉知中樞院事 金守溫과 함께 涵虛堂의 (金剛經)說義를 永嘉集에 넣고, 또 證道歌의 彦琪, 宏德, 祖庭의 주석을 합하여 한 책으로 만들어서 각각 100건식 찍어내도록 명하였다.(하략)"[384]

세조의 발문을 통해서 세조가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불사로서 다양한 불서들을 베껴 쓰거나 찍어내게 하였고, 또한 涵虛堂 得通의 金剛經說義를 편입한 金剛經五家解와 永嘉集을 새로 편집 교정본을 만들어 100벌식 대량으로 찍어내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조가 함허당 득통의 금강경설의를 특히 중시하여 금강경오가해와 영가집에 각각 편입시켜 100벌식이나 인출하게 하였던 것은 여말선초 선종계의 주류가 懶翁惠勤-無學自初-涵虛得通-慧覺信眉로 계승되고 있었던 불교계 상황을 세조가 주목하고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밖에도 세조는 3년(1457)에 姜希顔, 成任, 趙瑾, 任擇, 安惠, 安炯, 克仁

384)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所, 李朝前期佛書展觀目錄, P.50, 永嘉玄覺大師證道歌註解, 初鑄甲寅字本.

등을 동원하여 금니로 法華經을 1벌 사성케 하였는데, 법화경은 한문본으로 여러 차례 사경하고 2차례나 간행하였을 뿐만이 아니었다. 월인석보를 편찬하면서 법화경을 정음으로 번역하여 전문을 월인석보에 편입하고, 또한 뒷날 간경도감에서 한문본과 국역본을 각각 별도의 책으로도 간행하였던 것을 보아 가장 중요시되던 경전임을 알 수 있다.

세조가 즉위한 이후 간경도감 설치 이전까지 세조의 주도로 간행된 불서 가운데 현존하는 불서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다.[385]

<표 9> 세조년간 간경도감 설치 이전 간행된 불서

번호	서명	간행년	판본
1	妙法蓮華經	세조 1년(1455)	乙亥字本
2	楞嚴經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3	大乘起信論疏	세조 3년(1457)	初鑄甲寅字本
4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5	翻譯名義集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6	翻譯名義集	[세조 3년(1457)]	木版本
7	永嘉玄覺大師證道歌	[세조 3년(1457)]	初鑄甲寅字本
8	永嘉玄覺大師證道歌	세조 3년(1457)	乙亥字本
9	金剛經五家解	세조 3년(1457)	丁丑字本
10	妙法蓮華經	세조 3년(1457) 중간본	初鑄甲寅字本
11	月印釋譜	세조 5년(1459)	木版本
12	天台四敎儀集解	세조 6년(1460)	乙亥字本
13	天台四敎儀集解	세조 6년(1460)	木版本
14	楞嚴經	세조 7년(1461)	乙亥字本
15	圓覺經	세조 3~7년(1457~1461)	乙亥字本

세조1년(1455)부터 7년(1461)까지 7년 동안에 왕명에 의해 간행된 불서 가운데 현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모두 15회에 걸쳐 간행된 10종의 불서이다. 이 가운데 木版本 3종을 제외하면 모두 金屬活字本이다. 1~2회식 간행된 10종의 불서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경전으로는 법화경 2회, 능엄경 2회, 원각경 1회 간행되었으며, 경전에 대한 주석서로서는 대승기신론, 반야심경,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각 1회 간행되었다. 그리고 선

385) 곽동화, 2017,「조선 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종의 저술로서는 영가현각대사증도가 2회, 천태종의 개론서인 천태사교의에 대한 주석이 2회였는데, 이상의 법화경부터 천태사교의까지 8종의 불서는 사상과 신앙 양면에서 조선초기 불교계가 가장 중요시하던 불서로서 뒷날 간경도감에서도 한문본과 국역본으로 각각 간행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간경도감 설치 이전의 불서 간행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飜譯名義集이 2회, 月印釋譜가 1회 간행된 사실이다. 그 가운데 번역명의집은 중국 南宋의 法雲(1088~1158)이 1143년에 지은 것이다. 법운은 5세에 慈行의 彷空에게 수학하여 다음 해에 법화경을 외웠다고 하며, 9세에 출가하여 여러 곳을 찾아 도를 구하였는데, 通照에게 천태학, 천축사의 敏法師에게 화엄경을 각각 배우고 천태종 南屛淸辯의 법맥을 이었다. 1117년 松江의 大覺寺에 주석하여 普潤大師의 호를 받았다. 그리고 그 절에서 8년 동안 법화경, 금광명경, 열반경, 정명경 등을 강의하였으며, 1145년에는 蓮社會를 열고 1천여 대중을 모아 십륙관경을 강의하면서 本性唯心의 佛을 염하였고, 또 八關齋會, 금광명회, 법화회, 대비회, 원각회, 금강회를 결성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번역명의집 7권 이외에 金剛經註와 心經疏抄註가 있다. 특히 번역명의집은 여러 가지 梵名을 들어 해석한 일종의 자전이다. 1권에는 10종 通號 제1에서 僧伽衆名 제13까지, 2권에는 8部 제14에서 時分 제24까지, 3권에는 帝王 제25에는 顯色 제38까지, 4권에는 總明三藏 제39에서 衆善行法 제48까지, 5권에는 三德秘藏 제49에서 半滿書籍 제54까지, 6권에는 唐梵字體 제55에서 陰界入法 제58까지, 7권에는 寺塔壇幢 제59에서 統論二諦 제64까지의 여러 編을 수록, 최후에 續補라 하여 明行足으로 刹摩에 이르는 수십 항목을 해석하였다. 뒷날 諸乘法數, 釋氏要覽과 함께 佛學三書라고 평가될 정도로 불교의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세조 3년(1457)에 乙亥字本과 木版本으로 2회나 이 책을 간행한 것은 정음으로의 불서 번역에 특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정음 번역의 예비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가진 것이다.

세조의 불서 간행은 한문 불서의 간행에 그치지 않고, 국역 간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 첫 번째 사업이 『月印釋譜』의 편찬과 간행이었다. 이 책은 세조 5년(1459) 경에 先考와 先妣, 그리고 의경세자로 책봉되었다가 죽은 桃源君 暐의 仙駕薦度를 위해 편찬 간행되었다. 이에 앞서 세

종 28년(1446)에 승하한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삭가의 일대기인 『釋譜詳節』을 편찬하였는데, 그 시기는 세종 29년(1447) 7월에 시작하여 31년(1449)에 완성되고, 이어 정음으로 번역하여 최초의 국역불서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세종은 이 책을 보고 석가세존의 일대를 국한문의 악장체로 칭송한 『月印千江之曲』을 지었는데, 세조가 이 두 책을 저본으로 하고 硏精添削을 가하여 『月印釋譜』로 간행하였다. 그러므로 세조 5년(1459) 경에 간행된 『월인석보』는 앞의 두 책에 근거하여 그 체제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주석으로 하여 이루어진 체제였지만, 夾註細文을 붙이고 국역을 새롭게 하는 등 새로운 내용의 첨삭과 직역 위주의 번역으로의 수정을 가한 결과 단순한 합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른 성격의 별도 저술로 평가된다. 그런데 『월인석보』는 『석보상절』의 체제와 편찬의 방식을 계승하여 석가세존의 일대기를 정리한 저술이면서도 『釋迦譜』·『釋迦氏譜』·『傳法正宗記』·『佛祖統紀』 등의 석가의 전기나 불교사 자료 이외에 『佛說觀佛三昧海經』·『阿彌陀經』·『無量壽經』·『觀無量壽經』·『藥師經』·『地藏經』』·『大方便佛報恩經』·『大雲輪請雨經』·『法華經』·『目連經』·『盂蘭盆經』 등 석가의 일대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대승경전과 僞經을 전역하여 삽입함으로서 독특한 부처의 전기가 되었는데, 이들 경전들은 이후 간경도감에서 간행하는 국역본의 경전들과 함께 비교 검토하여야 할 과제이다.

최초의 국역불서인 『석보상절』은 전체 24권 가운데 권3·6·9·11·13·19·20·21·23·24의 10권만이 현재 전하고 있다.[386] 그리고 『월인석보』는 전체 25권 가운데 권3·5·6·16·24를 제외한 20권이 전하고 있다.[387]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현전본 가운데는 그 저경과 내용이 유사한 권차가 다수 보이고 있는데,[388] 저경과 내용이 대응되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통해, 『석보상절』에서 『월인석보』로 합편되는 구체

386) 10권의 현전본 중, 권3과 권11은 16세기 중엽의 복각본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간본이다. 그리고 권6·9·13·19는 중간본의 간행을 위한 교정본이다.

387) 이중, 초간본은 권1·2·7·8·9·10·11·12·13·14·15·17·18·19·20·23·25의 17권이고, 복각본은 권1·2·4·7·8·17·21·22·23의 9권이다. 초간본과 복각본이 모두 전하는 『월인석보』는 권1·2·7·8·17·23의 6권이 된다.

388) 『석보상절』권9와 『월인석보』권9, 『석보상절』권11과 『월인석보』권21, 『석보상절』권24와 『월인석보』권25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각각의 편찬방식 및 저본의 성격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389] 『석보상절』의 저본은 그 성격상, 크게 불서·대승경전·사전·논서·위경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서과 대승경전이 저본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위경인 『안락국태자경』과 『목련경』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90]

『석가보』는 중심저본으로써 석가의 전생부터 아육왕의 불법 홍포에 이르기까지 『석보상절』의 전체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부처의 전기자료인 『중본기경』·『보요경』 뿐만 아니라 대승경전인 『대방편불보은경』·『관불삼매해경』·『미증유인연경』, 그리고 사전인 『아육왕전』·『블조통기』 등의 저본들이 『석가보』의 출전이라는 점에서, 『석보상절』에서 차지하는 『석가보』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석가보』와 함께 『석보상절』 저본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대승경전은, 그 내용 및 성격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법화경』은 교리·신앙의 측면에서 모두 숭앙되는 대표적인 대승경전이고, 『아미타경』·『관무량수경』·『약사경』·『지장경』은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대중들에게 널리 신봉되는 경전들이며, 『관불삼매해경』·『대운륜청우경』은 밀교적 성격의 경전이다. 그리고 『대방편불보은경』은 윤리적인 성격, 『미증유인연경』·『대반열반경후분』은 史傳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석가보』·『법화경』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방편불보은경』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報恩'에 관한 이야기와 교설로 되어 있다. 『석보상절』 권11과 『월인석보』 권21에 수록된 논의품 제5와 악우품 제6은 석가가 전생에 중생에게 보시하고 부모께 효도한 이야기를 통해 석가가 성불한 이유가 보시와 효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보은의 중요성과 방법을 강조·제시하고 있는 불서들이 『석보상절』에서 큰 비중으로 수록되었다는 점은, 『석보상절』의 주된 관심이 윤리

---

389) 김기종, 2018, 「조선시대 국역불서의 편찬과 성격」, 『동아시아불교문화』34, p.131.

390) 김기종, 2019, 「석보상절의 저본과 그 성격」, 『남도문화연구』38 참조
저경 목록 - 『석가보』, 『석가씨보』, 『불본행집경』, 『중본기경』, 『태자수대나경』, 『석가여래성도기주』, 『과거현재인과경』, 『보요경』, 『석가여래행적송』, 『대방편불보은경』, 『법화경』, 『관불삼매해경』, 『아미타경』, 『약사경』, 『관무량수경』, 『대운륜청우경』, 『지장경』, 『미증유인연경』, 『대반열반경후분』, 『아육왕전』, 『불조통기』, 『석씨통감』, 『법원주림』, 『종문연등회요』, 『파사론』, 『안락국태자경』, 『목련경』.

적인 문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보은'과 그 실천 덕목인 보시·효도·인욕 등은 불교신자로서 복덕과 공덕을 짓기 위한 방법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석보상절』의 편찬을 명한 세종과 편찬을 담당한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관심은 백성에 대한 교화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39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월인석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한 것이지만, 중심적인 줄거리는 역시 『석보상절』이다.[392] 한편, 현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석보상절』권6·9·13·19는 본문이 내용 단락에 따라 절단되어 있고, 「월인천강지곡」의 낙장이 권6과 권9의 해당 부분에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월인석보』의 편찬이 『석보상절』이 간행된 직후부터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393] 『석보상절』의 간행이 완료된 직후에 『월인석보』의 편찬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월인석보』가 석보상절』과는 다른 성격의 불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의도는, 『월인석보』가 저본을 중시하여 그 내용을 저본의 모습 그대로 옮기고 있는 점과, 번역의 양식이 직역이고 고유어보다 한자어의 비중이 큰 점 등을 통해서 독서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394] 그리고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 들어간 저본 가운데 일부, 즉 『법화경』과 『아미타경』이 세조 7년(1461)에 설치된 간경도감에서 독립적인 별책의 국역불서로 간행되었는데, 이전보다 더욱 직역 위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과정을 통해 특히 중요시된 『법화경』과 『아미타경』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세조 4년(1458)에는 해인사에 소장된 거질의 재조대장경을 무려 50벌이나 인출하여 전국의 명산대찰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고, 일본과 琉

391) 김기종, 2019, 위의 논문, pp.348-349.

392) 강순애, 월인석보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 서지학회, 2001. pp.75-82
저경 목록 - 『석가보』, 『석가씨보』, 『불본행집경』, 『중본기경』, 『석가여래성도기주』, 『석가여래행적송』, 『대방편불보은경』, 『법화경』, 『관불삼매해경』, 『아미타경』, 『약사경』, 『관무량수경』, 『대운륜청우경』, 『지장경』, 『미증유인연경』, 『대반열반경후분』, 『아육왕전』, 『불조통기』, 『석씨통감』, 『법원주림』, 『종문연등회요』, 『안락국태자경』. 『경덕전등록』. 『전법정종기』.

393)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서울: 태학사, 2001, p.39.

394) 김기종, 2018, 위의 논문, p.132.

球에도 보내줬다. 당시 대장경의 인경에 대해서는『세조실록』및 李德懋가 저술한『靑莊館全書』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청장관전서』의「海印寺藏經」은 대장경 50부을 인경하기 위한 물자의 수요 및 조달, 인경과정 및 粧冊, 봉안 등에 대한 내용과 金守溫이 지은「印成大藏經跋」, 세조가 친히 지은「菩薩戒」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395] 이 기록은 당시 인경에 소요된 물자 등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수온이 지은「인성대장경발」과 세조가 지은「보살계」에는 당시 인경 불사의 기원과 목적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선왕 및 죽은 아들 덕종의 극락왕생과 國利民福을 기원하고 일본으로 유출된 인경본을 보완할 목적으로 인경불사를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세조 3년(1457)부터 대장경 인출에 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졌으며, 세조는 경상도 관찰사와 더불어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의 관찰사에게 인경불사에 소요되는 종이, 먹 등과 같은 물적 자원을 준비하여 해인사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396] 이러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서 세조 4년(1458) 본격적인 인출 불사가 수행되었으며, 8월 10일 해인사에서 인경 불사와 관련된 법회를 개회하면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397]

세조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동원되는 대장경 인출을 위해 공적인 국가행정 조직체계를 활용하였다. 그는 경상도 관찰사와 더불어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관찰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海印寺印經敬差官을 파견하는 조치를 내렸다. 운영 형태는 승정원에서 실무를 총괄한 경상도 관찰사에게 관련 업무가 전달되고, 세속의 관료들이 불교계의 고위 僧職 고승들과 업무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운영 형태는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세조는 宗室, 측근 공신세력, 일반 관료들과 더불어 인경불사에 소요되는 종이, 먹 등도 국가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인경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이 지원되었는데, 인경에 관여한 승려의 규모는 公糧으로 공급된 인원이 7,057명이고, 私糧으로 공급된 인원이

395) 李德懋,「海印寺藏經」,『靑莊館全書』.
396)『世祖實錄』권8, 세조 3년 6월 壬子 ;『世祖實錄』권8, 세조 3년 6월 戊午.
397)『世祖實錄』권11, 세조 4년 2월 辛丑

1,485명, 총 8,542명이나 되었으며, 소요된 中米는 4,679石 6斗였다.[398]

또한 인경불사에는 상당수의 고승들과 종실 및 고위 관료들도 관여하였다. 승려인 信眉, 守眉, 學祖 및 해인사 주지 竹軒과 더불어 종실 및 관료인 桂陽君 李瑁, 鈴川府院君 尹師路, 判戶曹事 李仁孫, 成均館大司成 申叔舟, 承政院都承旨 曺錫文, 行龍驤衛攝護軍 尹贇, 行成均主簿 鄭垠 등이 인경사업의 감독을 맡았으며, 경상도 관찰사 李克培에게 전체적인 실무를 총괄하게 하였다.[399] 僧階를 받은 고승과 더불어 宗室 및 고위 관료들은 인경불사의 수행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이원적인 협조 체제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국왕인 세조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경본 50부의 인쇄가 끝난 후 세조는 전국의 다양한 주요사원에 분산하여 봉안하였다. 먼저 해인사, 흥천사, 예조 각 1부씩 안치하고 남은 47부 중에서 善本 1건을 택해 報恩의 福泉寺에 안치하였는데 이는 당시 인출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미가 중창한 사찰이며 인경작업이 끝나자 그가 돌아가 머물렀던 사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46부는 각 사찰의 승려들이 의논하여 정한 것을 왕명으로 봉안하였는데,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98) 李德懋, 「海印寺藏經」, 『靑莊館全書』.
399) 李德懋, 「海印寺藏經」, 『靑莊館全書』.

<표 10> 세조 4년 인경본의 봉안장소

지역	봉안장소	질수	지역	봉안장소	질수
합천	海印寺	3	영천	鼎鄕寺	1
한성	興天寺	1	상주	觀音寺	1
한성	禮曹	1	양주	檜巖寺	1
고령	盤龍寺	4	지평	上元寺	1
진주	白巖寺	1	순천	松廣寺	1
진주	五臺寺	1	강진	萬德寺	1
진주	七佛寺	1	영암	道岬寺	1
진주	凝石寺	1	능성	雙峯寺	1
성주	龍淵寺	1	장흥	成佛寺	1
성주	安峯寺	1	광양	玉龍寺	1
영산	普林寺	1	무장	懺堂寺	1
밀양	載岳寺	1	남원	勝蓮寺	1
안동	白蓮寺	1	해남	大芚寺	1
양산	通度寺	1	진원	下淸寺	1
양산	中方寺	1	태인	雲住寺	1
양산	大芚寺	1	무안	法泉寺	1
경주	天龍寺	1	광주	證心寺	1
경주	佛國寺	1	담양	龍泉寺	1
함양	君子寺	1	보은	福泉寺	1
의령	菩提寺	1	옥천	地勒寺	1
영천	居祖寺	1	고성	楡岾寺	1

그런데 세조 4년 9월에 전국의 명산대찰에 분산되어 봉안된 50부의 인경본 가운데 47부만 확인되었고 3부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3부는 세조 5년과 6년 및 8년의 3차례에 걸쳐 일본과 유구국(오키나와) 등지에 외교 물품으로 내려준 완질 인경본과 동일한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많은 수의 인본이 일본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수행된 인경불사의 목적과 연관지어 볼 때 그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인경은 왕실 차원의 종교적 행위와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인경 업무와 각종 전적의 간행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조선초기 태종대부터 대강경의 인출이 여러 차례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인출된 대장경 가운데 일부는 일본 무로마찌막부(室町幕府)의 요청으로 보내졌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종 11년(1411)부터 연산군 8년(1502)까지 90여년 동안에 무로마찌막부의 장군

인 아시카가씨(足利氏)에게 18회 20벌, 서국의 웅번인 大內氏에게 12벌, 對馬島의 宗氏와 琉球國에 12벌 등 합계 44벌이 賜與되었다. 그 가운데 세조대에는 2년(1456), 3년(1457), 5년(1459), 8년(1462) 등 4회 4벌이 아시카가씨(足利義政)에게 보내졌다.[400] 그러나 세조대의 대장경의 대규모 인출은 대부분이 국내의 명산 대찰들에 봉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이전 태종과 세종 때와 다르게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시책의 일환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조는 불교 부흥을 위하여 먼저 대장경을 대량으로 인출하여 각 사찰에 봉안케 하고, 이어 세조 7년(1461) 불서를 전문적으로 간행하는 기관으로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위주로 간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00) 무로마치(室町)시대 교토의 아시카가씨(足利氏)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의 권력자들(周防의 大內氏, 對馬의 宗氏, 琉球國 등)에게 朝鮮에서 보내진 대장경이 모두 44질이었던 것으로 집계되는데, 그 가운데는 宋의 思溪藏과 元의 普寧寺藏 같은 中國版의 대장경도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이 재조고려대장경이었다. 무로마찌막부의 대장경 욕구는 태종과 세종 때에 대장경을 수차 청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장경을 찍어내는 經板 전체를 보내 달라고 협박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馬場久幸, 2016, 앞의 논문, pp.153-230)

2. 간경도감의 한문불서 간행

1) 한문불서의 종류와 판본의 현존 상태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다량의 불서들을 조직적으로 간행하였는데, 한문불서를 교감하여 간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부의 불서는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조선왕조 개국 이래 왕조 개창의 주체세력인 사대부들에 의해서 불교가 이단으로 비판받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단에 대한 강력한 억불정책이 추진되어 오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간경도감이라는 특별기구의 설치와 불서의 간행은 가히 파격적인 조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변을 통해 즉위한 세조라는 강력한 왕권의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는 그 내용과 성격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율론 3장에 대한 주석서들이었다. 간경도감의 설치에 앞서 거질의 대장경을 50질이나 인출하는 대규모의 인경불사를 이어서 경율론 3장을 보완하는 의의을 가진 것이었다. 그런데 한문불서에 비해서 국역불서은 불경과 선종 관계 불서 2종으로 국한되어 한문불서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또한 불서의 국역과정에서 구결은 대부분 세조가 직접 확정하여 달았을 정도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불사였다. 이 절에서는 먼저 간경도감 간행 한문불서의 내용과 현존상태를 검토할 것이고, 국역불서의 문제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경도감 설치 이전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던 불서간행 사업이 간경도감이라는 공적 기구가 설치되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다량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의 종류는 현재 49종이 확인되는데, 간행 불서의 목록이 따로 전해지는 것이 없기 전체 간행불서의 전모는 알 수 없다. 앞으로도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새로운 불서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한문불서의 목록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401] 그런데 간행 연도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했지만, 간기가 결락된 불서들이 많기 때문에 간행 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11> 간경도감 간행 한문불서

	서명	권수(存)	저자/編者	간행연도	간행처	분류	비고
1	金剛般若經疏開玄鈔	6(3)	公哲	1461	本司	重修	1098년 興王寺(原刊記)
2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14(2)	智空	1461	本司	重修	原刊記 無
3	首楞嚴經環解刪補記	10(?)	戒環	1461	本司	重修	原刊記 無
4	金剛錍顯性錄	4(2)	智圓	1461	本司	雕造	
5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16(2)	玄範	1461-1462	本司	重修	1093년 興王寺(原刊記)
6	大乘起信論疏	3(完)	法藏	1461	本司	雕造	
7	妙法蓮華經纘述	10(4)	慧淨	1461	本司	重修	1095년 興王寺(原刊記)
8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14(完)	澄淵	1461-1463	尙州/安東	雕造	
9	大乘起信論筆削記	6(2)	子璿	1462	全州	雕造	
10	般若波羅蜜多心經疏	1(完)	法藏	1462	本司	重修	1093년 興王寺(原刊記)
11	圓覺經大疏釋義鈔	26 혹 13(1)	宗密	1462	本司	重修	1093년 興王寺(原刊記)
12	大方廣佛華嚴經合論	120(6)	李通玄	1462	全州/羅州	雕造	
13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蜜鈔	10(2)	覺苑	1462	本司	重修	原刊記 無
14	瑜伽論疏	40(2)	智周	1462	安東	雕造	
15	首楞嚴經義解	30	咸輝	1462	本司	雕造	
16	五杉練若新學備用	3(上卷零本)	應之	1462	本司	重修	原刊記 無

401)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간경도감 간행불서를 조사하고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간행본은 기존의 연구성과 즉 김두종, 1974,「간경도감의간행불서목록」,『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1974, 천혜봉, 1991,「조선전기불서판본고」,『서지학보』5 ; 강순애, 2004,「순천송광사사천왕상의복장전적고」,『서지학연구』27, 서지학회 ; 김기종, 2015,『불교와 한글』, 동국대학교 출판부 ; 조승혁, 2018,「조선 전기의 불교 전적 간행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광헌, 2017,「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진, 2020,「고려 敎藏의 고려 및 조선시대 유통과 전승」,『서지학연구』83 등을 참고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17	眞實珠集	3(完)	妙行	1462	本司	雕造	
18	地藏菩薩本願經	1(完)	實叉難陀(譯)	1462	本司	重修	原刊記 無
19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10(7)	眞觀 등	1462	本司	重修	
20	俱舍論頌疏鈔	8(完)	常眞	1462 – 1463	晋州/尙州	雕造	
21	廬山集	10(?)	慧遠	1463	本司	重修	原刊記 無
22	菩提達磨四行論	1(完)	達磨	1464	南原	重修	原刊記 無
23	禪門三家拈頌集	6(?)	龜庵	1464	本司	重修	
2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2(?)	宗密	1464	本司	雕造	
25	慈受和尙廣錄	2(?)	?	1466	本司	重修	原刊記 無
26	天台四敎儀集解	1(完)	從義	1464	本司	雕造	
27	無注妙法蓮華經	7(?)	鳩摩羅什(譯)	1467			
28	圓宗文類集解	3(1)	廓心	1468	開城	重修	原刊記 無
29	石門洪覺範林閒錄	2(?)	覺範	1468	尙州	重修	原刊記 無
30	淨名經集解關中疏	4(2)	道液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1095년 興王寺(原刊記)
31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1(完)	思孝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1099년 興王寺(原刊記)
32	大般涅槃經疏	20(2)	法寶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1099년 興王寺(原刊記)
33	圓覺禮懺略本	4(3)	宗密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1097년 興王寺(原刊記)
34	開四分律宗記義鏡鈔	20(1)	行滿	미상 (刊記 결락)		雕造	
35	金剛般若經義記	2(完)	知恩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1098년 興王寺(原刊記)
36	法華玄論	10(2)	吉藏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1102년 興王寺(原刊記)
37	首楞嚴經義疏注經	10 혹 20(2)	子璿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38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10(2)	詮明	미상 (刊記 결락)		雕造	原刊記 無
39	成唯識論了義燈抄	7(2)	惠沼	미상 (刊記 결락)		雕造	原刊記 無
40	成唯識論義景鈔	20 혹 14(2)	澧凝	미상 (刊記 결락)		雕造	原刊記 無
41	妙法蓮華經玄義	10(2)	智顗	미상 (刊記 결락)		雕造	原刊記 無
42	成唯識論述記	10(1)	窺基	미상 (刊記 결락)		雕造	原刊記 無
43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6(2)	遇榮	미상		雕造	1092년

				(刊記 결락)		金山寺 廣敎院 (原刊記)
44	金光明經文句	3(1)	智顗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1296년 濟州 妙蓮社 重雕 刊記
45	法華文句記	8(4)	湛然	미상 (重修記 결락)	重修	原刊記 無
46	華嚴經論	100(?)	靈辯	미상 (刊記 결락)	重修	
47	瑜伽師地論義演	40(?)	淸素	미상 (刊記 결락)	雕造	原刊記 無
48	因明入正理論疏鈔	8(2)	雲儼	미상 (刊記 결락)	重修	
49	圓覺經道場修證儀	5(1)	宗密	미상 (刊記 결락)	重修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로 현존하는 49종 불서의 판본의 내용을 앞의 도표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金剛般若經疏開玄鈔

이 책은 蜀郡沙門 公哲이 지은 것을 東京夫淸寺賜紫沙門 志蘊이 후에 내용을 보충하여 重刊한 것으로 金剛般若經의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 卷1 金剛般若經部에 '開玄 六卷, 科一卷'으로 되어 있다. 卷末題 다음에는 "壽昌四年癸酉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刊記가 있는데, 고려 肅宗 4年(1098)에 흥왕사에서 간행한 敎藏의 原刊記이다. 권6의 말미의 간기에는 '天順五年辛巳歲(1461)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라는 간기가 있다.[402]

(2)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는 大般涅槃經의 주석서인 慧遠의 大般涅槃經義記를 저본으로 하여 주요 내용을 뽑고 그 뜻을 해석한 책이다. 송광사에 권13, 권14권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失傳되고 없다.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卷14의 末尾에는 '天順五年辛巳歲(1461)朝鮮國刊經都監奉敎

402)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50

重修’라는 刊記가 있다.[403]

(3) 首楞嚴經環解刪補記

『首楞嚴經環解刪補記』는 고려시대 승려 普幻이 송나라 戒環이 지은 능엄경 주석서인 楞嚴經要解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충하여 上下 2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首楞嚴環解刪補記는 고려 忠烈王 5년(1279)에 經像修補都監에서 간행한 것을 重修한 인본으로 추정된다.[404]

(4) 金剛錍顯性錄

당나라 湛然이 지은 金剛論에 송나라 智圓(976～1022)이 주석하여 편집한 책이다. 2004년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 복장전적 발굴 당시에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4권 중 권3～4 1책이 현존하고 있으며,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권1 大涅槃經部에 ‘顯性錄’ 4권으로 수록되어 있다.[405]

(5)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大乘阿毘達磨集論』를 唐나라의 三藏法師 玄奘이 詔譯하여 『大乘阿毗達磨雜集論』을 편찬하였는데,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는 이에 대한 주석서이다. 大奉先寺沙門 玄範이 지었으며, 大乘阿毗達磨雜集論과 동일한 체제로 1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인본은 권13～14, 1책이다. 권말제 다음에는 “大安九年癸酉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간기가 있는데 宣宗 10년(1093)에 흥왕사에서 간행한 敎藏의 原刊記이다. 본서는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교장의 번각본이다.[406]

(6) 大乘起信論疏

『大乘起信論』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널리 읽힌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이론과 사상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총론화하고 불교의 여러 가지 교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헌이다. 이러한 『대승기신론』에 대해서는 일찍

403) 강순애, 2004, 앞의 논문, pp.34-35.
404) 江田俊雄, 1936,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朝鮮之圖書館』5-5, p.20.
405) 강순애, 2004, 앞의 논문, pp.34-35.
406)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53

부터 많은 주석서가 저술되어 동진의 慧遠, 당나라 法藏, 신라의 元曉 등의 주석서가 일찍부터 유통되었다. 이러한 주석서 중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大乘起信論疏』은 법장의 주석서로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권의 말에는 “天順午年(1461)辛巳藏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라는 간기가 있어서, 정확한 간행연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권의 권말에는 盧思愼, 海超, 雪峻이 교감했음이 기재되어 있다.[407]

(7) 妙法蓮華經纘述

『妙法蓮華經纘述』은 당나라 京師紀國寺沙門 釋慧淨이 妙法蓮華經을 기본서로 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저술한 책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의 法華經部에 ‘纘述’ 10卷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재 전해지는 인본은 권1~2 1책과 권5~6 1책으로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다.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원간기가 있으며, 이어 書寫者 명단이 있는데, 권1에는 ‘秘書省楷書同正臣南宮禮書’, 권2에는 ‘寫經院書者臣柳侯樹書’라는 기록이 있다.

(8)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部派佛敎의 대표적인 律藏인 四分律을 唐나라 道宣(596~667)이 풀이한 주석서인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를 저본으로 澄淵이 다시 주석한 책이다. 현재 전해지는 인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해인사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後印本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四分律部에 澄淵의 四分律鈔評集記 14권과 四分律科 3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四分律鈔評集記’가 바로 四分律刪繁補闕行事詳集記이다.[408]

(9) 大乘起信論筆削記

『大乘起信論筆削記』는 송나라의 長水法師 子璿(965-1038)이 대승기신

---

407) 남권희, 2020, 「신출의 고려교장 잔편과 간경도감 중수본」,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자료집』, pp.91-100.
남권희에 의하면,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는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책임을 밝히고 있다.

408)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60.

론의 주석서들을 절충하여 다시 주석한 책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 권3의 大乘起信論部에 '筆削記 六卷'과 '科文 一卷'을 子璿이 述하였다고 되어 있다.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於全羅道全州府雕造'라는 간기가 확인되며 권3과 권4에는 각각 '議政府錄事臣孔漢秀書', '將仕郞臣金悅書'라는 書寫者의 기록이 있다.[409]

(10) 般若波羅蜜多心經疏

『般若波羅蜜多心經疏』는 京兆崇福寺의 飜經沙門 法藏이 지은 책으로 般若波羅蜜多心經疏에 대한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 卷1의 般若心經部에 '疏 一卷'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5가지로 구분하여 1 敎興, 2 藏攝, 3 宗趣, 4 釋題, 5 解文으로 나누었다. '初敎興者', '第二藏攝者', '第三宗趣者', '第四釋題者' 등으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으며, 解文의 부분은 '經曰'이라고 쓴 후 般若波羅蜜多心經 본문의 단락을 쓰고 이어 주석의 처음 부분은 '釋曰'이라고 하여 주석을 달고 있으나, 나머지 주석은 '釋曰'이란 말을 생략하고 행을 바꾸어 기록하였다.권말에는 '大安九年癸酉歲(1093)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敎藏의 原刊記와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라는 간경도감의 刊記가 있다.[410]

(11) 圓覺經大疏釋義鈔

『圓覺經大疏釋義抄』은 終南山 草堂寺沙門 宗密이 지은 책으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주석서이다. 2004년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 복장전적 발굴 당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현재는 卷13이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권1 圓覺經部에 '大抄' 26卷或13卷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大安九年癸酉歲(1093)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敎藏의 原刊記와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라는 간경도감의 刊記가 있다.[411]

(12) 大方廣佛華嚴經合論

『大方廣佛華嚴經合論』은 당나라의 志寧이 大方廣佛華嚴經에 당시 불교

409) 江田俊雄, 1936, 앞의 논문 p.22.
410) 江田俊雄, 1936, 앞의 논문 p.24.
411) 강순애, 2004, 앞의 논문, pp.33-34.

학자인 李通玄의 '論'을 합하여 간행한 인본으로 제목의 '合論'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통현은 719년에 高山奴의 집에서 '論書'를 3년 동안 저술하였는데, 집에서 나가지 않았으며 대추와 잣나무 잎으로 만든 떡을 먹으며 집필에만 몰두하여 그를 '棗柏大士'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華嚴經部에 '合論' 120卷으로 '志寧將通玄論注於經下'라고 하였다. 현존본의 간기를 통해 大方廣佛華嚴經合論은 全州府와 羅州牧, 光州牧에서 나누어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412]

(13)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는 遼나라의 승려 覺苑이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의 내용 중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간추려 해석을 더한 책이다. 覺苑이 道宗太康3年(1077)에 황명으로 편찬한 것으로 異稱으로 '大日經義釋演密鈔'라고도 하는데 '卍續藏'에는 異稱으로 수록되어 있다. 책이 완성된 후 紫服을 하사받고 '總秘大師'의 號를 받았다.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毘盧神變經部에 '演密' 10권으로 표시되어 있다. 각 권의 권말에는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라는 간기가 새겨 있어서 이를 통해 世祖 8년(1462)에 간경도감에서 重刊한 教藏本임을 알 수 있다.[413]

(14) 瑜伽論疏

『瑜伽論疏』는 瑜伽論을 풀이한 주석서로 간경도감에서 重刊한 瑜伽論疏는 唐나라 智周의 주석본으로 총권 40권으로 되어 있다. 각권의 권말에는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魚慶尙道安東府雕造'라는 刊記가 있어 세조 8년(1462)에 간경도감에서 명을 받아 경상도 안동부에서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414]

(15) 首楞嚴經義解

『首楞嚴經義解』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 송나라의 咸輝가 '排經入注'하여 편찬한 주석서이다. 首楞嚴經義解는 고려대

412)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63.
413)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67.
414)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52.

장경이나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明版 永樂北藏의 '翦' 函에 수록되어 있다. 권1과 권2의 卷末에 있는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의 간기를 통해 간경도감에서 세조 8년(1462)에 간행한 인본임을 알 수 있다.[415]

(16) 五杉練若新學備用

『五杉練若新學備用』은 應之가 지은 茶毘法에 대한 불서이다. 應之는 廬山東林寺에서 주로 지낸 승려로 卷中에 수록된 서문에는 廬山에서 살며 淨土敎의 先祖로 불리는 '廬山遠大師'의 예를 들고 있는데 應之는 慧遠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간경도감에서는 五杉練若新學備用과 廬山慧遠의 문집인 廬山集 또한 간행되었기 때문에 두 인본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416]

(17) 眞實珠集

『眞實珠集』은 송나라의 倪妙行이 중국 역대의 銘歌 科談 心要 法語 問道 詩文 등의 문장을 모아서 편집한 책으로 책에는 "古杭無住居士倪妙行集"이라는 편찬자의 기록이 있다. 본문은 총 3권으로 되어 있으며, 매 권 말마다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라는 간기와 함께 "進義副尉臣黃伍信書"라는 書寫者의 기록이 있다.[417]

(18) 地藏菩薩本願經

『地藏菩薩本願經』은 흔히 약칭의 "지장경"으로 불리며, 지장보살이 六道의 중생을 교화하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이끌어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공덕이 수록되어 있는 경전이다. 지옥의 이름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으며 지옥에서 천도하기 위한 13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의 승려인 法燈이 漢譯하였으며 전체는 3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원간본의 卷下권말에는 "施主嚴敬"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반해 간경도감본에는 마지막에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라는 刊

415) 江田俊雄, 1936,「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朝鮮之圖書館』5-5, p.25.
416) 박용진, 2006,「朝鮮時代 刊經都監版 五杉練若新學備用 編纂과 그 意義」,『한국학논총』31, pp.409-410.
417)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52.

記가 있다.[418]

(19)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梁武帝 때에 간행된 慈悲道場懺法을 元代에 교정한 인본으로 본서의 저자사항에는 “梁朝諸大法師集撰”으로 기록되어 있어 단독저작물이 아니라 양나라 시기 여러 대법사들에 의해 찬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살면서 지은 죄를 참회하여 고통을 잊게 하는 불교의 식집류의 서적이며 죽은 사람의 혼령을 薦度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간경도감 간행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전체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존본은 권4~10에 해당하는 인본으로 권1~3의 내용은 알려진 인본이 없다.[419]

(20) 俱舍論頌疏鈔

『俱舍論頌疏鈔』는 당나라의 玄奘(600~664)이 漢譯한 阿毘達磨俱舍論에 常眞이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해석을 한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권3의 俱舍論部에 ‘頌疏鈔’ 8卷으로 기록되어 있다. 俱舍論頌疏鈔의 경우는 간경도감의 본사가 아니라 지방에서 간행하였는데 권1은 晉州牧에서 판각하였고, 나머지 권2에서 권8까지는 상주목에서 판각하였다. 간행 시기는 1462년에서 1463년까지이다.[420]

(21) 廬山集

『廬山集』은 林泰三의 글에 神尾二春의 소장본으로 처음 소개되었는데, 이후에도 廬山集에 대해 언급한 논문이나 자료가 없으며 현재는 散失되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林泰三의 글에는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있다.

“廬山念佛의 始祖慧遠이 만들어 전해 온 것으로 廬山集十卷 五十餘編이 있었고, 私藏에 가까운 것은 그 第八 第九 第十의 三卷으로 모아서 十卷의 마지막에는 宋僧 元照가 崇寧二年의 中秋에 西湖 靈芝蘭若에 對하여 題目하고 後序가 있는 刊行의 綠由가 記載되어 있었다. 다음에는 ‘錢唐鮑說集錢唐陳擇刀’라 刻한 것이 있고, 最後에 ‘天順七年癸未歲朝鮮國

418) 남권희, 2002, 「地藏菩薩本願經의 板本 硏究」, 『고인쇄문화』13, p.66.
419)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52.
420)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52.

刊經都監奉敎重修'라는 誌가 있다."[421]

저자로 언급된 慧遠(334~416)은 東晉의 승려로 淨土敎의 先祖로 알려져 있으며, 白蓮結社의 시조로 廬山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혜원은 여산에 거주하기를 30여년이나 하였는데, 그 사이에 산을 나오지 않고 東晋의 義熙12년(416) 8월에 83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그의 저술은 일찍이 양나라 시대에는 10권 50여편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저술은 대표적으로 大乘大義章 3권을 들 수 있는데, 내용은 주로 혜원이 法性, 法身, 念佛三昧, 四相 등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것을 묻고, 이에 대해 鳩摩羅什이 대답하는 글이다.[422]

(22) 菩提達磨四行論

『菩提達磨四行論』은 禪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가운데 理入과 行入이 있는데, 이 가운데 행입에서 4가지의 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4行은 報怨行 隨緣行 無所求行 稱法行을 말한다. 간경도감 간행본은 단권 1책으로 전체 22장의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天順八年甲申歲(1464)朝鮮國刊經都監奉敎於全羅道南原府重修"의 간기가 있어 전라도 남원부에서 판각하였음 알 수 있다. 또 "宣務郞前典牲署令臣韓叔倫書"의 書寫者 기록이 있으며, 권말에는 龍門佛眼達摩四行論이 합본되어 있다.[423]

(23) 禪門三家拈頌集

『禪門三家拈頌集』은 "禪門雪竇天童圓悟三家拈頌集", "三家拈頌集" 등으로도 불린다. 본서는 雪竇, 天童, 圓悟 3인의 拈頌을 고려의 승려 龜巖이 고려 고종 33년(1246)에 편집하여 간행한 책이다. 禪門雪竇天童圓悟三家拈頌集은 崔怡의 壽福을 빌기 위해 간행된 것으로 본래 30권의 선문염송집 가운데서 설두, 천동, 원오 3명의 염송만을 간추려 6권으로 편집하였

421) 林泰三, 1993,「朝鮮時代 刊經都監의 刊行佛典에 關한 硏究-日本人 神尾二春가 蒐集한 佛典中」,『日本硏究論叢』6, p.43. 위의 글에는 문장이 어법에 안 맞는 구절이 있지만 띄어쓰기만을 일부 수정하여 본문을 그대로 옮겼다.

422) 이희재, 2014,「廬山 慧遠의 白蓮結社의 의의」,『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20-2, p.75.

4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日本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所藏 韓國本』, p.234.

다. 권6의 권말에는 丙午年(1246)에 修禪社 5世인 天英이 쓴 後序와 함께 “天順八年甲申(1464)世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라는 刊記가 있다.[424]

(2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고려의 지눌에 의해 ‘了義經’으로 불리며 신봉된 후에 승려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된 경전인데, 이름을 축약하여 ‘圓覺經’으로 많이 부른다. 간경도감 간행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한문본과 국역본의 두 종류가 있는데, 涵虛堂 得通이 해석한 것이다. “天順八年甲申歲(1464)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이라는 권말의 간기를 통해 간행연도를 확인할 수 있다.[425]

(25) 慈受和尙廣錄

『慈受和尙廣錄』은 慈受懷深의 저작들을 편집하여 간행한 판본이다. 慈受懷深은 송대의 雲門宗의 僧匠으로 14세에 출가하여 4년 뒤에 전국의 叢林을 돌며 수행하였다. 1102년에 浙江省의 資聖寺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으며, 1121년 河南城 慧林寺의 주지가 되었다. 1127년에 慧林寺를 떠나 天台山의 靈巖에 거처하였으며, 뒤에 蔣山으로 들어가 조용히 은거하여 1132년 56세의 나이로 入寂하였다. 책말에 ‘成化二年丙戌歲(1466)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라는 간기가 있어 1289년경에 송본을 바탕으로 교정을 거쳐 간행하였고, 그 고려시기의 인본을 1466년에 간경도감에서 重修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26]

(26) 天台四敎儀集解

『天台四敎儀集解』는 고려 광종 11년(960)에 諦觀이 중국의 螺溪寺로 가서 천태학을 연구하여 저술한 天台四敎儀를 저본으로 송나라의 승려 從義가 集解한 책이다.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복장전적으로 발견이 되었으며, 현재 간경도감 간행 天台四敎儀集解는 대구 보성선원 소장의 卷下 1책이 알려져 있다. 天台四敎儀는 ‘5時8敎’에 대한 내용을

424) 南權熙, 1997, 「13세기 天台宗 관련 高麗佛經 3종의 書誌的 考察」, 『季刊書誌學報』19, p.5.
425) 江田俊雄, 1936, 앞의 논문, p.25.
426)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71.

통해 圓敎를 강조하고 있는데, ‘5時’는 華嚴時, 鹿苑時, 方等時, 般若時, 法華涅槃時이며, ‘8敎’는 頓敎, 漸敎, 秘密敎, 不定敎의 ‘化儀4敎’와 藏敎, 通交, 別敎, 圓敎의 ‘化法4敎’이다. 천태사교의는 천태학의 기본 개설서로서 천태종의 필수 경전이 되어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졌다. 권말에는 ‘天順八年甲申歲(1464)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라는 刊記와 ‘通政大夫兼知中樞院事臣趙瑾書’라는 書寫者에 대한 기록을 통해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趙瑾의 판하본으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427]

(27) 無注妙法蓮華經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無注妙法蓮華經』에 대해서는 『세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실록』에 의하면 일본 冷泉津藤氏의 어머니가 亡夫를 위하여 사찰에 안치하고자 세조에게 피로 쓴 『법화경』 1건을 청하였으나 세조가 이를 거절하고 간경도감에 명하여 『무주묘법연화경』을 인쇄하여 주게 하였다[428]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세조 13년(1467) 간경도감에서 『무주묘법연화경』을 인출하였음이 확인되지만 현존 여부는 알 수 없다.

(28) 圓宗文類集解

『圓宗文類集解』는 義天이 편집한 新集圓宗文類를 廓心이 集解한 것이다. 廓心은 義天의 法孫이며 용수사를 開創할 때 주지를 맡았다. 현재 圓宗文類集解는 일본의 텐리대학 텐리도서관에 中卷만이 현존하고 있다. 권말에 ‘成化四年戊子歲(1468)朝鮮國刊經都監奉敎於開城府重修’라는 간기가 있어 開城府에서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429]

(29) 石門洪覺範林間錄

『石門洪覺範林間錄』은 북송의 慧洪(1071～1128)이 찬술한 책으로,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新編洪覺範林間錄後集이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石門洪覺範林間錄은 대부분 後刷本이며 초간본은 알려진 것이 없다. 石門洪覺範林間錄은 이름난 高僧들의 이야기를 모아 편집한

427)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61.
428) 『世祖實錄』 권44, 세조 13년 11월 乙亥.
429) 김두종, 1974,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p.172.

책으로 達磨, 慧能, 宗密등의 중국 승려뿐 아니라 元曉, 義天 등의 국내 승려들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新編洪覺範林間錄後集의 권말에는 '成化四年戊子歲(1468)朝鮮國刊經都監奉敎於慶尙道尙州重修'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1468년 경상도 상주에서 중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430]

(30) 淨名經集解關中疏

『淨名經集解關中疏』는 당나라의 道液이 維摩經의 내용을 발췌하고 해석을 더하여 찬술한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維摩經部에 '關中集解' 4권으로 수록되어 있다. '維摩'는 산스크리트어의 비말라키르티(Vimalakirti)의 音譯이며 '淨名' 또는 '無垢稱'으로 漢譯되었다. 따라서 淨名經集解關中疏는 '維摩經疏'로 부르기도 한다. 총 4권의 분량 중 현존하는 것은 1책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각권의 권말에는 '壽昌元年乙亥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간기가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려 헌종 1년(1095)에 흥왕사에서 왕의 명을 받아 雕造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31)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은 思孝가 妙法蓮華經의 第25品에 해당하는 觀世音菩薩普門品에 대한 주석서이다. 科文은 경전을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눈 것을 말하는데, 이 책에서는 科文을 線으로 연결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보이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존본은 송광사의 소장본이 유일하며 권말에는 '壽昌五年己卯歲(1099)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敎藏의 原刊記가 있지만 판각의 상태와 지질 등으로 인해 간경도감의 重刊本으로 추정하고 있다.[431]

(32) 大般涅槃經疏

『大般涅槃經疏』는 大涅槃經을 저본으로 당나라의 승려 法寶가 주석을 한 책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大涅槃經部에 '疏 二卷或一卷'으로 法寶의 述로 수록되어 있다. 현존본은 권9와 권10 2책으로 송광사에 소장

430)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64.
431)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77.

되어 있다. 각권의 권말에는 '海東傳敎沙門義天校勘'의 기록과 다음 행에는 '壽昌五年乙卯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간기가 있어 敎藏의 간행에 大覺國師 義天이 직접 校勘을 담당하고 흥왕사에서 고려 肅宗 4年(1099)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432]

(33) 圓覺禮懺略本

『圓覺禮懺略本』은 宗密이 圓覺經을 저본으로 하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고 해설을 추가하여 만든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圓覺經部에 '禮懺略本' 4권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인본은 권2, 권3의 개인 소장본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卷3, 卷4의 卷末에는 '壽昌三年丁丑歲(1093)高麗國大興王寺雕造'라는 교장의 원간기가 수록되어 있지만 지질과 板刻術 등으로 볼 때, 간경도감에서 重刊한 인본으로 추정하고 있다.[433]

(34) 開四分律宗記義鏡鈔

『開四分律宗記義鏡鈔』는 당나라 천태종 승려인 行滿이 저술한 책으로 의천의 『교장총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江田俊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은 간경도감에서 중수되었으며, 총 20권의 분량 중 권1이 일본에 현존하는 걸로 서술하였다.[434]

(35) 金剛般若經義記

『金剛般若經義記』은 知恩이 金剛般若經을 저본으로 해설을 추가하여 만든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金剛般若經部에 '義記' 2권으로 수록되어 있다. 卷上의 卷首題 하단에는 小字雙行으로 '依天親菩薩論讚略釋奏本'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를 통해 인도의 승려 無著의 동생인 天親菩薩(世親)의 論贊을 저본으로 鳩摩羅什이 漢譯한 奏本에 의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32)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55.
433) 남권희, 1989,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3種에 관한 考察」, 『圖書館學論叢』16, pp.33-67.
434) 江田俊雄, 1977, 「李朝刊経都監と其の刊行仏典」, 『朝鮮仏教史の研究』, 國書刊行會, p.310.

각 권의 권말에는 '壽昌四年戊寅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원간기가 있어 고려 肅宗3年(1098)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판각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세조 때 간경도감의 敎藏의 重刊本으로 판단된다.[435]

(36) 法華玄論

『法華玄論』은 吉藏이 지은 妙法蓮華經에 대한 주석서로 新編諸宗敎藏總錄 권1에는 法華經部에 '玄論 十卷'으로 吉藏이 '述'하였다고 되어 있다. 法華玄論의 현존본은 개인 소장본으로 全帙10권 가운데 권3, 권4만이 잔존되고 있다. 卷首題 다음 행에는 '嘉祥寺沙門吉藏述'이라는 저자 표시가 있고, 권말에는 '乾統二年(1102)壬午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라는 간기와 다음 행에는 '寫經院書者臣韓惟翼書'라는 書寫者 표시가 있다.[436]

(37) 首楞嚴經義疏注經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首楞嚴經義疏注經』은 북송의 子璿이 저술한 책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는 권1·2 두 권이 현존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판각의 형태와 지질 등을 볼 때 세조 연간에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37]

(38)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는 당나라의 窺基가 지은 妙法蓮華經의 주석서인 法華經玄贊을 저본으로 詮明이 내용을 추가하여 재편집한 책이다. 卷首題 다음행에는 '燕臺憫忠寺沙門詮明集'이라는 저자 표시가 수록되어 있다. 新編諸宗敎藏總錄 권1의 法華經部에 '會古通今抄' 10卷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체 10권 중 권1과 권2만이 현존하고 있으며, 송광사의 사천왕상 복장에서 발견되었다.[438]

---

435) 남권희, 1989, 앞의 글, p.18.
436)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55.
437) 江田俊雄, 1977, 앞의 논문, pp.315-316.
438) 강순애, 2004, 앞의 논문, pp.32-33.

(39) 成唯識論了義燈抄

『成唯識論了義燈抄』는 成唯識論了義燈을 저본으로 당나라의 惠沼가 抄略한 인본이다. 新編諸宗藏總錄 권3의 成唯識論部에 '了義燈 七卷 惠沼述'이라고 되어 있다. 송광사의 사천왕상 복장에서 권3~4가 발견되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요의등초』는 2가지 유형으로서 송광사 소장 간경도감본과 산서성 도서관본이 일치하고, 그리고 대정장본, 卍속장경본이 서로 일치한다. 간경도감본은 산서성 도서관본과 版式이 동일하여 자형, 행과 자수, 삭제와 첨삭된 단어, 이체자 등이 모두 일치한다. 이에 간경도감본은 산서성 도서관본의 번각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정장(1923-1934년)본은 寬文七年(1667)版本, 東大寺藏古版本, 藥師寺藏古寫本, 大谷大學藏古版本'의 4종류 판본들을 사용하여 교감 영인을 하였다. 그러나 대정장본은 먼저 京都 藏經書院에서 영인된 卍속장경(1905-1912년)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요의등초는 내용별로 2가지 유형이 현존하고 있다.[439]

(40) 成唯識論義景抄

『成唯識論義景抄』는 송나라의 澹凝이 成唯識論의 주석서인 窺基의 成唯識論述記를 저본으로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그 뜻을 해설한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3의 成唯識論部에 '義景 二十卷 或 十卷'으로 수록되어 있다. 송광사의 사천왕상 복장에서 발견되었다.[440]

(41) 妙法蓮華經玄義

『妙法蓮華經玄義』는 天台宗의 三大部 중의 하나로 수나라의 智者大師가『묘법연화경』을 釋名, 變體, 明宗, 論用, 判教의 五綱目으로 나누어 그 진리를 강설한 불교개론서이다. 이 책은 2004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전체적인 해체보수과정에서 수습된 복장유물 중 하나로 총 10권 중 권3·4 두 권만 현존하고 있으며 간경도감에서 새긴 교장도감판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41]

---

439) 최종남, 2017,「간경도감본 成唯識論了義燈抄 권3.4의 판본대조 연구」,『書誌學研究』69, p.149.
440) 강순애, 2004, 위의 논문, pp.31-32.
441) 강순애, 2004, 위의 논문, pp.40-41.

(42) 成唯識論述記

『成唯識論述記』는 玄奘이 漢譯한 成唯識論을 저본으로 당나라의 窺基가 해설을 가한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敎藏總錄 권3의 成唯識論部에는 '述記 二十卷或十卷'으로 되어 있다. 현존본은 송광사의 사천왕상 복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권6으로 上半과 下半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成唯識論述記는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로 다시 나누면 20권이 됨을 알 수 있다.

고려 睿宗 6年(1111)에 李頲가 지은 慧德王師眞應塔碑에 금산사에 광교원을 짓고 慈恩大師가 지은 法華玄贊과 唯識述記 등 章疏 32部353卷을 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언급된 唯識述記가 바로 본 인본에 해당한다.[442]

(43)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는 郎賁이 지은 『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의 주석서인 『仁王護國般若經疏』을 저본으로 遇榮이 다시 내용을 간추리고 정리한 책이다. 卷首題 다음행에는 '譯經證義講經律論廣演大師遇榮集'이라는 저자 표시가 수록되어 있다. 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仁王經部에 '法衡抄 六卷'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체 6권 가운데 권5과 권6만이 현존하고 있으며, 송광사의 사천왕상 복장에서 발견되었다. 발문은 大安 8년(1092)에 간행의 功德主로 玄化寺住持인 韶顯이 썼는데, 발문의 내용을 통해 金山寺 廣敎院에서 開京의 印本을 重彫하여 辛未年 閏8월 6일에서 시작하여 壬申年 6월 10일에 작업을 마치어 유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44) 金光明經文句

『金光明經文句』는 天台智者가 金光明經을 저본으로 하여 해설을 더한 주석서이며, 新編諸宗敎藏總錄 권1에는 金光明經部에 '文句 三卷', '天台說'이라고 되어 있다. 전체 上中下 3권 가운데 金光明經文句 卷下만이 알려져 있다.

이어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이라는 간기와 '幹善瀑

442)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65.

布寺住持禪師安立'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고려 충렬왕 22년(1296)에 제주도에 있는 妙蓮社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瀑布寺의 주지 安立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간행 당시 담당자였음을 알 수 있다.[443]

(45) 法華文句記

『法華文句記』는 수나라의 智者大師가 법화경을 因緣釋, 約教釋, 本迹釋, 觀心釋으로 나누어 강설한 法華文句를 천태의 제6조인 당의 天台沙門인 湛然이 주석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은 2004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전체적인 해체보수과정에서 수습된 복장유물 중 하나로 총 10권 중 권5・6・7・8 4권만 현존하고 있다. 또한 간경도감의 분사에서 판각하여 보존해 두었던 해두었던 판이 없어지거나 마멸이 심하여 보각후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44]

(46) 華嚴經論

『華嚴經論』은 後魏의 靈辯이 華嚴經을 저본으로 해설을 한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卷1의 華嚴經部에 '論' 100卷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東大寺에는 教藏을 저본으로 필사한 필사본 華嚴經論 卷3이 남아 있다. 송광사에 전체 100권 중 권51～56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失傳되었다.[445]

(47) 瑜伽師地論義演

『瑜伽師地論義演』는 唐나라의 淸素가 瑜伽師地論을 저본으로 하여 의미를 해석한 주석서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권3의 瑜伽論部에는 '義演 四十卷'으로 되어 있다. 朝鮮古蹟硏究會에서 1938년에 편찬한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에는 瑜伽師地論義演 卷15・16이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失傳되고 없다.

---

443) 윤봉택, 2006, 「13세기 濟州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照明」, 『耽羅文化』29, pp.221-222.
444) 강순애, 2004, 앞의 논문, p.38.
445) 박광헌, 2017, 앞의 논문, p.65,

(48) 因明入正理論疏鈔

인도의 디그나가(陳那)는 불교인식 논리학으로서 因明學을 집대성한 인물로서 그의 저술로는『因明正理門論』등이 있다. 그의 제자인 샹카라스바민(天主)은 스승의『인명정리문론』의 요지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덧붙여 자신의 독창적인 논설을 추가하여『因明入正理門論』을 저술하였다. 이 책이 현장에 의해 한역되었고 이후 神泰, 靖邁, 窺基 등이 注를 달았는데 그 중에서 규기가 저술한『因明入正理論疏』의 주석이 가장 상세하여 인명학 연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因明入正理論疏鈔』는『因明入正理論疏』를 雲儼이라는 인물이 다시 주석한 책으로 그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인명입정리론소초』는 大屋德城의『高麗續藏經雕造攷』에서 刊經都監의 重修本으로 제시한 목록[446] 중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존재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 그 실물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8권 중 권5, 권6이 현존하고 있다. 권두에는 이 책의 저자인 冀州 光敎院 沙門 雲儼이 기재되어 있으며, 간기는 남아 있지 않지만 권6의 마지막장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낙장된 관계로 저본의 간기나 중수간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447]

(49) 圓覺經道場修證儀

『圓覺經道場修證儀』는 宗密이 원각경의 실천 방법에 대해 설한 책으로 道場法事, 禮懺法門, 坐禪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흥사에는 총 5권 분량 중 권2의 한 권만 현존하고 있으며 간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48]

446) 大屋德城, 1936,『高麗續藏經雕造攷』, 京都: 便利堂, p.77.
447) 남권희, 2020, 위의 논문, pp.116-125.
448) 박용진, 2020, 앞의 논문, pp.163-164.

2) 한문불서 간행의 특징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한문불서를 정리해 본 결과를 종합하면, 그 한문불서의 종류와 성격이 비교적 다양한 것 같지만,『地藏經』·『圓覺經』·『法華經』 등 3종의 대승경전,『菩提達磨四行論』·『禪門三家拈頌集』·『石門洪覺範林間錄』·『慈受和尙廣錄』등 4종의 선종 관계 저술,『五杉練若新學備用』·『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2종의 불교의례서,『眞實珠集』·『廬山集』2종의 중국 승려들의 문집 등 합계 11종을 제외한 불서 38종은 모두 비 경·율·론 三藏에 대한 주석서를 모은 敎藏이다. 따라서 한문불서 가운데서 주석서의 모음인 교장의 분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7.5% 이상으로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한문불서은 곧 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장을 간행하면서 약간의 다른 불서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장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타 불서 11종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대승경전 가운데 법화경은 당시 교리와 산앙의 양면에서 가장 중요시된 경전으로서 조선초기부터 여려 차례 사경의 대상이었으며, 간경도감 설치 이전에 이미 간행된 바 있었다. 그리고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도 전역되어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경도감에서 별도의 책으로도 간행되었는데, 뒤로 가면서 직역 위주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방향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후기부터 원각경과 능엄경은 화엄종과 선종에서 특히 중요시된 경전으로 한문불서으로 간행된데 이어 간경도감에서 법화경과 함께 이 두 경전도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그 다음 선종 관계 불서 4종은 선종인 조계종이 주류적인 정파였다는 당시 불교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의 불교의 다비법이나 불교의례에 관한 2종과 승려의 문집류 2종은 당시 불교계의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간경도감의 간행본 가운데서 앞의 11종 이외의 38종의 불서는 모두 경율론 3장에 대한 주석들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수집 간행한 교장에 속한 불서들이라는 점이다. 주석서로서 교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首楞嚴經環解刪補記·『首楞嚴經義解』·『圓宗文類集解』 3종의 불서 뿐인데, 이들 불서는 시기적으로 의천 이후에 저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결

국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한문불서으로 오늘날 확인된 49종 가운데 대부분이 모두 의천의 교장을 재간한 것으로서 세조7년(1461)의 간경도감 설치와 한문불서 간행은 의천의 고려 선종 3년(1086)의 교장도감 설치와 교장 간행의 불사를 계승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한문불서 가운데 '교장'을 再雕한 것은 간기에 '重修'라고 하고, 初刊한 불서에 대해서는 '雕造'라 하여 서로를 구분하였다.[449] 즉 간경도감에서 重刊한 교장은 興王寺版과 廣敎院版으로 나눌 수 있는데 興王寺版은 敎藏都監에서 간행된 인본을 말하며, 廣敎院版은 의천의 교장간행사업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金山寺의 廣敎院에서 간행된 교장을 말한다. 이를 大覺國師 義天이 고려 선종 7년(1090)년에 교장 간행의 예정목록으로 편찬한 『新編諸宗敎藏總錄(이하 『義天錄』)』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간경도감 간행본의 『敎藏總錄』 수록 상황

	刊經都監 간행본		『新編諸宗敎藏總錄』 수록상황		
	서명	분류	권차	部名	내용
1	金剛般若經疏開玄鈔	重修本	권1	金剛般若經	開玄鈔六卷　科一卷　公哲述　志蘊刪補
2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重修本	권1	大涅槃經	圓旨鈔十四卷科五卷　辯空述
4	金剛錍顯性錄	原刊本	권1	大涅槃經	顯性錄四卷　已上　智圓述
5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重修本	권3	雜集論	疏十六卷　玄範述
7	妙法蓮華經讚述	重修本	권1	法華經	贊述十卷　慧淨述
8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原刊本	권2	四分律	刪繁補闕行事鈔十二卷　道宣述
9	大乘起信論筆削記	原刊本	권3	大乘起信論	筆削記六卷　科文一卷　子璿述
10	般若波羅蜜多心經疏	重修本	권1	般若心經	疏一卷　法藏述
11	圓覺經大疏釋義抄	重修本	권1	圓覺經	大鈔二十六卷(或十三卷)　宗密述
12	大方廣佛華嚴經合論	原刊本	권1	大華嚴經	合論一百二十卷(志寧將通玄論注於經下)
13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蜜鈔	重修本	권1	毘盧神變經	演密十卷　已上　覺苑述

449) 안병희, 앞의 논문, p.67.

14	瑜伽論疏	原刊本	권3	瑜伽論	疏四十卷　智周述
20	俱舍論頌疏鈔	原刊本	권3	俱舍論	頌疏鈔八卷　常眞述
30	淨名經集解關中疏	重修本	권1	維摩經	關中集解四卷　道液述
31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重修本	권1	法華經	三玄圓讚二卷　思孝述
32	大般涅槃經疏	重修本	권1	大涅槃經	疏二卷(或一卷)　法寶述
33	圓覺禮懺略本	重修本	권1	圓覺經	禮懺略本四卷　宗密述
34	開四分律宗記義鏡鈔	原刊本	권2	四分律	開宗記義鏡鈔二十卷　行滿述
35	金剛般若經義記	重修本	권1	金剛般若經	義記二卷　知恩(或作玄待勘)述
36	法華玄論	重修本	권1	法華經	玄論十卷　吉藏述
37	首楞嚴經義疏注經	重修本	권1	首楞嚴經	義疏注經二十卷　子璿述
38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飜刻本	권1	法華經	會古通今鈔十卷　詮明述
39	成唯識論了義燈抄	飜刻本	권3	成唯識論	了義燈七卷　惠沼述
40	成唯識論義景鈔	飜刻本	권3	成唯識論	義景鈔二十卷(或十四卷)　澹凝述
41	妙法蓮華經玄義	飜刻本	권1	法華經	玄義十卷　智者說
42	成唯識論述記	飜刻本	권3	成唯識論	述記二十卷(或十卷)　窺基述
43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飜刻本	권1	仁王經	法衡鈔六卷　科二卷　遇榮述
44	金光明經文句	重修本	권1	金光明經	文句三卷　天台說
45	法華文句記	重修本	권1	法華經	文句記十卷　已上　湛然述

* 식별의 편리성을 위해 각 刊本의 번호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 표 번호를 그대로 따름

** 음영처리는 간경도감 원간본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간경도감 간행본 중『義天錄』에서 그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간기를 통해 고려시대 판본을 중수·보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간경도감에서 雕造한 原刊本들이 확인된다. 刊記가 결락된 사례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간경도감에서 雕造한 경우의 간기는 "……奉敎雕造"로, 이전의 판본을 수정하여 판각한 경우는 "……奉敎重修"로 표기되고 있어 원간본과 중수본의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고려판의 간기는 "……奉宣雕造"라고 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어서 고려판과 조선판의 구별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간본의 경우 전체 42건 중 10건에 불과한데 그 중 7건이 원간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7건의 원간본 중 (4)金剛錍顯性錄(권3·4)은 唐 湛然의 『金剛錍』에 대한 宋 智圓의 주석으로서 天台宗의 四明智禮를 대표로 하는 山家派에 대하여 山外派의 주장을 전개한 것이다. 2004년에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에서 발굴되어 2006년에 보물 제1468호로 일괄지정되었으며, 권3의 마지막 장의 간기 "天順五年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 아래에 書寫者와 校勘者에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世祖 7년(1461)에 申敬敷가 직접 判下本을 쓰고 盧思愼, 海超, 雪峻이 교감하여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책이 기존에는 『義天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인데,[450]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義天錄』 권1 大涅槃經部에 "顯性錄四卷 已上 智圓述"이라고 하여 분명히 수록되어 있다. '金剛'는 『大涅槃經』에 나오는 용어로 맹인의 눈꺼풀을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이며, 湛然의 『金剛錍』은 『大涅槃經』의 '佛性如空'의 입장에서 감정이 없는 존재에도 불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非情佛性說을 주장하는 저술이다. 또한 智圓의 『金剛錍顯性錄』은 『金剛錍』의 주석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그 내용이 『大涅槃經』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의천은 『義天錄』의 大涅槃經部에 이 책을 수록하였던 것인데, 『義天錄』의 기재방식이 그 서명을 略稱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顯性錄"이라고만 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金剛錍』와 『大涅槃經』의 관계를 간과하여 『義天錄』에는 수록되지 않은 장소라고 誤認한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밖에 (9)大乘起信論筆削記(권3·4), (12)大方廣佛華嚴經合論(권10-12, 40-42), (18)俱舍論頌疏抄(8권 完)은 天順年間의 雕造를 보여주는 간기와 書寫者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 간경도감 원간본임이 확실한데, 그 書體가 고려본에 비해 비교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51]

이처럼 간경도감에서 직접 雕造한 전적들이 『義天錄』에 수록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은 간경도감 사업이 고려 敎藏을 간행·유포하는 데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간경도감에서 이들 전적을 간행할 때 『義天錄』에 기반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판본이 없거나 逸失된 경우에는 그 板을 직접 제작하여 인출할 정도로 敎藏을 간행하고자

450) 강순애, 2006, 앞의 논문, pp.28-29.
451) 江田俊雄, 1935, 앞의 논문, pp.22-25.

하는 의도가 강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義天錄』에 수록되지 않은 3종의 원간본 (15)楞嚴經義解, (17)眞實珠集, (24)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역시 章疏라는 점은 간경도감의 간행 범위가 『義天錄』에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17)眞實珠集(3권 完)은 天順6年(1462)의 간기를 가지고 있지만 활자로 찍혀 첨부된 金守溫의 跋文에 成宗 3년(1472)에 仁粹王大妃(德宗妃)가 諸經을 인출하고자 하였음을 전하고 있어 성종대까지도 章疏類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義天錄』에 수록되지 않은 간경도감 간행본 13건 중 10건이 重修本이라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물론 이 중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전이 2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경전이 章疏의 목록인 『義天錄』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8건은 『義天錄』에 포함되지 않은 章疏도 상당부분 간행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수본은 모두 世祖年間에 간행된 것이므로 이 때 중수 간행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저본은 아마도 고려시대의 판본이었을 것이다. 原刊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私刊本이었을 가능성도 크지만 고려시대 敎藏의 간행이 『義天錄』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교적 폭 넓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重修本 혹은 飜刻本이 총 32건으로 약 3/4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重修刊記가 남아 있는 중수·번각본들은 "……奉敎重修"로 표기되어 있다. 중수·번각본 중에는 그 저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32건 중 18건이 敎藏都監本을 중수하거나 번각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刊記가 남아 있는 경우는 13건이며, 그 중 10건이 興王寺 雕造本이다. 흥왕사는 高麗 大覺國師 義天이 敎藏都監을 설치하여 자신이 수집한 章疏들을 판각한 곳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판본들을 통해 1092년부터 1102년까지 꾸준히 간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452] 이 때문에 교장도감 간행본들은 그 간기가 "……大興王寺奉宣雕造"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간경도감 중수·번각본 가운데 이러한 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 표와 같다.

452) 林惠憬, 「義天의 《新編諸宗敎藏總錄》 편찬과 그 의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p.11-16.

<표 13> 간경도감 중수·번각본의 底本

	서명	분류	저본	비고
1	金剛般若經疏開玄鈔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8년 興王寺(原刊記)
2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重修本	교장도감본	原刊記 無
3	楞嚴環解刪補記	重修本		原刊記 無
5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3년 興王寺(原刊記)
7	妙法蓮華經讚述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5년 興王寺(原刊記)
10	般若波羅蜜多心經疏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3년 興王寺(原刊記)
11	圓覺經大疏釋義抄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3년 興王寺(原刊記)
13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蜜鈔	重修本	교장도감본	原刊記 無
16	五衫練若新學備用	重修本	고려판	原刊記 無
18	地藏菩薩本願經	重修本		原刊記 無
21	廬山集	重修本		原刊記 無
22	菩提達磨四行論	重修本		原刊記 無
23	禪門三家拈頌集	重修本		
25	慈愛和尙廣錄	重修本		原刊記 無
27	無注妙法蓮華經	重修本		原刊記 無
28	圓宗文類集解	重修本		原刊記 無
29	石門洪覺範林閒錄	重修本		原刊記 無
30	淨名經集解關中疏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5년 興王寺(原刊記)
31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9년 興王寺(原刊記)
32	大般涅槃經疏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9년 興王寺(原刊記)
33	圓覺禮懺略本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7년 興王寺(原刊記)
35	金剛般若經義記	重修本	교장도감본	1098년 興王寺(原刊記)
36	法華玄論	重修本	교장도감본	1102년 興王寺(原刊記)
37	首楞嚴經義疏注經	重修本	교장도감본	原刊記 無
38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飜刻本	교장도감본	原刊記 無
39	成唯識論了義燈抄	飜刻本	교장도감본	原刊記 無
40	成唯識論義景鈔	飜刻本	교장도감본	原刊記 無
41	妙法蓮華經玄義	飜刻本	교장도감본	原刊記 無
42	成唯識論述記	飜刻本	廣敎院본	原刊記 無
43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飜刻本	廣敎院본	1092년 金山寺 廣敎院 (原刊記)

44	金光明經文句疏	重修本	妙蓮社本	1296년 濟州 妙蓮社 重雕 刊記
45	法華文句記	重修本		原刊記 無

* 식별의 편리성을 위해 각 刊本의 번호는 <표 11>의 번호를 그대로 따름

** 음영표시는 底本이 교장도감본으로 추정되는 사례

위의 표 중 (2)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13)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蜜鈔 등 음영으로 처리한 7건은 原刊記는 없지만 본문의 글자체, 版式, 板刻의 솜씨, 紙質 등이 간경도감에서 중수·번각된 교장도감본과 유사하여 역시 교장도감본이 저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이다. 특히 (1)『金剛般若經疏開玄鈔』은 교장도감 간기와 간경도감 중수간기가 모두 나타나 있어 이들 7건의 저본을 교장도감본으로 추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중 (38)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권1·2)는 遼의 詮明이 鳩摩羅什의 『妙法蓮華經』 7권본에 주석을 붙인 窺基의 『法華經玄贊』을 補述한 것으로 2004년에 全南 松廣寺의 四天王像에서 腹藏物로서 발견된 것이다. 권2와 권6은 1974년에 중국 山西省 應縣에 있는 佛宮寺의 釋迦塔 佛像 腹藏에서 발굴된 바 있는데, 같은 卷次가 국내에서 발견됨으로써 교장도감에서는 遼本을 저본으로 하여 교감을 거쳐 필사·補刻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 교장도감본을 간경도감에서 다시 번각한 것이다.

한편 고려시기 교장의 간행은 흥왕사 교장도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는 金山寺 廣敎院의 사례로서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와 現存本의 기록에 의하면 혜덕왕사 韶顯이 금산사에 광교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주로 법상종 관련 장소들을 인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阿彌陀經通贊疏』에는 소현이 의천의 弘願을 돕기 위해 광교원에서 이 장소를 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광교원 간행본 역시 고려 敎藏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간경도감 간행본 중에는 (42)成唯識論述記(권6)와 (43)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권5·6)이 광교원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典籍은 모두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에서 발굴된 것으로 특히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는 권6 마지막 장에 상세한 간기가 있어 그 저본이 광교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금산사 광교원에서 韶顯大師가 北宋의 汴京本에 의거하여 宣宗 8년(1091) 8월부터 9년(1092) 6월까지 필사하고 그 해 8월에 간행하였다는 것이다. 『成唯識論述記』는 唐 窺基의 대표 저술로서 함께 발굴된 『仁

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와 板式이 같기 때문에 광교원본이 저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453] 특히 「慧德王師眞應碑塔文」에서 광교원의 간행 사례로 이 저술이 언급되고 있는데, 간경도감에서 번각한 (42)成唯識論述記는 이 기록을 실물로 증빙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4)金光明經文句(下卷)는 唐 智顗의 찬술로서 松廣寺에서 소장하고 있다. 卷末에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雕 斡善瀑布寺住持禪師 安立"이라는 原刊記가 남아 있다. 즉, 원간기에 의하면 이 책은 고려시대의 私刊本을 저본으로 한 것이 되는데, 江田俊雄은 교장도감 간행본을 元貞二年(1296)에 제주도 妙蓮社에서 重雕하고, 다시 간경도감에서 補刻한 것으로 추정하였다.[454] 江田俊雄이 이렇게 본 것은 간기 중에서 "奉宣重雕"라고 한 점과 『義天錄』 권1 金光明經部에 "文句三卷 天台說"이라고 하여 그 서명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묘련사에서 重雕할 때 교장도감본을 그대로 새기지 않고 判下本을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江田俊雄 역시 교장도감본의 板式이 半葉 16行 22·23字인 것에 비해 이 책은 14行 17字이며 書體의 솜씨도 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16)五杉練若新學備用은 『義天錄』을 비롯한 佛書目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전적으로서 撰者인 應之가 叢林에서 日用하기 위해 上卷에서는 法數를, 中卷에서는 釋門의 喪儀禮法, 弔祭文, 簡牘書式 등을 설명하고 예를 들었으며, 下卷에는 受五戒文, 放生文, 十念文, 갖가지 齋文 등을 기록한 것이다. 江田俊雄은 곳곳에 고려왕의 諱를 피휘하여 '昭' '運' '敬' 등의 글자가 缺劃되어 있는 점과 書體·刻法 등을 토대로 고려시대의 판을 바탕으로 결락된 張을 간경도감에서 補刻한 것으로 보았다.[455] 더불어 天順年間의 重修記에 대해서는 문자의 배열이 흐트러져 있고 다른 문자보다 현저하게 진하게 찍혀 있다는 점을 들어 활자로 찍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비록 이 책은 교장도감본과 그 판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江田俊雄의 설명을 인정한다면 상당히 정교한 고려시대 판본을 바탕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453) 강순애, 2006, 앞의 논문, pp.31-33.
454) 江田俊雄, 1935, 앞의 논문, p.30.
455) 江田俊雄, 1935, 위의 논문, pp.31-32.

결국 저본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10건을 제외한 22건이 모두 고려시대 간행본을 중수·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6) 五衫練若新學備用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려 전기 義天의 敎藏刊行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의천의 敎藏을 중수·판각하는 것이 간경도감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고 이해되기도 한다.[456] 물론 간경도감의 사업이 의천의 『義天錄』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모두 간행하여 한 질을 갖추고자 했는지, 당시까지 교장도감판본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었으며 그 수요의 정도 등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敎藏의 수량이 극히 적어서 교장도감의 간행 범위 및 구체적인 典籍의 간행여부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경도감에서 교장의 重修本을 간행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간경도감의 설치 의도와 함께 고려 불교전통의 계승을 통해 불교를 부흥시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억불정책을 추진해 오던 조선초기 정치적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율·론 3장에 대한 주석서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한문불서의 간행이 전문적인 학승이나 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주석서의 종류에서 불교학의 여러 분야가 망라된 것은 종파의식을 벗어나 불교학의 폭을 크게 넓히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간경도감 중수본을 통해 교장도감의 간행사업의 일면과 더불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불서 간행의 전통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서들은 조선후기까지 전국 사찰에서 번각 및 후인되어 보급되었고,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교 사상의 맥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것은 모두 목판본으로 校書館에서 간행된 책이 주로 활자본인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는 불서를 간행하고자 하는 세조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활자 인쇄는 목판 인쇄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활자본에 비하여 목판본은 수요에 따라 몇차례든지 중복하여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도 고려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 중

456) 江田俊雄, 1935, 위의 논문, p.22.

과반수가 도감 설치 초기(1461-1463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의 불서가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 판각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판각된 책판의 일부를 수리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과정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도감 설치 초기에 이처럼 신속하게 간행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원인은 간경도감 설치 이전에 이미 조정에서는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성부를 중심으로 주요사찰에 수장하고 있던 경판의 소재 파악 작업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57] 조선 초기 태종부터 세조 연간 사이에 일본은 조선에게 수차례 대장경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板을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태종은 전국에 있는 경판의 수량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458] 이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세종 6년(1424) 2월에 가서 다른 경판을 보내는 것으로 결말을 보았다.[459] 또한 세종 7년(1425) 4월에는 서울과 지방의 폐사와 승려가 없는 절간에 소장되어 있는 금은자사경과 목판본이나 필사본 경전과 여러 경판이 도둑을 맞거나 파손된 현상을 막기 위해, 경판 등을 승려들이 모여 있는 절에 옮겨 두게 하고, 각 절에 있는 여러 경전과 경판의 수량을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460] 보존 대책이 시행되었다. 즉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조정에서는 전국 주요 사찰에 수장되어 있는 경판의 상황 및 목록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감의 설치 이후 인경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61]

그리고 당시 현존하는 경판의 상황 및 목록을 파악한 상황에서, 세조는 현존하는 경판의 목록에서 어떠한 불서를 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간경도감의 설치 목적과도 연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57) 송일기, 2018,「간경도감 중수본에 대한 오해」,『서지학연구』73.
송일기는 간경도감 중수본이 원간본의 번각이 아닌 후인본이며 세조 연간까지는 장소류를 포함하여 고려원각판이 다수 존재하였음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에 전존하는 장소류는 비록 세조때 후인한 판본에 해당되나 실은 원간본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458)『태종실록』권28, 태종 14년 7월 壬午.
459)『세종실록』권23, 세종 6년 2월 癸丑.
460)『세종실록』권77, 세종 19년 4월 丁亥.
461) 송일기, 2018, 앞의 논문, pp.92-93.

3. 간경도감의 국역불서 간행

1) 국역불서의 종류와 판본의 현존 상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현존 국역불서는 모두 11건으로 불서의 목록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462]

<표 14> 간경도감 간행 국역불서

	서 명	권수	역자 및 주해자	구결 / 국역자	간행 및 복각연도
1	大佛頂首楞嚴經	10	般剌密帝 譯 戒環 解	세조 / 김수온•한계희	1462년(세조 8년) 初刊 1496년(연산군 2년)
2	妙法蓮華經	7	鳩摩羅什 譯 戒環 解 一如集注	세조 / 김수온•한계희	1463년(세조 9년) 初刊 1495년(연산군 1년) 1523년(중종 18년) 1123년(인종 1년) 1172년(명종 2년) 1764년(영조 40년) 1500년(연산군 6년) 1799년(정조 23년)
3	禪宗永嘉集	2	玄覺 撰述 衍靖 註 淨源 修正	세조 / 신미 등	1464년(세조 10년) 初刊 1495년(연산군 1년) 1520년(중종 15년)
4	金剛般若波羅密經	2	鳩摩羅什 譯 慧能 註解	세조 / 한계희	1464년(세조 10년) 初刊 1495년(연산군 1년) 1530년(중종 25년) 1190년(명종 20년) 1575년(선조 8년) 1768년(영조 44년) 1796년(정조 20년)
5	般若波羅密多心經	1	玄奘 譯	세조 / 효령대군•한계	1464년(세조 10년) 初刊

462)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간경도감 간행 국역불서를 조사하고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간행본은 기존의 연구성과 즉 김무봉, 2015,『훈민정음, 그리고 불경 국역』, 역락 ; 김기종,『불교와 한글』,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 조승혁, 2018,「조선 전기의 불교 전적 간행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광헌, 2017,「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등을 참고하여 참고하여 이 표를 작성하였다.

			賢首 略疏 仲希 註解	희	1495년(연산군 1) 1550년(명종 5년)
6	般若心經疏顯正記	1	玄奘 譯 法藏 註 仲希 註解	세조 / 효령대군 • 한계희	1464년(세조 10년) 初刊 1495년(연산군 1년) 1553년(명종 8)
7	佛說阿彌陀經	1	鳩摩羅什 譯 智譜 註釋	세조 / 세조	1464년(세조 10년) 初刊(未傳) 1558년(명종 13년) 1702년(숙종 28년) 1727년(영조 3년) 1753년(영조 29년) 1871년(고종 8년) 1898년(광무 2년)
8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0	佛陀多羅 宗密 疏	세조 / 신미 • 효령대군 • 한계희	1465(세조 11년) 初刊 1575년(선조 8년)
9	牧牛子修心訣	1	知訥 撰	丕顯閣 / 신미	1467(세조 13년) 初刊
10	四法語	1	皖山 正凝 述 東山崇藏主 述 蒙山和尙 述 古潭和尙 述	신미 / 신미	1467년(세조 13년) 初刊 1500년(연산군 6년)
11	蒙山和尙法語略錄	1	德異 述	신미	1467년(세조 13년) 初刊 1472년(성종 3년) 1517년(중종 12년) 1521년(중종 16년) 1523년(중종 18년) 1525년(중종 20년) 1535년(중종 30년) 1543년(중종 38년) 1577년(선조 10년)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국역불서는 모두 11건으로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아미타경』, 『능엄경』, 『원각경』 등 6종의 대승경전, 『반야심경소현정기』 1종의 주석서, 『禪宗永嘉集』, 『牧牛子修心訣』, 『四法語』, 『蒙山和尙法語略錄』 등 4종의 선종에 관한 저술이다. 또한 국역불서의 간행기간은 세조 8년(1462년)부터 세조 13년(1467)까지로 간경도감 설치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大佛頂首楞嚴經

간경도감에서 간행된『대불정수능엄경』국역본은 송나라 戒環이 注解한 인본을, 세조가 구결을 달아 세조 8년(1462)에 10권으로 간행한 책이다. 卷首에는 桂陽君 李璔이 세조 8년(1462) 8월에 쓴 進首楞嚴經箋이 수록되어 있으며,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卷首에 수록된 進首楞嚴經箋의 말미에는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정1품부터 정5품까지 다양한 관직의 인물들이 간행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대불정수능엄경』권10의 권말에는 世祖가 직접 쓴 御製跋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종 31년(1449) 세종의 명으로 세조가 번역을 시작하였으나, 미루다가 세조 6년(1460) 5월 효령대군이 양주 檜巖寺에서 佛事를 하다가 釋迦分身舍利를 進上하여 온 것을 계기로 효령대군이 楞嚴經과 永嘉集의 飜譯을 청하여 慧覺尊者 信眉에게 책임을 맡기고 韓繼禧와 金守溫 등이 번역하고 趙變安이 國韻을 달아 같은 해 10월 校書館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교서관에서 간행한 활자본이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이를 교정하여 다음 해인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재간행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463]

교서관에서 간행된 활자본의 각 권말에는 音釋이 수록되어 있는데, 首楞嚴經의 주석서인 戒環의 楞嚴經要解, 咸輝의 楞嚴經義海, 惟則의 楞嚴經會解, 思坦의 楞嚴經集註 등 4종에 해당하는 音釋을 차례로 정리하여 要解, 義海, 會解, 集註로 약칭하고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목판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활자본에는 없었던 '第1卷'부터 '第10卷'까지의 음석이 표시되어 있다.[464] 이는 간경도감이라는 공적 기구가 설치된 이후 국역 작업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2) 妙法蓮華經

간경도감에서 간행된『묘법연화경』국역본은 鳩摩羅什이 漢譯한 묘법

463)『능엄경국역』권10, 御製跋.
464) 박광헌, 2018, 앞의 논문, p.128.

연화경에, 계환이 要解하고 一如가 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여기에 世祖가 구결을 달아 세조 9년(1463)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책이다. 이 책도 목판본으로 7권 7책으로 간행되었으며, 『세조실록』[465]의 기록을 통해 정확한 간행년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卷의 마지막에는 音釋을 달고 묘법연화경의 '品'별로 구분하여 풀이하였다. 卷頭에는 宋代의 及南이 지은 妙法蓮華經要解序, 明代의 姚廣孝(1335-1418)가 영락 16년(1418)에 쓴 新註法華經序, 明代의 一如가 쓴 集註序文, 道宣(596-667)이 지은 妙法蓮華經弘傳序, 尹師路가 1463년에 쓴 進妙法蓮華經箋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인본마다 차이를 보인다.[466]

편찬 양식은 능엄경국역과는 달리 경전 본문 앞에 계환의 科文을 한 글자 내려서 구결과 함께 싣고, 국역을 한 다음에 본문 구결문과 국역문을 두었다. 大字의 본문에는 구결을 달았다. 단락 끝에 '○'표시를 한 후 일여의 '集註'를 小字雙行으로 쓰고, 끝나면 다시 '.' 표시를 둔 다음 본문의 국역을 적었는데, 이 또한 小字雙行이다. 이어 한 글자 내려서 계환의 '要解'의 구결을 달고, 中字로 하였으며 그 끝에는 '.'표시를 하고 국역하였는데, 이 역시 小字쌍행으로 하였다. 국역의 한자에는 동국정운 한자음을 主音하고, 간혹 중간에 夾註가 있으면 처음과 끝에 각각 黑魚尾를 표시했다.[467]

(3) 禪宗永嘉集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선종영가집』 국역본은 당나라 玄覺이 저술한 『선종영가집』에, 송나라 行靖의 注를 붙이고 淨源의 科文을 수정한 것을 세조가 정음으로 구결을 달아서 세조 10년(1464) 1월에 상하 2권 2책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선종영가집』 국역본의 卷首에는 황수신이 세조 10년(1464) 1월 5일에 쓴 進禪宗永嘉集箋이 수록되어 있으며 上下의 본문 앞에는 조조관 열함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간경도감의 관직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책말에는 涵虛堂讚頌幷序와 涵虛堂說義가 수록되어 있다.

---

465)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9월 戊午.
466) 박광헌, 2018, 앞의 논문, pp.129-130.
467) 김무봉, 2015, 앞의 책, pp.209-210.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선종영가집』[468]에는 권말에 信眉의 발문과 세조 9년(1463) 孝寧大君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세조가 친히 口訣을 하였고, 判敎宗事 海超, 前津寬寺住持 大禪師 弘一, 前檜巖寺住持 大禪師 曉雲, 前俗離寺住持 大師 演熙 등의 승려와 효령대군으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金剛般若波羅密經

간경도감에서 간행된『금강반야바라밀경』국역본은 鳩摩羅什이 漢譯한 금강경과 당나라 六祖慧能의 解義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한계희가 번역하고, 효령대군과 判敎宗事 海超 등이 교정을 보아서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했다. 규장각 소장『금강반야바라밀경』국역본의 상권의 권말에는 송나라의 羅適이 쓴 六祖口訣後序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의 권말에는 조조관 열함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간경도감의 관직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권의 권말에는 황수신의 進金剛經心經箋과 飜譯廣轉事實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간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조 8년(1462) 세조의 꿈에 세종과 의경세자가 나타나고, 中宮도 꿈에 세종이 이룩한 불상을 봄에 따라 세조가 지극히 감격하여 돌아간 이의 명복을 빌고, 애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금강경』을 번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황수신이 쓴 進金剛經心經箋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般若波羅密多心經』에 수록된 箋文과 내용이 동일하다.

간경도감이 폐지된 후에는『금강경삼가해』국역본은 성종 13년(1482) 學祖가 重校하여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5) 般若波羅密多心經

간경도감에서 간행된『반야바라밀다심경』국역본은 당나라 法藏의『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에 대한 송나라 仲希의 주해본을 세조가 정음으로 구결을 달고, 효령대군과 한계희 등에 명하여 번역, 세조 10년(1464)에 목판본 1책으로 간행한 책이다. 권두에는 황수신이 세조 10년(1464) 쓴 進金剛心經箋이 실려 있는데,『반야바라밀다심경』국역본과『금강반야바

468) 중종 15년(1520) 경상도 安陰縣 長水寺에서 간행된 책으로 간경도감본의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라밀경』 국역본의 두 불서에 대한 箋文을 합하여 쓴 것이다. 권말에는 韓繼禧가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法藏의 주석만이 宗旨를 얻었으니 효령대군과 한계희에게 번역을 명하였으며, 中希가 찬술한 縣正記를 구해 疏의 經句를 완전히 해석하여 경문의 아래에 수록하였다고 한다. 또한 효령대군은 이름 있는 승려들과 함께 자세히 교감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6) 般若心經疏顯正記

『반야심경소현정기』는 당나라 法藏이 주석을 단 『반야심경약소』에 송나라 仲希가 자신의 주해를 더하여 편찬한 주석서로 효령대군과 한계희 등이 세조의 명으로 국역하여 세조 10년(1464) 목판본 1책으로 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초인본의 권두에는 중희가 찬술한 般若心經疏顯正記幷序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책말에는 한계희가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효령대군과 한계희가 국역하고 敎宗判事인 海超 등 고승들과 대군의 교정을 거쳐 간행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7) 佛說阿彌陀經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설아미타경』 국역본은 구마라집이 한역한 『불설아미타경』에 세조가 구결을 달아 세조 10년(1464) 간행된 책이다.[469] 『불설아미타경』은 『無量壽經』·『觀無量壽經』과 함께 淨土三部經이라고 하며, 이 경은 아미타불과 極樂淨土의 장엄을 설하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往生한다고 설법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간경도감판 佛說阿彌陀經은 후에 여러 번각본이 간행되었는데, 1558년의 雙溪寺版, 1702년의 雲興寺版, 1753년의 桐華寺版 등이 있으며, 이들 번각본에는 간경도감의 간기를 그대로 판각하였다.[470]

---

469) 김무봉, 박광헌에 의하면 목판본 간경도감판(1464)의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후쇄본과 복각본 등만 전하고 있으며 후쇄본이나 복각본에 보이는 '天順八年(1464) 甲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忠毅校尉行忠佐衛中部副司正臣安惠書'라는 간기를 통해 원간본의 간행연대를 세조 10년(1464)으로 추정하고 있다.

470) 박광헌, 2018, 앞의 논문, pp.144-145.

(8)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국역본은 佛陀多羅가 漢譯한 것으로 전하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에 대하여 당나라의 宗密이 疏한 저본에, 세조가 구결을 달고 신미, 효령대군, 한계희 등이 번역하여 세조 11년(1465)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10권 10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의 내용은, 석가여래 부처님과 12보살-문수 · 보현 · 보안 · 금강장 · 미륵 · 청정혜 · 위덕자재 · 변음 · 정제업장 · 보각 · 원각 · 현선수 보살-과의 문답을 통해 大圓覺의 妙理와 그 觀行을 설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후쇄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초인본과는 달리 10책으로 제본되어 있으며 권10의 말미에는 守身이 쓴 進圓覺經箋이 있으며, 조조관 열함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간경도감의 관직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9) 牧牛子修心訣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목우자수심결』 국역본은 普照國師 智訥이 지은 『수심결』을 丕顯閣에서 구결하고 신미가 국역하여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선종뿐만 아니라 교종에서도 마음을 밝히는 중요한 저술로 전수되어 온 禪이론서로서, 마음을 닦는 要諦를 頓悟門과 漸修門으로 나누고 定慧双修를 점수문의 요점이라 설명했다

『목우자수심결』 국역본에는 口訣과 譯者가 각각 '丕顯閣訣', '慧覺尊者譯'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丕顯閣은 思政殿 동쪽 모서리 內廂庫 2칸에 창을 내고 편히 쉬는 곳으로 삼았는데, 書經에서 昧爽丕顯의 뜻을 취한 것이다. 병서의 纂註와 醫書類聚의 간행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經書, 兵書, 醫書 등 다양한 서적들을 侍講하는 곳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여러 신하들을 불러 經書와 兵書등을 口訣하는 장소로 역할을 하였다.[471]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목우자수심결』 국역본에는 권두에 '사법어'가 있으며 그 다음에 '수심결'의 순으로 합철되어 있다. 권말에는 '成化三年丁亥歲(1467)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라는 刊記와 함께 安惠, 柳睨書, 朴耕라는 書寫者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471) 박광헌, 2018, 앞의 논문, p.149.

(10) 四法語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사법어』 국역본은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蒙山和尙示衆, 古潭和尙法語 등의 4편의 法語에 혜각존자 신미가 口訣을 달고 국역한 책이다. 이 『사법어』는 모두 9장 18면의 적은 분량이어서 단독으로 간행된 것은 없고, 『목우자수심결』 국역본이나 『몽산화상법어약록』 국역본에 합철되어 있고, 번역양식이나 표기는 『목우자수심결국역』와 거의 같아서 그 간행 연대도 같은 해인 세조 13년(1467)으로 추정하고 있다.[472]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소장본에는 『목우자수심결』 국역본과 합철되어 있으며, 권두에 『사법어』, 권말에 『목우자수심결』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11) 蒙山和尙法語略錄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몽산화상법어약록』 국역본은 원나라 夢山和尙德異의 법어 모음집을 신미가 국역한 책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널리 유통된 법어록 가운데 하나로 「示古原上人」·「示覺圓上人」·「示惟正上人」·「示聰上人」·「無字十節目」·「休休庵坐禪文」 등 6편과 고려의 普濟尊者 懶翁의 「示覺悟禪人法語」가 수록되어 있다. 초인본인 보물 제767호·제768호·제1172호 등 3종은 김수온의 발문이 있으며, 김수온의 발문이 없는 제769호·제1012호 등 2종은 성종 3년에 인출된 후인본으로 추정되고 있다.[473]

472) 김무봉, 2015, 앞의 책, p.223
473) 조승혁, 2018, 「조선 전기의 불교 전적 간행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98.

2) 국역불서 간행의 특징

간경도감에서의 국역은 불서의 구결은 대부분 세조가 직접 확정하여 달았고, 국역 과정 및 교정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을『능엄경』국역본의 御製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上이 입겨출ᄃᆞ릇샤 慧覺尊者ᄭᅴ마ᄀᆡ와시ᄂᆞᆯ 貞嬪韓氏等이 唱準ᄒᆞ야ᄂᆞᆯ 工曹參判臣韓繼禧前尙州牧使臣金守溫ᄋᆞᆫ 飜譯ᄒᆞ고 議政府檢詳臣朴楗 護軍臣尹弼商 世子文學臣盧思愼 吏曹佐郎臣鄭孝常은 相考ᄒᆞ고 永順君臣溥ᄂᆞᆫ 例一定ᄒᆞ고 司贍寺臣曺變安 監察臣趙祉ᄂᆞᆫ 國韻쓰고 慧覺尊子信眉入選思智 學悅 學祖ᄂᆞᆫ 飜譯正히온 後에 御覽ᄒᆞ샤 一定커시ᄂᆞᆯ 典言曺氏豆大ᄂᆞᆫ 御前에 飜譯 닑ᄉᆞ오니라[474]

국역과정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여러 단계를 거쳐 충실한 번역을 추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 것으로 정리된다.

1. (세조) 한문에 구결을 단다.
2. (혜각존자신미)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확인한다.
3. (정빈한씨 등)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한다.
4. (한계희, 김수온) 정음으로 번역한다.
5. (박건, 윤필상, 노사신, 정효상) 번역된 문장을 여럿이 서로 비교·고찰한다.
6. (영순군 이부) 例를 정한다.
7. (조변안, 조지) 동국정운음으로 한자음을 단다.
8. (신미, 사지, 학열, 학조) 잘못된 번역을 고친다.[475]

국역불서의 편찬은 대체로 세조의 구결 親定, 구결에 따른 번역, 원전

474)『능엄경국역』권10, 御製跋.
475) 김무봉, 2004,「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한국사상과 문화』 23, pp.383-384 ; 김기종, 2015, 앞의 책, p.219.

의 연구와 교감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유신과 승려들의 토론이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면 번역 작업이 끝난 후에도 출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방대한 양의 불서들을 짜임새 있게 간행하기 위해서는 구결 작성과 번역 등의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476] 또한 이 과정에는 세조가 직접 번역을 하거나 口訣을 붙인 것을 보면 불경 국역사업에 대한 세조의 관심과 열정이 각별했음을 보여준다.[477]

세조는 국역 작업의 명분을 世宗의 遺業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세조가 성리학적 의리명분론에 어긋나는 과정을 통해 즉위하였기 때문에, 세종이 집권 후기에 추진한 불서 국역 작업을 계승함으로써 정치적 명분을 얻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더불어 세종이 추진하던 훈민정음의 보급 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내외에 보임으로써 왕권의 권위를 확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던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478] 또한 儒臣들에게 외면당하던 국문자를 정착 및 보급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국문자의 실제 수요자였던 일반 백성들의 뿌리 깊은 불심에 기대어 국문자의 보급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조 7년 3월에 형조에서 올린 도승법, 즉 승려가 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조에서 公私賤으로서 중이 된 자의 禁防條件을 아뢰었는데, 금방 조건에 이르기를,

“一. 公賤으로 중이 된 자는 宗門에 告하고 종문에서는 『금강경』·『心經』·「薩怛陁」를 능히 외고, 僧行이 있는 자를 가려서 사유를 갖추어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성상께 아뢰고 정전을 거두고 도첩을 주어서 그 이름과 主司의 명칭을 본조에 이첩하면 본조에서는 여러 아문의 門籍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하소서.

一. 종문에서 선발 시험을 행할 때, 하나의 경전도 외지 못한 자는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하지 말고, 예조에 전보하면 예조에서는 본조와 본 아

476) 안병희, 2009, 앞의 책, p.204.
477) 김기종, 2015, 앞의 책, pp.220-222.
478) 박정숙, 1996, 앞의 논문, pp.63-64.

문에 이첩하여 알리게 하소서.[479]

이 규정은 이보다 앞서 세조 6년 7월에 있었던 예조의 제안을 보완한 것으로, 선·교 양종에서 3년마다 인재를 선발하는 選試의 규정[480]과 함께 『경국대전』에도 수록되어 있다.[481] 인용문의 첫째 둘째 항목을 보면, 승려의 자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강화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정전을 주어도 『금강경』·『심경』·「살달타」를 외우지 못하고 승려로서의 행실을 갖추지 못하면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심경'은 『반야심경』의 약칭이고, '살달타'는 『능엄경』 권7에 수록된 楞嚴呪를 가리킨다.[482] 이를 통해 보면 고려말기 문맹인 관계로 경전도 읽지 못하는 승려가 많았다는 이색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교교단이 원래 지식인 승려 그룹과 일반 대중 승도들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소수의 지식인 승려 이외의 대부분의 승도들은 한문경전을 직접 읽지는 못하였던 것이며, 특히 불교가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가던 고려말기 이래로 승려 가운데 경전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많았던 상황에서 세조가 승려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자질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역불서 이 승려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러한 평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전번역의 대상을 승려들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며, 한문을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을 포함하여 불교의 기반을 저변으로 학대하려는 불교대중화의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대중화는 왕권을 사회의 저변으로 확대하려는 훈민정음의 반포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국역불서 가운데 대다수

---

479)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3월 庚戌.

480) 『경국대전』 권3, 「禮典」'度僧',
"선·교 양종은 매 3년마다 選試를 본다. 선종은 『전등록』·『선문염송』을, 교종은 『화엄경』·「십지론」을 린다." (『경국대전』 권3, 「禮典」'度僧', 조선총독부, 296면) 시험 보여 각각 30인씩을 뽑는다."

481) 『경국대전』 권3, 「禮典」 '度僧'
"승려가 된 사람은 석달안에 선종 혹은 교종에알려서 誦經(『心經』·『金剛經』·『薩怛…陁』) 시험을 치르며, 예조에서 私賤은 本主의 情願에 따라 보고를 받아서 上啓하고, 丁錢(正布 20필)을 수납하여 도첩을 내어준다.

482) 김기종, 2015, 앞의 책, pp.208-209.

는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아미타경』, 『능엄경』, 『원각경』 등 7종의 대승경전과 『반야심경』에 대한 1종의 주석서이며, 나머지는 『목우자수심결』, 『사법어』 『몽산화상법어약록』 등 3종의 선수행에 관한 불서이다. 이를 통해 보면 한문 불서 간행이 주석서인 교장 중심으로서 전문적인 불교승려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역된 대승경전이 지니는 공통성은, 이들이 교리와 신앙 양면에서 중요시된 불서들이며, 특히 『능엄경』과 『원각경』은 선종과 화엄종에서 중요시된 불서이기 때문에 한문을 읽지 못하는 승려나 일반 백성에게 널리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번역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선수행에 관한 불서는 불교계의 주류로 등장한 선종, 특히 보조지눌의 수선사 계통이나 몽산덕이의 임제종 계통의 선불교 전통을 중시하여 지식인 승려들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나 처음 출가하는 승려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포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동안 국문학계 일각에서는 간경도감의 국역본이 가능한 한 원문 번역에서 직역 위주로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주석 부분까지도 번역하여 수록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국역경전의 대상은 전문적인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불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으나, 굳이 그 대상을 전문적인 엘리트 승려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한문경전을 읽지 못하는 대중승도나 일반 백성에게까지도 직접 읽게 함으로서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는 계층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경전의 주석서인 교장은 한문불서 그대로 간행하여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엘리트 승려나 전문적인 학자들을 대상으로 읽게 하였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4. 간경도감 혁파 이후의 불서 간행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한 직후부터 간경도감의 혁파론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예종 즉위년(1468) 9월 간경도감의 제조 한계희가 간경도감의 停罷를 반대하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의 논의가 이를 멸시하였다는 기록[483]을 통해 간경도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종 1년(1469) 호조에서 간경도감의 대납 권한에 대한 폐해가 심함을 비판하였고[484] 같은 시기에 大司憲 梁誠之가 올린 상소에서,

> 간경도감의 관리들이 혹은 加資되거나, 혹은 陞職되었고, (중략) 이와 같은 무리들이 어찌 반드시 여러 堂上을 가한 뒤에 된 것이겠습니까? (중략) 提調가 그 僚佐의 功과 재능을 칭찬하며 천거해서 論賞하는 것은 私黨을 이루려는 조짐이며, 子弟나 親戚을 推擧하여 前例에 의해 논상하는 곳에 두는 것은 人臣으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려는 조짐이며 (후략)"[485]

라고 하여 유신들이 간경도감의 관리들의 私黨化까지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종 1년(1469) 7월에는 강희맹과 서거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내용과 더불어,

> 이시보는 처음에 간경도감에서 利權을 맡아 보게 하였는데, 한 부유한 상인이 술자리를 베풀어 이시보와 私通하는 娼妓를 부르니, 이시보가 즉시 가서 술을 마셨으므로 物議가 시끄러워 吏曹에서 아뢰어 그 직책을 파면하였었다. 재차 도감에 들어가기에 미쳐서는 낙산사(洛山寺)의 역사를 감독하고, 중 學悅을 아첨하여 섬기니, 학열이 낙산사를 영조할 때 무리가 매우 많았다. 관찰사 金瓘이 학열의 뜻에 아첨하여, 안부를 묻고 물건을 선사하는 등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자못 명

483)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9월 丁卯.
484) 『睿宗實錄』 권1, 예종 1년 1월 壬午.
485) 『睿宗實錄』 권3, 예종 1년 2월 辛卯.

예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임금은 김관이 剝民하는 것에 노하여 관직을 파면하고 잡아다가 推鞫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절이 이루어지자 論賞한 것이다.[486]

라고 하여 간경도감 관리와 승려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사관의 냉혹한 비판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예종 1년(1469) 9월에는 大司憲 吳百昌 등이 봉선사 및 간경도감의 관리를 논상하지 말 것을 청하는 기록이[487] 남아 있어 간경도감에 대한 비판이 공론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종 년간에 들어서면서 간경도감에 대한 혁파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성종 1년 大司諫 金壽寧은 상소문에서,

佛氏의 말은 汗漫하고 支離한데, 그 敎義라는 것을 찾아보면 空寂하여 막힘이 없는 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지금 부처를 섬기는 자들이 많이 師說을 배반하면서도 그 말로 奇貨를 삼아 백성들을 착취하니, 이것은 실로 誅殺로써도 모자랍니다. 근자에는 國恤이 서로 겹쳐서 일찍이 그 법에 힘입어 應效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그 誕妄하여 보탬이 없음을 어찌 말을 기다린 뒤에 알겠습니까? 생각하면 가위 통곡할 일입니다. 빌건대 간경도감을 파하고, 또 僧尼를 쫓아내어 惟新의 다스림을 도모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488]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2달 뒤에도 다시 상소하여,

先王을 위하여 명복을 빈다 하고 하나는 현재를 위하여 복을 빈다 하여, 심지어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때가 화평하고 해가 풍년 드는 것이 이것으로 인하지 않음이 없다 하니, 그러므로 비록 그 誕妄함을 아는 자도 감히 탄망하다 말하지 못하고 그 폐해를 아는 자도 감히 그 폐해를 말하지 못합니다.[489]

---

486)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 7월 己丑.
487) 『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戊申.
488) 『成宗實錄』 권3, 성종 1년 2월 癸亥.
489) 『成宗實錄』 권4, 예종 1년 4월 壬戌.

라고 하여 간경도감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데, 특히 간경도감의 재정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신들은 경비의 과다 지출 등이 혁파론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에도 간경도감의 폐지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으며,[490] 여기에 간경도감의 불경 수입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부가되면서[491] 신숙주, 한명회, 최항 등과 김수녕, 손순효, 정난종 등이 간경도감을 중심으로 한 불교세력을 논핵하였다. 그 결과 간경도감은 성종 2년(1471) 12월 마침내 혁파되었다.[492]

한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현존 불서들의 간행 연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간경도감이 설치된 세조 7년(1461)부터 세조 11년(1465)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불서 간행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세조 사후에는 유신들의 반발로 불서 간행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가의 공적인 기구인 간경도감이 폐지된 이후에는 국왕의 명에 의해 공적으로 간행된 불서는 없으며, 대체로 왕실의 여성들에 의해서 사적으로 불서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 무렵 왕실의 여성의 주도하에 간행된 불서로는 현재 『地藏菩薩本願經』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책이 간행된 정확한 시점은 간경도감이 폐지되기 2년 전인 예종 2년(1469)으로 김수온의 쓴 발문에 의하면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가 남편 安孟聃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성종-연산군 시기 유신들의 극렬한 반대로 잠시 주춤했던 불서 간행 및 인출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시킨 사람은 세조의 왕비인 貞熹王后 윤씨(慈聖大妃)와 예종의 왕비인 昭惠王后 한씨(仁粹大妃)였다. 이 시기 왕실의 여성들에 의해 간행 및 인출된 불서의 현존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93]

---

490) 『成宗實錄』 권5, 성종 1년 5월 庚辰 ; 『成宗實錄』 권6, 성종 1년 6월 乙卯 ; 『成宗實錄』 권6, 성종 1년 7월 癸卯.
491)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1월 甲午 ;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1월 戊戌 ;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1월 庚子.
492) 『成宗實錄』 권13, 성종 2년 12월 壬申.
493) 곽동화, 2017, 앞의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표 15> 성종-연산군 시기 간행/인출된 불서 목록

번호	서명	간행년	판본	발원 주체
1	妙法蓮華經	성종원년(1470)	木板本	자성대비
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성종원년(1470)	木板本	자성대비
3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4	蒙山和尙法語略錄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5	妙法蓮華經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6	妙法蓮華經三昧懺法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7	般若波羅密多心經疏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8	佛祖歷代通載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9	禪宗永嘉集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10	六經合部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11	眞實珠集	성종 3년(1472)	木板本	인수대비
1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성종 5년(1474)	木板本	자성대비
13	禮念彌陀道場懺法	성종 5년(1474)	木板本	자성대비
14	地藏菩薩本願經	성종 5년(1474)	木板本	자성대비
15	金剛經三家解	성종13년(1482)	丁丑字(大字), 乙亥字(中・小字)	자성대비
16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성종13년(1482)	乙亥字本	자성대비
17	六經合部	성종14년(1483)	木板本	안순대비
18	佛頂心陀羅尼經	성종16년(1485)	木板本	인수대비
19	五大眞言	성종16년(1485)	木板本	인수대비
20	禪宗永嘉集	연산군원년(1495)	木板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21	六祖大師法寶壇經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22	眞言勸供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23	天地冥陽水陸雜文	연산군 2년(1496)	木活字本	인수대비, 정현왕후

이 시기의 불서 간행의 특징은 이미 판각된 간경도감본이 대량으로 인출되었다는 점이다. 성종 3년(1472) 인수대비가 세조와 덕종, 예종 등의 명복과 대왕대비, 성종, 성종비의 壽福을 빌기 위해 간경도감본『般若波羅密多心經疏』,『眞實珠集』,『妙法蓮華經』국역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국역본,『蒙山和尙法語略錄』국역본을 인출하였다. 특히『蒙山和尙法語略錄』의 경우 200부를 인출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성종 5년(1474) 인출된『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도 역시 간경도감본으로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바 있었다. 또한 연산군 원년(1495) 인수대비와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량의 불서를 인출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妙法蓮華經』국역본 50부,『大佛頂首楞嚴經』50부,『金剛般若波羅密經六祖解』60부,『般若波羅蜜多心經』국역본 60부,『禪宗永嘉集』국역본 60부,『釋譜詳節』20부,『金剛經五家解』50부,『六經合部』300부의 8종 650부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선종영가집』국역본만이 전래되고 있는데,[494] 이는 즉 연산군 초기까지 왕실의 여성들에 의해 대규모 불서의 인출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서는 국역본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 간경도감에서 국역되지 않았던 한문불서의 국역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종 13년(1482)『金剛經三家解』국역본과『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국역본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자성대비가 學祖에게 명하여 교감 및 국역을 맡겨 간행한 것이다.『금강경삼가해』국역본의 한계희와 강희맹의 발문에 의하면, 초고는 이미 세종 때에 당시 세자였던 문종과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편성하여 번역하게 하였으나, 탈고하지 못했던 것을 자성대비의 명으로 학조가 교감하여 300부를 인출하였다는 것이다.『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국역본 역시 한계희와 강희맹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이 직접「남명계송」30여수를 번역한 다음 수양대군에게 나머지를 마저 번역할 것을 명하였으나 실행을 보지 못하다가 자성대비의 명으로 학조가 국역하여 500부를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성종 16년(1485)에는『五大眞言』국역본이 간행되었는데, 학조의 발문에 의하면, 인수대비의 명에 따라 民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행되었다고 한다. 오대진언은「四十二手眞言」,「神妙章句大陀羅尼」,「隨求卽得陀羅尼」,「大佛頂陀羅尼」,「佛頂尊勝陀羅尼」등 다섯 편의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오대진언 뒤에는『靈驗略抄』가 합철되어 있는데,『영험약초』는「大悲心陀羅尼」,「隨求卽得陁羅尼」,「大佛頂陁羅尼」,「佛頂尊勝陁羅尼」등 4편의 진언의 異蹟과 영험담을 담은 책이다.[495]

그리고 조선초기 왕실에서는 망자의 천도를 위한 水陸齋와 관련된 의식집이 많이 인출되었는데, 이 시기에도 이와 관련된 불서가 다수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종 원년(1470) 간행된『水陸無遮平等齋儀撮

494) 곽동화, 2017, 앞의 논문, p.106.
495) 곽동화, 2017, 앞의 논문, pp.103-104.

要』는 수륙재의 제반 의식 절차를 요약한 책으로 권말의 김수온의 발문에 의하면, 永順君이 죽은 뒤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廣平大君의 부인 신씨가 인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성종 3년(1472)에 간행된 『妙法蓮華經三昧懺法』은 山亘이 법화삼매의 수행을 위해 예불하고 경을 외며 참회하는 법을 『법화경』에 근거하여 저술한 수행집으로 20부를 인출하였다고 한다. 성종 5년(1474)에 인출된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영혼을 천도할 때 사용하는 불교의 의식집으로 고려말 이래 조선초기 간경도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불서이다. 같은 해에 인출된 『禮念彌陀道場懺法』 역시 禮念文과 懺法을 集成하고 彌陀道場에서의 참법절차를 수록한 불교의식집으로 자성대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인출하였다. 연산군 2년(1496)에 인출된 『天地冥陽水陸雜文』은 수륙재를 행할 때에 관계되는 여러 의식 등의 잡문을 모아 수록한 의식집이다.

이와 같이 간경도감이 폐지된 이후에도 연산군 초기까지 자성대비나 인수대비 등의 왕비들에 의해 불서 간행사업이 진행되었지만 16세기 이후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관판본은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고, 지방의 사찰을 중심으로 불서이 편찬 및 간행되었다. 이 시기의 불서 간행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간경도감본은 이후 간행되는 사찰판의 底本으로 사용되면서, 간경도감본의 복각본이나 후인본이 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6세기 이후 간행되는 경·율·론에 대한 주석서는 대부분 간경도감본이 저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역불서의 경우에도 지방의 사찰에서 복각되어 간행되었다. 중종 15년(1520) 경상도 장수사에서 간행된 『禪宗永嘉集』 국역본, 명종 2년(1547) 전라도 쌍계사에서 간행한 『妙法蓮華經』 국역본 및 명종 13년(1558) 같은 사찰에서 간행한 『佛說阿彌陀經』 국역본(1558), 선조 8년(1575)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행된 『金剛般若波羅密經』 국역본·『묘법연화경』 국역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조선후기 불교는 살아남기 위해 민간으로 파고들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교는 민간의 여러 신앙을 흡수하여 기층화 토착화하였으며, 현세구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서 간행의 흐름도 변화하여 16세기 이후 다라니경, 진언집, 불교의식집 등의 불서 간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세기까지 꾸준히 간행되었다.[496] 그리고 사회에 성리학적 질서가 확립되면서, 불교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충효의 윤리를 강조하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과 같은 경전이 주로 간행되었으며, 동시에 지방 사찰에서 이 책에 대한 국역작업이 이루어져 한문본과 국역본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로서 불서 간행은 간경도감이 혁파된 이후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국왕이 주도하는 국가의 공적인 성격의 불사가 아니고, 왕실의 여성들이 추진하는 사적인 성격의 불사로 점점 축소되어 갔으며, 간행 대상의 불서도 진언집이나 불교의식집 같은 특성 불서 위주로 바뀌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서 간행의 변화과정은 불교의 현세기복적인 민간신앙화의 과정에 상응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496) 남희숙, 2004, 「朝鮮後期 佛書刊行 硏究: 眞言集과 佛敎儀式集을 中心으로」, pp.160-161.

五. 결론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초기 간경도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첫째, 조선초기 정치적 상황 및 세조의 정치운영에서의 간경도감의 의의를 했으며 둘째, 고려로부터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불서간행 흐름에서의 간경도감의 위치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3장의 구성 체제를 취했으며 각 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밝혔다.

제1장에서는 세조의 국정운영과 불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조는 이전의 왕들과 다른 집권과정과 정치운영형태를 보여주었고 불교에 대한 개인적 신앙심, 先王의 사업에 대한 계승 강조, 그리고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불교를 활용하였다. 그는 국왕의 입장에서 왕권 강화를 모색하려고 할 때 다양한 학문의 활용성, 그 중에서도 불교의 영향력과 불교에 대한 매력을 쉽게 버릴 수 없으며, 불교가 지배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조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조는 이전의 왕들과 다른 집권과정과 정치운영형태를 보여주었고 불교에 대한 개인적 신앙심, 先王의 사업에 대한 계승 강조, 그리고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불교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세조의 정국 운영 방식은 사대부들의 반발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건이 흥불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세조가 주도한 불사는 크게 사찰의 후원과 불서의 간행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불서 간행사업은 불교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세조는 사적인 왕실 기구가 아닌 국가의 공적인 기구로써 간경도감 설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세조의 불서의 간행은 고려불교의 규모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시켰던 의천의 교장 간행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불서 간행은 블교사상의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불서 간행이 원각사 같은 새로운 사찰을 창립하고 전국의 명산 대찰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불사였다. 세조 7년(1461) 6월 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불서 간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조선왕조 개국 이래 왕조 개창의 주체세력인 사대부들에 의해서 불교가 이단으로 비판받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단에 대한 강력한 억불정책이 추진되어 오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간경도감이라는 특별기구의 설치와 불서의 간행은 가히 파격적인 조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변을 통해 즉위한 세조의 강력한 왕권의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대규모의 불사, 특히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이 요구되는 대장경 간행의 불사는 강력한 왕권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고려시대 두 차례의 대장경 간행과 한 차례의 교장 간행은 모두 강력한 왕권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였다. 첫 번째 초조대장경을 간행한 현종은 치열한 왕위 계승 경쟁에서 부모의 희생을 겪은 끝에 겨우 즉위할 수 있었고, 또한 거란의 침입으로 위기를 넘긴 뒤에 곧바로 부모의 원찰인 현화사를 창건하고 대강경의 간행불사를 시작하였다. 다음 대각국사 의천은 부왕 문종의 원찰인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 간행을 시작하였는데, 외척인 인주이씨 세력의 강력한 도전을 받아 한때 중단되는 파란곡절을 겪은 끝에 숙종의 강력한 왕권의 뒷받침으로 간행불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재조대장경의 간행은 무인집권기 집권한 최우의 원찰인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설치함으로서 시행될 수 있었다. 조선초기의 세조는 정변을 통해 즉위하였다는 정통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자학적 이념과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대부 관료들과 대립되는 이념이 요구되었던 것이며, 그것을 불교에서 찾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간경도감의 설치 배경과 간경도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경도감의 설치는 단순히 세조의 숭불적인 성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초기 여전히 지속되었던 불교적 전통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불교사에서는 네 번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규모의 불서간행 불사가 추진된 적이 있었다. 고려왕조에서 세 번, 조선왕조에서 한번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려왕조에서의 첫 번째 불사는 고려 8대 顯宗~11대 文宗 때의 大藏經의 刊行이었는데, 현종 9년(1018), 대거란전쟁이 마무리되

던 해에 현종은 양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서 개경에 玄化寺를 창건하고 대장경을 조조하였다.[497] 송에서 들여온 開寶版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그 뒤 문종 때에 들여온 契丹의 대장경의 보완을 거쳐서 13대 宣宗 4년(1087) 初雕 대장경은 완성되었다. 두 번째는 대장경의 조판 불사가 마무리되기 1년 앞선 선종 3년(1086)에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하여 문종의 원찰인 興王寺에 敎藏都監을 설치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송과 거란에서 수집한 대장경에 대한 章疏들을 모은 敎藏을 간행하였다. 교장의 간행 불사는 15대 肅宗(1095~1105)때에 마치었는데, 교장의 분량은 간행목록인 『新編諸宗敎藏總錄』에 의하면, 1010부 4,740권에 이르렀다. 정장은 인도에서 수입한 원전(중국 찬술의 위경 포함)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지만, 교장은 중국을 비롯해서 신라와 고려, 거란 등 동아시아불교문화권에서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불교적 업적의 결정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23대 고종 19년(1232) 몽고병의 침입으로 초조 대장경과 교장의 판목은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당시의 집권자인 崔瑀는 고종 23년(1236) 강화도 禪源寺에 大藏都監을 설치하고 다시금 대장경의 조성에 착수하였다. 강화도에 본사, 진주에 분사를 두어 16년만인 고종 38년(1251)에 완성을 보았다. 재조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은 1,512부, 6,791권으로 총 81,258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그리고 화엄종 승려인 守其 등 30 여명이 각종의 異版들과 대교하여 정밀히 교정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우수한 漢譯大藏經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재조대장경은 고려말기까지 강화도에서 보존되어 와서 조선초기 태조 때에 해인사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대장경은 조선초기 억불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왕실의 주도하에 여러 차례 인출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일본의 무로마치막부의 요청으로 보내졌다.

또한 간경도감이 설치된 것은 책방, 정음청으로 이어지는 불서 간행기관의 흐름이 이어진 것이며 비록 임시기구라 할지라도 전담기관을 갖추고 국가적 사업으로서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497) 조판을 주관하는 都監이 설치되었을 것이나, 그 명칭은 전하지 않는다.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경도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살펴보았다. 간경도감은 중앙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는 분사를 두었다. 중앙의 본사는 昌德宮안의 本院과 궁궐 밖의 分院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分院에서 인본의 판각 및 보관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분사의 관찰사를 통해 지시되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부, 남원부, 광주목, 나주목, 안동부, 상주목, 진주목, 개성부 등의 8개 지역의 분사가 현존본을 통해 확인되었다. 각 지방의 分司 중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판목은 해인사에 보관되었으며,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된 판목은 송광사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간경도감은 佛書를 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지만 불서 간행 이외에도 불서의 인출, 서적 구입, 代納, 佛事參與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간경도감이 설치된 초기에는 불서의 간행에 대한 사업이 주로 진행되다가 말기에는 불서의 간행은 줄어들고 佛事參與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간경도감의 인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世祖를 중심으로 하여 큰 아버지인 孝寧大君, 桂陽君李瑈, 仁粹大妃, 貞熹王后등의 왕실인물이 간경도감의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세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운 측근의 신하들이 이를 보필하였다. 李瑈, 尹師路, 黃守身, 韓明澮, 尹子雲, 金守溫등이 총책임인 도제조를 지냈고, 韓繼禧, 盧思愼 등이 제조로 활약하였다. 이러한 측근들은 대부분 혼인관계로 얽혀 있었다. 정치적인 측근 이외에 先王인 세종 때부터 왕실과 긴밀히 연관을 맺은 승려인 信眉는 世祖의 간경도감 사업에서 여러 佛書의 諺解작업에 참여하는 등 깊이 관여하였다.

제3장에서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서의 특징 및 사상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조가 주도한 불서 간행은 간경도감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 불서의 編輯, 書寫, 印出, 板刻, 組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불사는 세조 4년(1458)에 海印寺에 소장된 재조대장경을 50질이나 인출케 하여 전국의 명산 대찰에 나누어 수장케 함으로서 불교계에서 대장경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간경도감을 설치한 뒤에는 그때까지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불서 간행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케 하였다. 불서 간행 원전의 간행에 머물지 않고, 한문불서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국역불서를 동시에 간행케 하였다.

세조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한문불서 가운데 오늘날 확인되는 것은 49종인데, 3종의 대승경전, 4종의 선종관계 저술, 2종의 불교의례서, 2종의 중국 승려 시문집을 제외한 38종의 불서는 모두 불경에 대한 주석서인 교장이었다. 그리고 그 교장 가운데 의천의 교장이 간행된 이후에 저술된 3종의 불서를 제외한 35종은 모두 의천의 교장을 번각하거나 중수한 불서들이었다. 이는 즉 세조에 의한 간경도감 설치와 불서, 특히 교장의 간행은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도감 설치와 교장 간행의 불사를 계승하여 재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의천의 교장 수집 간행은 앞서 현종-문종 때에 조성된 초조대장경을 보완하여 그 주석서를 모아 총서로 간행한 것인데 비하여 세조는 해인사에 재조대장경이 완질로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대장경의 주석서, 곧 의천의 교장의 판목은 이미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판본들을 수집 정리하여 번각하거나 중수함으로서 교장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였던 같다. 간경도감의 설치에 앞서 거질의 대장경을 50질이나 인출한 대규모의 인경불사를 이어서 교장 중심의 한문불서를 간행한 것은 경율론 3장을 보완하는 의의을 가진 것이었음을 말한다. 오늘날 확인되는 간경도감의 49종의 한문불서 판본 가운데 의천의 교장은 35종으로 71,4%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간경도감의 한문불서 간행은 의천의 교장을 복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그밖에 당시 중시되던 경전, 불교계의 주류종파인 선종관계 저술, 불교의례집 등의 불서를 약간 추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었다.

또한 세조는 한문불서의 간행에 만족하지 않고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국역불서를 동시 간행하였는데, 오늘날 확인되는 국역불서는 모두 11종이다. 한문불서의 대부분이 불경의 주석서인 교장인데 비하여 국역불서는 7종의 대승경전, 경전에 대한 1종의 주석서, 3종의 선종 관계 불서로서 대승경전과 선불교에 관한 저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불서의 종류와 성격으로 볼 때 한문불서는 지식인 승려나 전문적인 학자를 대상으로 한

불서였던 반면에 국역불서는 한문을 읽지 못하는 대중승도나 일반백성을 대상으로 한 불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역불서는 경전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주석 부분까지도 번역하여 포함시켰으며, 직역 위주의 정확한 번역을 기하였던 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 적업으로서 번역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독송용이 아니고 불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키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국문학계 일각에서는 간경도감의 국역본이 가능한 한 원문 번역에서 직역 위주로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주석 부분까지도 번역하여 수록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국역경전의 대상은 전문적인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불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점은 의심할 수 없으나, 굳이 그 대상을 전문적인 엘리트 승려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한문경전을 읽지 못하는 대중승도나 일반 백성에게까지도 직접 읽게 함으로서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는 계층의 폭을 넓히고, 또한 불교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일반 대중들에게 문자 생활의 길을 열어준 훈민정음 반포의 정책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1. 사료

(1) 연대기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2) 연대기 외 사료

『牧隱藁』
『陽村集』
『拭疣集』
『經國大典』
『國朝人物考』
『慵齋叢話』
『海東野言』

(3) 佛書

『新編諸宗敎藏總錄』
『高麗大藏經』
『釋譜詳節』

『月印釋譜』

1) 간경도감 간행 불서

① 한문본

『金剛般若經疏開玄鈔』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首楞嚴經環解刪補記』
『金剛錍顯性錄』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大乘起信論疏』
『妙法蓮華經纘述』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大乘起信論筆削記』
『般若波羅蜜多心經疏』,
『圓覺經大疏釋義鈔』
『大方廣佛華嚴經合論』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蜜鈔』
『瑜伽論疏』
『首楞嚴經義解』
『五杉練若新學備用』
『眞實珠集』
『地藏菩薩本願經』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俱舍論頌疏鈔』
『廬山集』
『菩提達磨四行論』
『禪門三家拈頌集』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慈受和尙廣錄』
『天台四敎儀集解』
『無注妙法蓮華經』

『圓宗文類集解』
『石門洪覺範林閒錄』
『淨名經集解關中疏』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大般涅槃經疏』
『圓覺禮懺略本』
『開四分律宗記義鏡鈔』
『金剛般若經義記』
『法華玄論』
『首楞嚴經義疏注經』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成唯識論了義燈抄』
『成唯識論義景鈔』
『妙法蓮華經玄義』
『成唯識論述記』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金光明經文句』
『法華文句記』
『華嚴經論』
『瑜伽師地論義演』
『因明入正理論疏鈔』
『圓覺經道場修證儀』

② 국역본

『大佛頂首楞嚴經』 국역본
『妙法蓮華經』 국역본
『禪宗永嘉集』 국역본
『金剛般若波羅密經』 국역본
『般若波羅密多心經』 국역본
『般若心經疏顯正記』 국역본
『佛說阿彌陀經』 국역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국역본
『牧牛子修心訣』 국역본
『四法語』 국역본
『蒙山和尙法語略錄』 국역본

2. 연구 논저

(1) 단행본 및 박사학위 논문

1) 한국어

강돈구, 2010,「조선전기 종교정책 연구 - 불교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강신항, 2003,『수정 증보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고영근, 2000,『월인천강지곡에 대한 텍스트언어연구』, 학술진흥재단.
곽동화, 2017,「조선 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갑주, 1983,『朝鮮時代 寺院經濟 硏究』, 同和出版公社.
김경숙 외, 2009,『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
김기종, 2006,『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문학적 성격』,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5,『불교와 한글』, 동국대학교 출판부.
_____, 2018,『역주 월인천강지곡』, 보고사.
김기종, 2019,『한국고전문학과 불교』, 동국대학교 출판부.
김당택, 2012,『이성계와 조준, 정도전의 조선왕조 개창』, 전남대학교 출판부.
김무봉, 2015,『훈민정음, 그리고 불경 언해』, 역락.
김슬옹, 2012,『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김승우, 2012,『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사.
김영수, 2006,『건국의 정치 - 여말선초, 혁명과 문명전환 -』, 이학사.
김용조, 1989,『조선전기의 國行祈攘佛事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태, 2010,『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_____, 2021,『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자현, 2017,「朝鮮前期 佛敎變相版畫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종명, 2013,『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 한국학술정보.
김종민, 2007,「朝鮮時代 寫經 硏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효경, 2009,「조선시대의 祈禳儀禮 연구 - 國家와 王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남지대, 1993,「조선초기 중앙정치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희숙, 2004,「朝鮮後期 佛書刊行 硏究 : 眞言集과 佛敎儀式集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도현철, 1999,『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1976『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 출판부
牧隱硏究會(編), 1996,『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一潮閣.
민순의, 2016,「조선전기 도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광헌, 2017,「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도식, 2011,『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혜안.
박평식, 1999,『朝鮮前期商業史硏究』, 지식산업사.
박해당, 1995,「기화의 불교사상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해진, 2015,『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 평전 -』, 나녹.
사재동, 2006,『月印釋譜의 불교문화학적 연구』, 중앙인문사.
손성필, 2013,「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수환, 2000,『조선전기 왕실재정연구』, 집문당.
신천식, 1998,『牧隱의 生涯와 學問과 學派』, 一潮閣.
안병희, 1992,『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 지성사.
_____, 2009,『국어사문헌연구』, 신구문화사.
안지원, 2005,『고려의 국가불교의례와 문화 -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출판부.
안현주, 2007,「조선시대 '사서'의 판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계현, 1982,『한국불교사연구』, 동화출판공사.
양혜원, 2016,『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2005,『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 건국』, 혜안.
유대군, 2008,『조선 초기 주자소 연구』, 한국학술정보.
유부현 외, 2015,『고려 초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윤용선, 2003,『15세기 언해자료와 구결문』, 역락.
이경식, 1986,『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 土地分給制와 農民支配 -』, 一潮閣.
_____, 2011,『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李能和, 1918,『朝鮮佛敎通史』, 新文館.
이병희, 2008,『高麗後期 寺院經濟 硏究』, 景仁文化社.
이봉춘, 2015,『조선시대 불교사연구』, 민족사.
이상백, 1947,『朝鮮文化史硏究論攷』1, 乙酉文化社.
이상백, 1949,『李朝建國의 硏究』, 乙酉文化社.
이완재, 2003,『(實錄)효령대군 일대기 : 靖孝公 李補의 생애와 행적』,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재창, 1993,『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이전경, 2002,「15세기 불경의 구결표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주, 2007,『性理學 受容期 佛敎 批判과 政治·思想的 變容-鄭道傳과 權近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이종우, 2010,「조선전기 종교정책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찬, 2013,『(역주) 사리영응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충구, 1990,「경서언해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호권, 2001,『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장제훈, 2002,『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정광, 2006,『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정두희, 1983,『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_____, 2010,『왕조의 얼굴 - 조선왕조의 건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서강대학교 출판부.
정요근 외, 2019,『고려에서 조선으로 : 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역사비평사.
정왕근, 2012,「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병삼, 2020,『한국불교사』, 푸른역사.
조승혁, 2018,「조선 전기의 불교 전적 간행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두환, 2008,『세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_____, 1993,『한국금속활자본』, 범우사.
_____, 1997,『한국서지학』, 민음사.
_____, 2001,『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최미리, 2014,「朝鮮時代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版畵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병헌 외, 2013,『한국불교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최재복, 2011,「조선 초기 왕실불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최정용, 2000,『조선조 세조의 국정운영』, 신서원.
최승희, 2002,『朝鮮初期政治史硏究』, 지식산업사.
_____, 2005,『조선초기 정치문화의 이해』, 지식산업사.
최연식, 2003,『창업과 수성의 정치사상』, 집문당.
탁효정, 2012,「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한동명, 1986,「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1-15세기 교서관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한영우, 1983,『朝鮮前期 社會思想硏究』, 지식산업사.
한우근, 1993,『儒敎政治와 佛敎』, 일조각.
한종만, 1998,『韓國佛敎思想의 展開』, 민족사.
한형주, 2000,「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흥식, 1990,『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황인규, 2003,『고려후기 조선초 불교사연구』, 혜안.
_____, 2005,『고려말 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혜안.

2) 외국어
江田俊雄, 1977,『朝鮮佛教史の研究』, 國書刊行會.
高橋亨, 1973,『李朝佛教』, 國書刊行會.
大屋德城, 1937,『高麗續藏雕造て』, 便利堂.
馬場久幸, 2016,『日韓交流と高麗版大藏經』, 京法藏館.

(2) 논문 및 기타
1) 한국어
강순애, 2001,「月印釋譜의 저본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22.
_____, 2004,「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전적고」,『서지학연구』27.
_____, 2005,「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 “華嚴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학 연구」,『서지학연구』30.
_____, 2008,「金敏榮 所藏 佛書의 書誌的 硏究」,『서지학연구』41.
강신항, 1992,「한글창제의 배경과 불교와의 관계」,『佛教文化硏究』3, 영취불교문화연구원.
강제훈, 2005.「조선 세조대의 朝會와 왕권」,『사총』61.
강철종, 1958,「李朝 佛教中興運動과 그 性格」,『전북대학교 논문집』2.
강호선, 2013,「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濟 설행과 그 의미」,『韓國文化』62.
_____, 2015,「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
_____, 2015,「조선 전기 왕실원찰 見性庵의 조성과 기능」, 『서울학연구』59.
_____, 2017,「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한국학연구』44.
강희정, 2002,「조선전기 불교와 여성의 역할 - 불교미술의 조성기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4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고영근, 1961,「석보상절과 월인석보와의 한 비교 - 몇 개의 어형변화를 중심으로」,『한글』128.
고영근, 1993,「『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월인석보』」,『국어사 자료

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문학과지성사.
고종호, 2013,「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 신행과 사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연웅, 1993,「世祖代의 佛敎政策」,『진단학보』75.
권정연, 2018,「15-16세기 朝鮮의 祈福 논의 변천과 그 성격」, 성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금장태, 1999,「세종조 종교문화와 세종의 종교의식」,『세종문화사대계』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기윤혜, 2011,「조선 전기 인수대비 간행 불서의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갑주, 1976,「조선전기 사원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동향의 一考」,『東國史學』13.
김광해, 1992,「한글 創制와 佛敎信仰」,『佛敎文化硏究』3, 영취불교문화연구원.
김기종, 2005,「「釋譜詳節」의 저경과 저경 수용 양상」,『書誌學硏究』30, 書誌學會.
_____, 2012,「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간경도감본 언해불전을 중심으로」,『한국어문학연구』58.
_____, 2013,「필사본『금강경언해』와『월인석보』의 관계」,『2013년 불교와 한글 한술대회 자료집』.
_____, 2014,「『사리영응기』 소재 세종의 "친제신성(親制新聲)" 연구」,『반교어문연구』37.
_____, 2018,「조선시대 언해불전의 편찬과 그 성격」,『동아시아불교문화』34.
김동소, 2000,「《월인 석보》 권19의 국어학적 연구」,『국어사자료연구』 창간호.
김두종, 1974,「간경도감의 간행불전목록」,『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김무봉, 2002,「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電子佛典』4.
_____, 2004,「불전언해의 몇 가지 문제」,『불교학연구』9, 불교학연구회.
_____, 2004,「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한국사상과 문화』23.

_____, 2007,「한국의 문화 :『금강경언해』의 번역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한국사상과 문화』40.
_____, 2009,「한국의 문화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의 비교 연구(2) -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과 대둔사본(大芚寺本)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50.
_____, 2010,「불교경전 한글 번역의 역사와 과제 ; 불경언해와 간경도감」,『동아시아불교문화』6.
_____, 2012,「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현황과 사회 문화적 의의」,『한국어문학연구』58.
김상일, 2005,「김수온 시문학의 일 국면」,『한국문학연구』29.
김선민, 2017,「조선 초기 종친의 정치 배제 법제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수, 2004,「13세기 전기 간행불서의 분석」,『서지학보』27, 한국서지학회.
김성수・이승철, 2008,「校書館의 機能과 組織 및 印刷活動」,『2008금속활자복원학술대회논문집-조선시대 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성수, 2009,「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의 조직・기능 및 업무활동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42.
김슬옹, 2011,「12장 세종의 언어정책 담론:훈민정음을 통한 통합과 통섭」,『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개정판)』, 지식산업사.
김영배・김무봉, 1998,「세종시대의 언해」,『세종문화대계 1(어학, 문학편)』, 세종대학기념사업회.
김영배, 1998,「월인석보의 편찬」,『불교학논총』, 동국역경원.
_____, 2000,「15세기의 언해본」,『국어사자료연구』, 월인.
김영배・김무봉, 2002,「조선 초기의 역경 - 최초의 역경 석보상절을 중심으로」,『대각사상』5, 대각사상연구원.
김영선, 1998,「해인사 소장책판의 판각처에 관한 연구」,『도서관학논집』28.
김영수, 2002,「고려말 조선초기의 정치사상」,『한국정치사상사』, 집문당.
김영태, 1988,「조선 태종조의 佛事와 斥佛」,『東洋學』18.

_____, 1995,「朝鮮前期의 度僧 및 赴役僧 문제」,『佛敎學報』32.
김용태, 2009,「조선시대 불교의 유불공존과 시대성의 추구」,『조선시대사학보』49.
_____, 2011,「조선전기 억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조선시대학보』58.
_____, 2018,「조선불교, 고려 불교의 단절인가 연속인가?」,『역사비평』123.
김용환・조남욱, 1997,「조선조 초기 왕실의 儒·佛意識 연구」,『한국민족문화』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용흠, 2007,「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생육신」,『역사와 현실』64, 한국역사연구회.
김우기, 2001,「조선 성종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조선사연구』10.
김윤섭, 2008,「설잠 김시습 불교시에 대한 일고찰 - 無生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5-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_____, 2012,「金守溫의 佛敎的 精神世界에 관한 一考 -『拭疣集』의 漢詩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4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_____, 2016,「조선전기 관료문인들의 불교적 내면의식에 관한 연구-권근·변계량·김수온·서거정·성현의 시문(詩文)을 중심으로-」,『선문화연구』20.
김윤식, 2004,「조선 세조의 학술활동과 서적문화에 대한 고찰」,『서지학연구』29, 서지학회.
김원룡, 1958,「이씨조선주자인쇄소사」,『향토서울』3.
김정희, 2002,「1465年作 觀經16變相圖와 조선초기 왕실의 佛事」,『美術史論壇』19, 한국미술연구소.
_____, 2007,「孝寧大君과 조선전기 불교미술 : 후원자를 통해 본 조선전기 왕실의 佛事」,『美術史論壇』25, 한국미술연구소.
김종명, 2006,「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동양정치사상사』6-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_____, 2010,「세조의 불교관과 치국책」,『한국불교학』58, 한국불교학회.
김종인, 허우성, 2010,「불교경전 한글 번역의 역사와 과제 ; 불경의 한글 번역과 한국사회의 근대성」,『동아시아불교문화』6.

김진영, 2003,「甲寺藏板(月印釋譜) 卷第21의 語文學的 考察」,『불교문화연구』2.
김태영, 1994,「조선초기 세조왕권의 전제성에 대한 일고찰」,『한국사연구』87.
_____, 1995,「조선초기 세조왕의 학술정책」,『동양학』2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김현숙, 1980,「朝鮮 世祖朝의 印刷文化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화선, 2017,「조선 초 인쇄 기관의 변화와 정착」,『한국과학사학회지』33-3.
나민정, 2005,「괴애 김수온의 문학의식과 시세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나영훈, 2013,「조선전기 都監의 운영과 官制정비」,『한국사연구』162.
_____, 2014,「조선전기 都監의 조직과 기능」,『조선시대사학보』70.
나종우, 1989,「조선 전기 한일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고려대장경의 일본 전수를 중심으로」,『사상과 문화의 전개』, 서울: 신서원.
남권희, 2013,「장서각 소장 불교 典籍文化財의 書誌 연구」,『장서각』29.
남동신, 1997,「불교의 사회관과 국가관」,『한국사상사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 청년사.
_____, 2003,「중세 한국사회와 불교」,『인문과학연구』8,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_____, 2005,「선사비문을 통해 본 나말여초 불교 : 나말여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역사와현실』56
_____, 2013,「李穡의 高麗大藏經 印出과 奉安」,『한국사연구』163.
南星祐, 1993,「《月印釋譜》의 國語學的 意義」,『진단학보』75.
노종훈, 2009,「조선전기 억불정책과 교종판사 설준에 대한 평가」,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도현철, 1996,「고려말기 사대부의 불교인식과 대응」,『역사와 현실』20.
_____, 2004,「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조선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형성』, 혜안.
_____, 2015,「조선 건국기 성리학자의 불교 인식」,『한국사상사학』50.

류근선, 2014,「세조 대 불경의 언해와 그 관여 인물-“능엄경언해”를 중심으로」,『第三屈西太平洋 韓語敎育與韓國學國際學術論議集』.
문진영(정천), 2016,「조선조 왕실불사에 있어서의 훈민정음 활용에 관한 연구」,『한국불교학』80.
민덕식, 2010,「慧覺尊者 信眉의 家系와 生涯」,『忠北史學』24.
민현구, 2004,「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한국사 시민강좌』35, 일조각.
박도화, 2002,「15세기 후반기 왕실발원 판화 : 정희대왕대비 발원본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19.
박병련, 2011,「[용비어천가]의 정치사상과 편찬 목적」,『용비어천가와 세종의 국가경영』, 박병련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세연, 2011,「조선초기 世祖代 불교적 祥瑞의 정치적 의미」,『사총』74.
박용진, 2001,「朝鮮時代 刊經都監版『五杉練若新學備用』編纂과 그 意義」,『한국학논총』3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_____, 2020,「고려 敎藏의 고려 및 조선시대 유통과 전승」,『서지학연구』83.
박은경, 2011,「일본 소재 조선 전기 釋迦說法圖 연구」,『석당논총』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박정숙, 1996,「世祖代 刊經都監의 설치와 佛典 刊行」,『釜大史學』20.
朴鍾哲, 1986,「月印釋譜의 文體的 特徵」,『崇實語文』3, 숭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박현모, 2005,「‘聖主’와 ‘獨夫’ 사이 : 斥佛논쟁과 정치가 세종의 고뇌」,『정치사상연구』11(2).
_____, 2013,「세조의 국정운영 방식 연구」,『한국사연구』161.
부남철, 2005,「세종시대의 정치와 종교문제」,『유교적 국가경영, 그 이념과 실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 발표논문집.
_____, 2006,「세종의 불교신앙과 유교정치」,『세종의 국가경영』, 정윤재, 정재훈, 부남철, 유미림, 배병삼, 강숙자, 박현모, 이지경, 박영도, 문중양 편, 지식산업사.
사문경, 1999,「15세기 초반 승록사의 개편과 혁파」,『역사와 담론』26.
_____, 2001,「高麗末·朝鮮初 佛敎機關 硏究」, 충남대학교 사학과 박사

학위논문.
_____, 2001,「세종대 선교양종도회소의 설치와 운영의 성격」,『조선시대사학보』17.
_____, 2011,「간경도감의 설치와 그 역할」,『불교문화연구』10, 한국불교문화학회.
사재동, 1976,「佛敎系 國文小說의 形成 經緯 - 國文佛書·月印釋譜를 中心으로 -」,『百濟硏究』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2010,「훈민정음 창제, 實用의 불교문화학적 고찰」,『국학연구론총』5.
서진원, 1992,「조선 世祖朝의 불교정책과 불서간행에 관한 연구」,『도서관』47-3.
손성필, 2013,「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서지학연구』54.
_____, 2016,「16세기 조선의 정치 – 사회와 불교계」,『동국사학』61.
송수환, 2000,「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조선전기연구총서』9, 集文堂.
송일기・김은진, 2015,「四法語의 편찬과 유통」,『서지학연구』63.
송일기・정왕근, 2015,「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49-1.
송일기, 2015,「조선시대 목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62.
_____, 2018,「간경도감 중간본에 대한 오해」,『서지학연구』73.
신규탁, 2010,「漢譯 불전의 한글 번역에 나타난 경향성 고찰 -간경도감, 백용성, 이운허, 김월운 스님들의 경우를 중심으로」,『동아시아불교문화』6.
안병희, 1993,「《月印釋譜》의 編刊과 異本」,『진단학보』75.
양영희, 1999,「『월인석보』와 『석보상절』에 나타난 인물의 위계」,『국어국문학』.
양웅렬, 2011,「15세기 왕비 가문의 변천과 성격」,『한국학논총』36.
오용섭, 2008,「간경도감과 불서의 간행」,『2008금속활자복원학술대회논문집-조선시대 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오은주, 2017,「朝鮮 15世紀 王室發願 佛像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오지섭, 2005,「탑인절목으로 본 세조 연간 대장경 인출」,『서지학연구』30.
오형근, 1991,「조선전기의 불교와 생활세계」,『韓國思想史大系』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우진웅, 2011,「朝鮮時代 密敎經典의 刊行에 대한 연구」,『서지학연구』49.
유미림, 2005,「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의 정치」,『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4-1.
윤옥석, 2008,「간경도감본 불경언해에서의 협주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근우, 2016,「언문청과 창제 시기와 정음청의 위치」,『인문사회과학연구』17: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이기운, 2001,「조선시대 內願堂의 설치와 철폐」,『한국불교학』29.
이동림, 1959,「월인석보와 관계불경의 고찰」,『주해 석보상절』, 동국대출판부.
이만, 1992,「조선초기 불교계의 상황과 諺解經典의 성격」,『佛敎文化硏究』3.
李秉連, 1985,「조선초 세조의 불교진흥책에 대한 일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희, 1997,「조선시기 사찰의 수적 추이」,『역사교육』61.
_____, 2010,「조선전기 원각사의 조영과 운영」,『문화사학』34.
_____, 2011,「조선전기 사찰의 망폐와 유물의 소실」,『불교학보』59.
이병휴, 1994,「조선전기 내불당, 기신재의 혁파논의와 그 추이」,『九谷황종동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이봉춘, 1980,「朝鮮前期 佛典諺解와 그 思想」,『韓國佛敎學』5.
_____, 1990,「朝鮮 開國初의 排佛推進과 그 實際」,『한국불교학』15.
_____, 1992,「朝鮮 世宗朝의 排佛政策과 그 變化」,『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상.
_____, 2000,「조선시대의 승직제도」,『僧伽敎育』3, 大韓佛敎曹溪宗敎育院.
_____, 2001,「조선전기 숭불주와 홍불사업」,『불교학보』38.

_____, 2006,「孝寧大君의 信佛과 조선전기 불교」,『佛敎文化硏究』7,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이석주, 2013,「한국사상철학 : 乖崖의 儒佛論」,『한국사상과 문화』70.
이숭녕, 1970,「이조 초기 역대왕실의 출판정책의 고찰」,『한글』146, 한글학회.
_____, 1971,「주자소, 책방, 정음청의 관계에 대하여」,『상은 조용욱박사 고희기념논집』, 상은 조용욱 박사 고희 기념사업회.
_____, 1974,「세종의 언어정책사업과 그 은밀주의적 태도에 대하여-특히 실록기사의 불투명성과 책방의 노출을 중심으로 하여」,『한국학논총』, 하성 이성근 박사 고희 기념 논문집.
_____, 1986,「신미의 역경사업에 관한 연구」,『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25, 학술원,
이영화, 1993,「조선초기 불교의례의 성격」,『청계사학』10, 청계사학회.
이재형, 2004,「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신미의 역할」,『불교문화연구』4, 한국불교문화학회.
이전경, 2014,「간경도감 불경언해 사업의 또 다른 함의」,『한말연구』34, 한말연구학회.
이정주, 1999,「朝鮮 太宗·世宗代의 抑佛政策과 寺院建立」,『韓國史學報』6.
_____, 2006,「세조대 후반기의 불교적 상서와 은전」,『민족문화연구』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종권, 1989,「조선조 국역 불서 간행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지, 2010,「세조 어제시 연구」,『한국고전연구』22.
이호권, 2008,「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한국어학』41, 한국어학회.
이호영, 1976,「乖崖 金守溫의 文名과 崇佛 性格」,『단국대학교 논문집』10.
_____, 1976,「승 신미에 대하여」,『사학지』10, 단국대학교.
이화숙, 2011,「조선시대 간인본 국역불서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인용민, 2008,「孝寧大君 李補(1396-1486)의 佛事 활동과 그 의의」,『선문화연구』5.
_____, 2010,「孝寧大君의 佛敎信仰과 佛事」,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기표, 2012,「조선 세조대의 불교미술 연구」,『한국학연구』26.
林泰三, 1993,「朝鮮時代 刊經都監의 刊行佛典에 關한 硏究 -日本人 神尾二春가 蒐集한 經典中-」,『일본연구논총』6.
林惠憬, 2012,「義天의《新編諸宗敎藏總錄》편찬과 그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홍빈, 2013,「정음 창제와 세종조 유교와 불교의 구도」,『2013년 불교와 한글 한술대회 자료집』.
전영근, 2006,「왕실 주관 불사 권선문의 조성과 운용 - 상원사 권선문과 용주사 권선문을 중심으로 -」,『서지학보』30.
정달영, 2007,「세종시대의 어문정책과 훈민정음 창제 목적」,『한민족문화연구』22.
정두희, 1991,「대간의 활동을 통해 본 세조대의 왕권과 유교 이념의 대립」,『역사학보』130, 역사학회.
정성희, 1996,「性理學 形成에 있어서 佛敎의 役割에 관한 硏究」,『白蓮佛敎論集』5・6.
정완기, 2002,「金守溫 文學에 대한 考察 : 序・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우영, 2013,「훈민정음과 불교경전의 관계」,『2013년 불교와 한글 한술대회 자료집』.
정재영, 2005,「간경도감 초간본『금강경(언해)』」, 송일기 편,『영광 불갑사의 불교문헌』1, 태학사.
정재영・김성주, 2010,「영광 불갑사 복장 전적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서지학보』35.
조남욱, 2010,「조선 태종의 탈불교의식과 그 한계」,『동양철학연구』63.
조남욱, 2011,「세종의 불교 수용에 관한 연구」,『윤리교육연구』24, 한국윤리교육학회
조명제, 2000,「麗末鮮初 禪僧들의 현실인식과 性理學에 대한 반응」,『한국중세사연구』9.

조윤호, 2004, 「조선전기 김수온가의 불교신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진성규, 2007,「세조의 불사행위와 그 의미」,『백산학보』78, 백산학회.
천혜봉, 1991,「조선전기 불서판본고」,『서지학보』5, 한국서지학회.
최병헌, 1993,「월인석보 편찬의 불교사적 의의」,『진단학보』75.
_____, 1996,「牧隱 李穡의 佛敎觀 - 恭愍王代의 政治改革과 관련하여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一潮閣.
_____, 2012,「유교정치와 불교 : 유교 · 불교 교체의 역사적 의의」,『제5차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최승희, 1993,「世宗朝 政治支配層의 對民意識과 對民政治」,『진단학보』76.
_____, 1997,「세조대 국정운영체제」,『조선시대사학보』1.
_____, 1997,「世祖代 王位의 취약성과 王權强化策」,『朝鮮時代史學報』1.
최연식, 2011,「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의미」,『지식의 지평』10
최연주, 2012,「조선시대 고려대장경의 印經과 해인사」,『동아시아불교문화』10.
_____, 2016,「조선 전기 간경도감 운용과 상주목」,『국학연구』30.
최영호, 2009,「13세기중엽 고려국 대장도감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석당논총』43.
_____, 2014,「해인사에 소장된『唐賢詩範』과 해인사」,『石堂論叢』60.
최윤곤, 2003,「간경도감의 실체와 불전 간행 사업」,『인문사회과학논문집』31,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최재복, 2005,「여말선초 사상계의 변화와 불교비판」,『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 건국』.
최종남, 2017,「간경도감본 成唯識論了義燈抄 권3·4의 판본대조 연구」,『서지학연구』69.
최종석, 2010,「조선초기 '시왕지제'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조선시대사학보』52.
탁효정, 2016,「조선 초기 陵寢寺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조선시대사학보』77.
한기선, 1986,「조선조 세종의 억불에 대한 연구」,『弘益史學』3.

한동명, 1987,「朝鮮初 書籍出版政策에 관한 一考」,『경희사학』14.
한상설, 1981,「조선초기 세종, 세조의 불교신앙과 신권 견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영우, 1984,「세조의 민본정치와 부국강병책」,『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한우근, 1964,「世宗朝에 있어서의 對佛敎時策」,『진단학보』25・26・27.
_____, 1976,「조선왕조초기에 있어서의 유불이념의 실천과 신앙, 종교 - 제사문제를 중심으로」,『한국사론』3, 서울대 국사학과.
_____, 1991,「문종-세조조에 있어서의 對佛敎時策」,『韓國史學』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춘순, 2002,「성종 초기 정희왕후(세조 비)의 정치 청단과 훈척정치」,『조선시대사학보』22. 조선시대사학회.
_____, 2004,「조선전기 불교계의 三和尙攷」,『불교학연구』37.

2) 외국어
부남철, 2011,「Joseon Kings' Personal Belief in Buddhism and its Political Significance」,『THE REVIEW OF KOREAN STUDIES』14(1).
江田俊雄, 1936,「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朝鮮之圖書館』5-5.
今西龍, 1911,「朝鮮佛敎關係書籍解題」,『佛敎史學』1-1·2·3.
_____, 1930,「月印千江之曲と釋譜詳節とに就て」,『朝鮮』185.
大屋德城, 1926,「朝鮮海印寺雜板攷：特に大藏経補板並に藏外雜板の仏敎文獻學的研究」,『東洋學報』15-3.
박봉석, 1934,「義天續藏の現存本に就て」,『朝鮮之圖書館』3-6.

The Installation of GanGyeong-Dogam(刊經都監) and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during King Sejo's Reign

Choi, Kyong-Hwan
Th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ryeo Dynasty is a society where Confucianism and Buddhism coexisted and their roles were separated to complement each other, and which led to a country controlled and harmonized. However, things were changed since social and economic issues had arised in earnest such as the expansion of economy in Buddhist temples, overpopulated monks and failure of the national finance at the end of the era. Under the circumstances,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by the leading scholar-gentry class, adopted its official ruling idea with Neo-Confucianism, in which the king would be a ideal monarch pursuing a bureaucratic government and the scholar-gentry class who eagerly supported a new system could participate in monarchy. As the Joseon Dynasty started, it was inevitable for Buddhism to be oppressed. Its official role and social part diminished, and the situation got worse in an overall and a drastic way after the dynastic revolution. Nonetheless, Buddhism had kept its long stance as a major religion to the royal family, the scholar-gentry class, and the general people. Its power was not lessen during the period of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early Joseon Dynasty since Buddhism had lasted long time with people as a thought and religion in history. In other words, the Joseon Dynasty could not form a new Confusion world in a day as Buddhism still had been with people for a long time taking its role as religion and custom, even though a new dynasty wanted to start its official system with Confucianism in political and social fields.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the historical influences of GanGyeong-Dogam in the early stage of the Joseon Dynasty. In three chapters, we will see the meaning of GanGyeong-Doga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y reflecting political circumstances, a political method carried by the King Sejo, and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which succeeded the previous reign as well.

In the first chapter, we will find out King Sejo's strategy to manage the country and his policy on Buddhism. King Sejo was a new leader who seized power in a different way from former Kings. With his belief on Buddhism and a willingness to inherit the former king's work, he introduced a new way in political management and also utilized Buddhism to make the country centralized. He knew that he had to pursue a political way using different fields of studies specially like Buddhism in order to maintain the strength in ruling the country. He should have consider the power and appeal of Buddhism to the general public at the time. Compared with other kings, King Sejo had a strong political power enough to handle resistance of the scholar-gentry class, and this helped him to carry out a policy to have Buddhism prosperous. The Buddhist service led by King Sejo, mainly involved in two parts, was to sponsor Buddhist temples and to publish Buddhist scriptures. Moreover, a Buddhist service which built a foundation for Buddhism to advance to the next level, was contributed to install GanGyeong-Dogam as a national organization (not as a private one) since many Buddhism

scriptures had been published. That was a wise strategy of King Sejo who hoped to last his strong power during his reign.

In the second one, we can see how GanGyeong-Dogam was installed and managed. In the era of the Goryeo Dynasty, there were three times of publication on a large scale sponsored by the nation. As the Joseon Dynasty started, the country stopped publishing Buddhist scriptures, but King Sejo wanted to set a condition to continue to publish them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As a result, GanGyeong-Dogam was established in 1461 and lasted for the next 11 years until its abolition in 1471. At the early stage of its introduction, it focused on works of publishing Buddhist scriptures but at its final stage, Buddhist service was a main business. The works of publication should involve cooperation among a lot of people because it was a national undertaking. Under the circumstances, a couple of people took an important role in publishing and translating works such as Kim Su-On, a Buddhism-friendly scholar-gentry class, and Hyoryong-Daegun, a royal, and Sin-mi, a monk.

And the final chapter suggests a historical meaning and features of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GanGyeong-Dogam. The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led by King Sejo had been promoting long before GanGyeong-Dogam was installed. Especially after publication on Tripitaka Koreana in 1458, many of Tripitaka Koreana could be stored separately in noted temples set in the national mountains, which made people see and study Tripitaka Koreana nationwide. Also, publishing business could be conducted in a systematic way, not a fragmentary work after the installation of GanGyeong-Dogam. Among its published scriptures, only 49 of them can be found today, and most of them are reprinted and renovated ones of the

Sinpyeon-jejong-gyojang-chongrok. We can say that King Sejo published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lated in Chinese language to restore and reconstruct the Sinpyeon-jejong-gyojang-chongrok inheriting the projects of Buddhist services like the installation of Dogam and the publication of Sinpyeon-jejong-gyojang-chongrok conducted by Uicheon. Besides, not satisfied with the publication translated in Chinese, he published a Korean version as well. The Korean version we can see now has its 11 kinds mostly involving in the Mahayana Sutras and Zen Buddhism. Considering its kinds and features, the Chinese version is for the intellectuals like monks and scholars and the Korean one is for the general public who could not read Chinese. We can guess that the aim to publish a Korean version was to make people not just recite it but also understand the right contents of Buddhist scriptures because it involved the details in translation work including footnotes and tried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scriptures easily by translating literally and correctly. Ana also all these process are made by a lot of people systematically. In this sense, we can conclude that through all these works, King Sejo opened the way for all of the people to read and chant the Buddhist scriptures in their daily life.

Keywords : King Sejo(世祖), GanGyeong-Dogam(刊經都監), Buddhist scriptures(佛書), Korean translation(諺解), Tripitaka Koreana(大藏經), Buddhist policy(佛敎政策), Hyoneong Daegun(孝寧大君), Kim Su-On(金守溫), Sin-mi(信眉)

Student Number : 2011-30031